
경기도

문턱 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2019. 12



경기관광공사
GYEONGGI TOURISM ORGANIZATION

본 가이드라인은 경기관광공사의 위탁을 받아 (주) 에이비랩 건축사사무소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결과를 수록한 것입니다.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경기관광공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경기관광공사장 귀하

본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문턱 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의 최종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19. 12

(주) 에이비랩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연구원



경기도 문턱 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Contents

| | |
|-----------------------------------|------------|
| I. 문턱 없는 관광지란? | 01 |
| 01 개념 및 정의 | 3 |
| 02 경기도의 관광과 관광지 | 8 |
| 03 행동 특성 및 활동범위 | 13 |
| 04 가이드라인 구성 및 사용법 | 15 |
| II. 외부시설 | 19 |
| 01 보행로 | 21 |
| 02 주차장 | 40 |
| 03 주출입구(문) | 46 |
| III. 안내시설 | 57 |
| 01 안내설비 | 59 |
| 02 피난 · 경고설비 | 65 |
| IV. 관광편의시설 | 69 |
| 01 안내데스크 | 71 |
| 02 테이블, 작업대 | 72 |
| 03 매표소 | 73 |
| 04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 74 |
| 05 음료대, 음수대 | 75 |
| 06 관람공간 | 77 |
| V. 이용시설 | 81 |
| 01 출입문 | 83 |
| 02 통로 | 88 |
| 03 계단 | 92 |
| 04 경사로 | 98 |
| 05 승강기 | 102 |
| 06 기타 승강설비 | 108 |
| VI. 위생시설 | 115 |
| 01 화장실 | 117 |
| 02 샤워실 / 욕실 / 탈의실 | 128 |
| VII. 기타시설 | 137 |
| 01 숙박시설의 객실 | 139 |
| 0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145 |
| VIII. 부록 | 149 |
| 01 관광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151 |
| 02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법적기준 | 152 |
| 03 휠체어 등 비치용품에 관한 법적 기준 | 173 |



I

문턱 없는 관광지란?

01. 개념 및 정의
02. 행동 특성 및 활동범위
03. 경기도의 관광과 관광지
04. 가이드라인 구성



01. 개념 및 정의

■ 문턱 없는 관광지의 정의

문턱 없는 관광은 장애인관광, 무장애 관광, 접근가능한 관광, 유니버설 관광, 무장애 관광, 열린 관광 등의 다양한 개념에서 정의하는 관광에서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다양한 사람 등이 관광을 하는데 있어 불편하지 않으며 차별받지 않고 최대한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관광을 뜻함

문턱 없는 관광지란 문턱 없는 관광이 이루어지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린이, 영유아 동반자 등 모든 사람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를 뜻함

문턱 없는 관광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광지와 관광 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하는데 있어 모든 사람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의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서 정의 하고 있음

■ 관광의 정의

관광(觀光)은 주로 기분 전환이나 여가의 목적으로 떠나는 여행임. 세계 관광 기구는 관광 객을 "여가, 사업, 방문 장소 안에 보답하는 활동에 무관한 목적을 위해 한 해를 넘지 않는 기간에 일반적인 환경 밖의 장소에서 머물러 여행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함

세계관광기구(UNWTO)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관광객 수가 2012년 최초로 10억 명을 돌파한 이래 2018년에는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며, 2018년의 국제관광 수입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음. 또한 2018년 내국인 국내여행 경험률은 89.2%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84.0%, 기타여행은 56.5%로 조사되었음.

이렇듯 관광은 전 세계적으로 관광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음

‘관광’이라는 말의 어원은 주나라 때의 『역경』에 나오는 “관국지광이용빈우왕(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라는 구절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음

이는 한 나라의 사절이 다른 나라를 방문하여 왕을 알현하고 자기 나라의 훌륭한 문물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관찰함이 왕의 빈객으로 대접받기에 적합하다는 일종의 의전적(儀典的)인 개념임

여기에서의 관(觀)은 ‘본다’는 뜻이면서 ‘보인다’는 의미도 있으며, 광(光)은 ‘훌륭한 것’·‘아름다운 것’·‘자랑스러움’을 뜻하는 것임

영어의 ‘투어리즘(tourism)’이란 ‘tour’와 ‘travel’에서 파생된 용어로서, 라틴어 ‘tornus’(돌다, 순회하다)에서 유래되었으며, 통상 즐거움을 위한 단기간의 여행을 뜻하고 있음

독일어의 ‘프렘덴페르케르(Fremdenverkehr)’라는 용어는 ‘외국의’ 또는 ‘외국인’의 뜻을 가진 ‘Fremden’과 ‘내왕’ 및 ‘교통’이라는 의미를 가진 ‘Verkehr’의 합성어로서 외래자가 내왕함을 의미하고 있음

결국, 한자의 ‘觀光’은 관광이라는 행동의 목적과 대상, 영어의 ‘tourism’은 행동의 목적과 기간, 독일어의 ‘Fremdenverkehr’는 행동의 주체와 상태를 각각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자료출처
 -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홈페이지
 -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베리어프리 디자인(Barrier-Free Design)과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Barrier Free(이하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ⁱ⁾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함

Universal Design(이하 UD, 보편적 디자인)ⁱⁱ⁾는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함

BF는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특정 교통약자에만 주목하고 있지만, UD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비교통약자들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음

BF는 법령을 근거로 교통약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요소를 개선하거나 제거하는 환경을 조성하지만 UD는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디자인을 적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BF와 UD에서 고려하고 있는 대상자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UD개념에서 BF가 추구하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핵심 요소임에 따라 BF와 UD는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음

| 구분 |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 UD(Universal Design, 보편적 디자인) |
|------|--|---|
| 개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적 불편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고 쉽게 사용하도록 장애물 없는 물리적 환경 만들기 장애인을 주 대상으로 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규 및 명령에 근거한 디자인 주로 표준을 통한 기준 설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이용하기 쉽고, 쾌적한 물리적·사회적 환경 만들기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의 요구에 만족시키기 위한 디자인 철학이자 접근방법 다양한 선택지를 통한 기회 제공 |
|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장애인, 노인 등의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 건축물, 공공시설 등에 존재하는 물리적 환경(시설, 설비, 정보)의 장애물 제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에 관계없는 모든 사람들 건축·공공시설물 등의 물리적 환경을 비롯한 행정·교육·복지 등의 사회적 환경 가치 제고 |
| 법적근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자체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조례 |
| 태생배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4년 UN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협회에 의해 「장벽이 없는 건축 설계」라는 보고서가 알려지면서 건축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 1990년대에 관련 이론이 정립되며 건축을 중심으로 Barrier Free 명명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을 위해 미국의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에 근간하여 요구 사항을 구현하는 규정에서 비롯해 주로 접근성 보장을 위한 표준적인 기준 제시 한국에서도 ADA의 기준을 바탕으로 법적 기준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UD는 BF의 장애에 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편성의 관점에서 1980년대 UD의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 1997년 North Carolina주립대학 Ronald L. Mace가 현재와 같은 UD의 정의를 완성 법적기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을 디자인적인 사고와 해결안으로 사용자의 차별감 해소 및 자존감 향상에의 필요에서 출발 다양한 사용자의 이용편의 증진과 사회적 참여의 보장을 위한 환경과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까지 확장 |

자료출처 :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통합 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7, p.17

• 자료출처
 i)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시행 지침,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공동고시
 ii) 서울시유니버설디자인 통합가이드라인, 서울특별시, 2017, p.16

■ 국내 '문턱없는 관광' 관련 제도 및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지 보장에 관한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지 보장에 관한법률'(보건복지부, 이하 장애인등편의법)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국토교통부, 이하 교통약자법)은 시설과 설비에 대하여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대상시설은 다르지만, 장애인, 노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모든 시설과 설비를 접근 및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적 참여 보장과 복지 증진을 공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 분 | 장애인등편의법 | 교통약자법 |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 목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 대상시설 | 건축물, 공원 | 도로, 여객시설, 교통수단 |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은 장애인등편의법과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 해당 시설물을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평가후 인증을 하는 제도

i) 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ⁱⁱ⁾은 2015년 7월 29일부터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2021년 12월 4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원ⁱⁱⁱ⁾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시설^{iv)}도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BF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구 분 |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
|----------------------|---|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
| 목적 | 장애인, 노인 등이 지역, 교통수단, 건축물 등을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의 구축 및 조성을 촉진하고자함 |
| 대상시설 | 개별시설 :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공원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지 역 : · 교통약자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
| 인증신청시기 ^{v)} | 개별시설 : ·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도로 -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교통수단 -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지 역 : · 관련법률에 따라 공사 등의 완료 후 |
| 인증등급 | 최우수, 우수, 일반 |

- 참고
- i) 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에 관한규칙,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 공동부령
- ii) 장애인등편의법, 10조2
- iii)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 iv) 2019년 현재 구체적인 시설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v) 예비인증은 본인증을 받기전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신청 및 평가함

■ 관광약자 정의

경기도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시행 2019.7.1.)」에서는 관광약자의 정의를 '관광취약계층, 장애, 노령, 임신 등으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사람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광취약계층을 정의로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시행령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뜻하며,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본 가이드라인의 문턱 없는 관광지 이용객(관광약자)범위

가이드라인에서 관광약자 범위

본 가이드라인에서 제안하는 기준의 적용 대상은 장애인, 노인, 아동,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 동반자 등 시설이용에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제한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관광약자

노인



장애인



일시적인 제한을 받는 사람
(아동, 임산부, 부상자, 영유아 동반 등)



관광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 라인

문턱없는 관광지란?

02. 경기도의 관광과 관광지

■ 경기도

경기도는 우리나라 중앙부의 서쪽에 위치하는 지역으로, 2018년 현재 28개 시, 3개 군으로 이루어져 있음

- 도농복합형태의 시(市)는 용인시, 남양주시, 평택시, 화성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등 12개 지역임
- 도 출장소는 평택에 1개소(황해경제자유구역청) 있으며, 시군 출장소는 송탄, 안중, 동부, 장단 등 4개소, 읍면 출장소는 동부, 오포 등 2개소가 있음
- 파주시 9개면 중 4개면은 주민센터 미설치 지역이 있으며(장단출장소에서 관할) 이종진서, 장단면은 주민 미거주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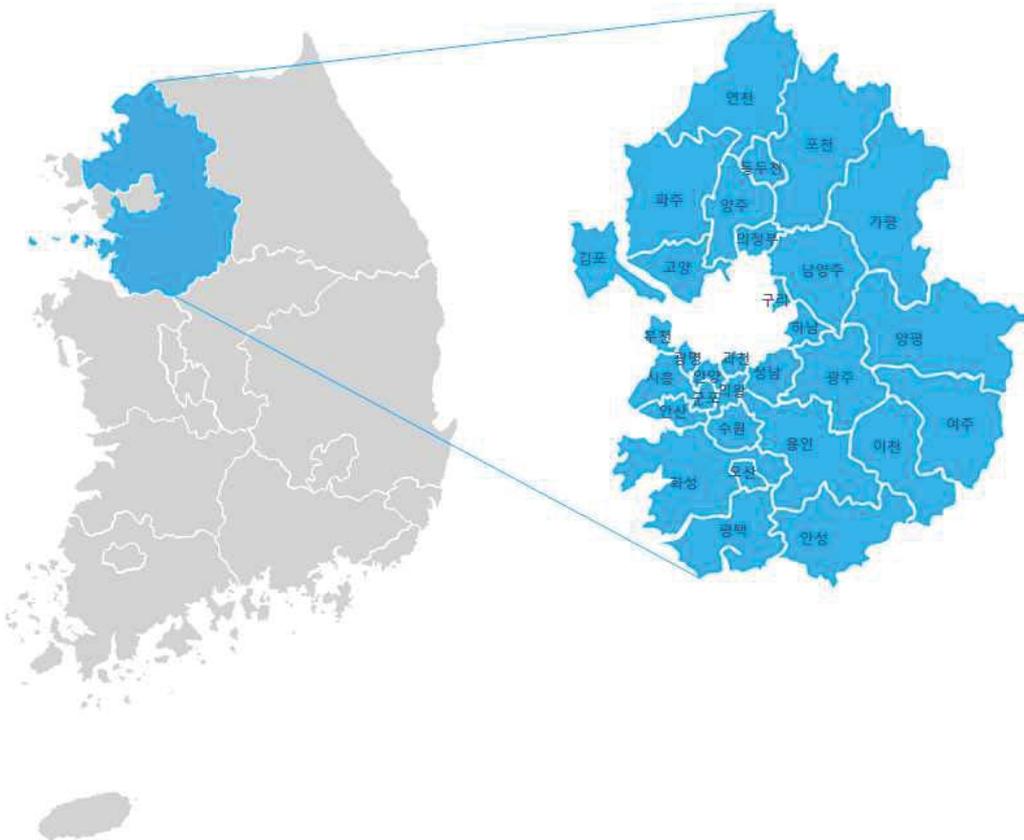
경기도의 총면적은 10,186.29km²로서 전국 면적(100,364km²)의 약 10%에 해당함.

- 경기도 시군별 면적으로는 양평군이 887.69km²로 가장 크며, 구리시는 33.31km²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음

경기도의 총인구수는 13,368,221 명으로 전국 인구(51,629,512 명)의 약 25%에 해당함

- 경기도 시군별 인구현황으로는 수원시가 1,218,843명으로 가장 많으며, 연천군은 43,383명으로 가장 적은 인구현황을 보이고 있음

경기도는 이러한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에서부터 농촌과 미거주 지역까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이 분포되어 있음



• 자료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국가통계포털

▣ 경기도 관광

● **국민들의 여행방문지**

2018년 국내 여행방문지를 살펴보면 경기도는 13.5%로 전국에서 강원도(15.4%) 다음으로 높은 여행 방문 빈도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여행 방문지는 강원(15.4%), **경기(13.5%)**, 경남(11.2%), 전남(10.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국내여행은 관광여행과 기타여행으로 구분되며 관광여행에서 강원(17.3%)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여행에서는 경기(17.0%) 방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자료출처 :
- 2018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사업체 현황**

2017 관광사업체 통계를 보면 전체 관광사업체 수는 33,089개소이며 경기도는 4,313개소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비율로는 서울(11,984개소 / 36.2%) 다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인 13.0%로 나타났음

• 자료출처 :
- 2017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구분 | 전체 | | 여행업 | | 관광숙박업 | | 관광객이용시설업 | | 국제회의업 | | 카지노업 | | 유원시설업 | | 관광편의시설업 | |
|----|--------|-------|--------|-------|-------|-------|----------|-------|-------|-------|------|-------|-------|-------|---------|-------|
|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개소 | 비율(%) |
| 전체 | 33,089 | 100 | 19,944 | 60.3 | 1,843 | 5.6 | 3,963 | 12.0 | 890 | 2.7 | 17 | 0.1 | 2,548 | 7.7 | 3,884 | 0 |
| 경기 | 4,313 | 13.0 | 2,199 | 6.6 | 156 | 0.5 | 581 | 1.8 | 38 | 0.1 | 0 | 0 | 647 | 2.0 | 692 | 2.1 |
| 서울 | 11,984 | 36.2 | 9,152 | 27.7 | 397 | 1.2 | 1,054 | 3.2 | 544 | 1.6 | 3 | 0 | 235 | 0.7 | 600 | 1.8 |
| 부산 | 1,972 | 6.0 | 1,250 | 3.8 | 147 | 0.4 | 139 | 0.4 | 47 | 0.1 | 2 | 0 | 226 | 0.7 | 161 | 0.5 |
| 대구 | 1,033 | 3.1 | 689 | 2.1 | 26 | 0.1 | 49 | 0.1 | 30 | 0.1 | 1 | 0 | 99 | 0.3 | 139 | 0.4 |
| 인천 | 1,016 | 3.1 | 499 | 1.5 | 126 | 0.4 | 130 | 0.4 | 24 | 0.1 | 1 | 0 | 94 | 0.3 | 143 | 0.4 |
| 광주 | 660 | 2.0 | 513 | 1.6 | 15 | 0 | 28 | 0.1 | 24 | 0.1 | 0 | 0 | 44 | 0.1 | 36 | 0.1 |
| 대전 | 607 | 1.8 | 462 | 1.4 | 20 | 0.1 | 12 | 0.0 | 21 | 0.1 | 0 | 0 | 84 | 0.3 | 8 | 0 |
| 울산 | 465 | 1.4 | 231 | 0.7 | 13 | 0 | 42 | 0.1 | 8 | 0 | 0 | 0 | 73 | 0.2 | 99 | 0.3 |
| 세종 | 89 | 0.3 | 58 | 0.2 | 0 | 0 | 3 | 0.0 | 5 | 0 | 0 | 0 | 17 | 0.1 | 6 | 0 |
| 강원 | 1,165 | 3.5 | 269 | 0.8 | 133 | 0.4 | 480 | 1.5 | 30 | 0.1 | 2 | 0 | 115 | 0.3 | 137 | 0.4 |
| 충북 | 719 | 2.2 | 382 | 1.2 | 32 | 0.1 | 159 | 0.5 | 11 | 0 | 0 | 0 | 87 | 0.3 | 48 | 0.1 |
| 충남 | 918 | 2.8 | 400 | 1.2 | 41 | 0.1 | 181 | 0.5 | 5 | 0 | 0 | 0 | 132 | 0.4 | 159 | 0.5 |
| 전북 | 1,391 | 4.2 | 621 | 1.9 | 50 | 0.2 | 256 | 0.8 | 17 | 0.1 | 0 | 0 | 78 | 0.2 | 370 | 1.1 |
| 전남 | 1,373 | 4.1 | 565 | 1.7 | 105 | 0.3 | 160 | 0.5 | 3 | 0 | 0 | 0 | 138 | 0.4 | 403 | 1.2 |
| 경북 | 1,556 | 4.7 | 561 | 1.7 | 73 | 0.2 | 286 | 0.9 | 19 | 0.1 | 0 | 0 | 154 | 0.5 | 464 | 1.4 |
| 경남 | 1,646 | 5.0 | 707 | 2.1 | 104 | 0.3 | 275 | 0.8 | 36 | 0.1 | 0 | 0 | 263 | 0.8 | 262 | 0.8 |
| 제주 | 2,182 | 6.6 | 1,386 | 4.2 | 406 | 1.2 | 129 | 0.4 | 29 | 0.1 | 8 | 0 | 64 | 0.2 | 159 | 0.5 |

● 경기도 관광자원 현황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볼 때 남북으로는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여 다양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있음. 경기도 곳곳에서 다양한 산과 하천이 있으며, 특히, 북측으로는 인적이 드문 휴전선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서해바다가 있어 다양한 자연을 쉽게 만날 수 있음
또한, 경기도는 조선시대부터 수도와 인접하고 있어 문화적으로 다양한 문화재가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있는 많은 관광지를 가지고 있음

이렇듯 경기도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음. 즉 경기도에는 종합적이며 다채로운 관광자원과 관광지를 만나볼 수 있는 지역이라 하겠음

경기도의 관광자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자연공원

2018년 현재 전국에는 총 88개소의 자연공원이 있으며, 이 중 국립공원은 22개소, 도립공원 29개소, 군립공원 27개소, 지질공원 10개소가 있음
경기도에는 1개의 국립공원과 3개의 도립공원, 2개의 군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음

| 구분 | 합계 | 국립공원 | 도립공원 | 군립공원 | 지질공원 |
|--------|-----|------|------|------|------|
| 전국 | 88 | 22 | 29 | 27 | 10 |
| 경기 | 6 | 1 | 3 | 2 | 0 |
| 비율 (%) | 6.8 | 4.5 | 10.3 | 7.4 | 0 |

○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2018년 현재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170개소(국유 자연휴양림 43개소, 공유 자연휴양림 104개소, 사유 자연휴양림 2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도에 이용자수는 1,533만명이 이용하였음

경기도에는 총 16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있으며 이 중 국유 자연휴양림은 5개소, 공유 자연휴양림은 7개소, 사유 자연휴양림은 4개소가 운영하고 있음

산림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국민들이 쉽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비해 삼림욕장은 주민의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가까운 지역에 조성하여 도심지의 주민들이 보다 쉽게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

전국의 삼림욕장은 총 199개소이며 이중 경기도는 총 37개소가 운영 중에 있음

| 구분 | 자연 휴양림 | | | | 삼림욕장 |
|--------|--------|----------|----------|----------|------|
| | 합계 | 국유 자연휴양림 | 공유 자연휴양림 | 사유 자연휴양림 | |
| 전국 | 170 | 43 | 104 | 23 | 199 |
| 경기 | 16 | 5 | 7 | 4 | 37 |
| 비율 (%) | 9.4 | 11.6 | 6.7 | 17.4 | 18.6 |

- 자료출처 :
 -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재

문화재는 중요한 관광자원으로서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구분될 수 있음. 지정문화재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50년이 경과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하여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함

2018년 전국의 문화재는 13,968개(지정문화재 13,164개, 등록문화재 804개)가 지정 및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경기도는 지정문화재 1,038개, 등록문화재 84개로 총 1,122개의 문화재가 있음

| 구분 | 합계 | 지정문화재 | | | 등록 문화재 |
|--------|--------|--------|----------|----------|--------|
| | | 합계 | 국가 지정문화재 | 시도 지정문화재 | |
| 전국 | 13,968 | 13,164 | 4,023 | 9,141 | 804 |
| 경기 | 1,122 | 1,038 | 299 | 739 | 84 |
| 비율 (%) | 8.0 | 7.9 | 7.4 | 8.1 | 10.4 |

○ 문화시설

경기도는 공공도서관 250개소, 박물관 140개소, 미술관 54개소, 문예회관 42개소, 지방문화원 31개소, 문화의집 9개소로, 전체 526개소로 전국대비 비율 19.1%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 구분 | 합계 | 국립 도서관 | 공공도서관 | | | | 박물관 | | | | 미술관 | | | | 문예회관 | 지방문화원 | 문화의 집 |
|--------|-------|--------|-------|------|-----|------|------|------|------|-----|------|------|------|------|------|-------|-------|
| | | | 계 | 지자체 | 교육청 | 사립 | 계 | 국립 | 사립 | 대학 | 계 | 국립 | 사립 | 대학 | | | |
| 전국 | 2,749 | 1 | 1,042 | 791 | 231 | 20 | 873 | 398 | 371 | 104 | 251 | 68 | 168 | 15 | 251 | 231 | 100 |
| 경기 | 526 | 0 | 250 | 236 | 11 | 3 | 140 | 55 | 75 | 10 | 54 | 12 | 38 | 4 | 42 | 31 | 9 |
| 비율 (%) | 19.1 | 0.0 | 24.0 | 29.8 | 4.8 | 15.0 | 16.0 | 13.8 | 20.2 | 9.6 | 21.5 | 17.6 | 22.6 | 26.7 | 16.7 | 13.4 | 9.0 |

○ 문화관광축제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문화관광축제의 선정방법은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축제를 추천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 위원에서 선정하고 있음

2018년도 문화관광축제는 총 40개(대표 2개, 최우수 7개, 우수 10개, 유망 21개)를 선정하였으며 이 중 경기도는 5개의 축제가 선정되었음. 특히, 이천의 쌀문화축제는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었음

| 구분 | 합계 | 대표 축제 | 최우수 축제 | 우수 축제 | 유망 축제 |
|--------|------|-------|--------|-------|-------|
| 전국 | 40 | 2 | 7 | 10 | 21 |
| 경기 | 5 | 0 | 1 | 1 | 3 |
| 비율 (%) | 12.5 | 0 | 14.3 | 10.0 | 14.3 |

- 자료출처 :
 - 2018 전국문화기반 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 2018 문화관광축제 종합평가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지 유형

○ 역사유적

| 분류 | 세분류 |
|------|---|
| 역사자원 | 터(생가, 궁궐, 절, 가마, 전적지) 무덤(능, 원, 분, 묘) 성(성/산성/성곽) 궁궐/관아 사찰/종교유적지 명승지/고택(원,정,방,가옥) 농촌/어촌/체험마을 읍성/한옥/민속마을 탑/비/루/건축물 |
| 문화자원 | 농촌/어촌/체험마을 읍성/한옥/민속마을 |

○ 자연자원

| 분류 | 세분류 |
|----------|--|
| 동/식물 서식지 | 자생지 서식지 생태공원(동/식물)/생태체험장 |
| 내륙권/산 | 봉우리/고개 산악동굴/기암암석 폭포/계곡/절벽 숲/들판/평야 길/탐방로/산책로 |
| 내수면/해안 | 강/천/하천 섬 연못/호수/댐 항구/부두 해안동굴/해안절벽/주상절리 해수욕장/해안길/해안공원 |

○ 문화콘텐츠

| 분류 | 세분류 |
|-----------|--|
| 스포츠/레저/여가 | 수상레저(레프팅/카약/요트 등) 산악레저(클레이밍/스키장 등) 캠핑장(야영/오토캠핑장 등) |
| 음식/쇼핑 | 장터(5일장/토요시장 등) 상설시장 |
| 문화예술 | 미술관/갤러리/화랑 박물관/기념관 동,식물(동물원/식물원/수목원) 수족관 야외전시관/야외문화예술공원 공연장,소극장 문화(예술)공원/문화원 복합문화공간 영화,드라마/문학작품 촬영지 문화/예술의 거리 기념공원(역사/인물/행사) |
| 관광지/휴양림 | 테마공원/리조트 유원지 자연휴양림 |
| 경관/관광시설 | 도시공원/도시광장 전망대(생태/경관/DMZ/일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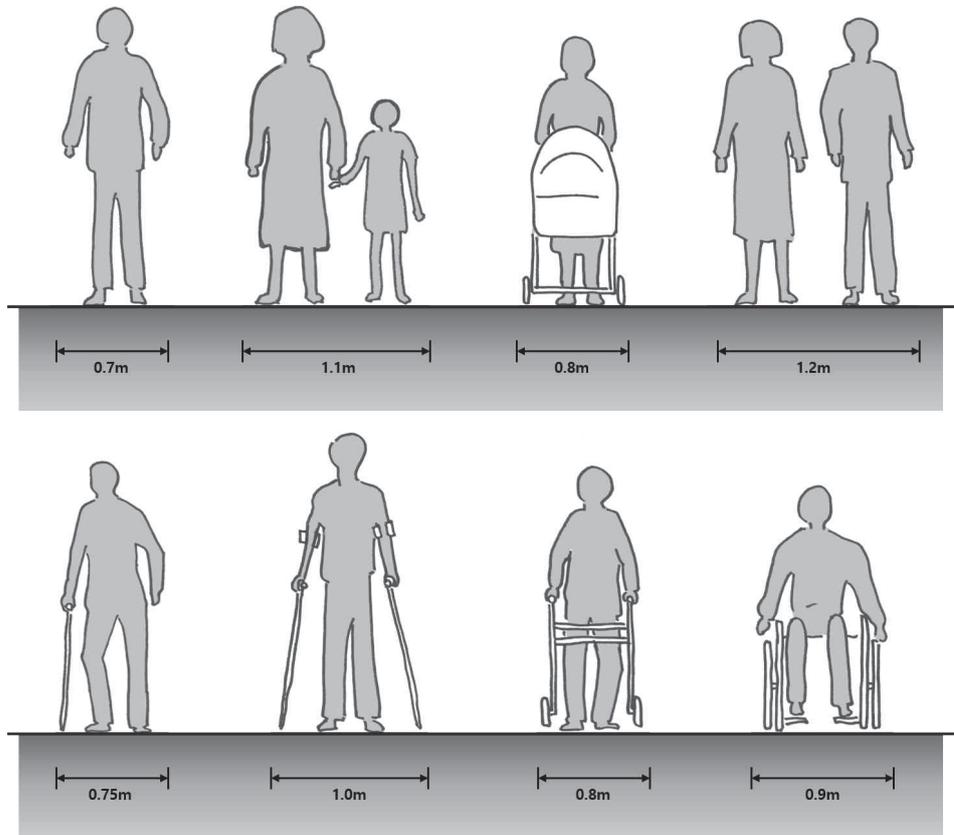
• 기존 관광지에 대한 연구*에서는 관광지 유형 분류는 국가 관광정보 KS 표준의 '관광자원 분류', '관광안내분류'에 따라
① 역사문화자원(역사유적),
② 자연자원,
③ 시설자원(문화콘텐츠)으로 구분하고 있음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의 관광자원 분류를 참고하였으며 '대분류'(역사유적, 자연자원, 문화콘텐츠)를 기준으로 주요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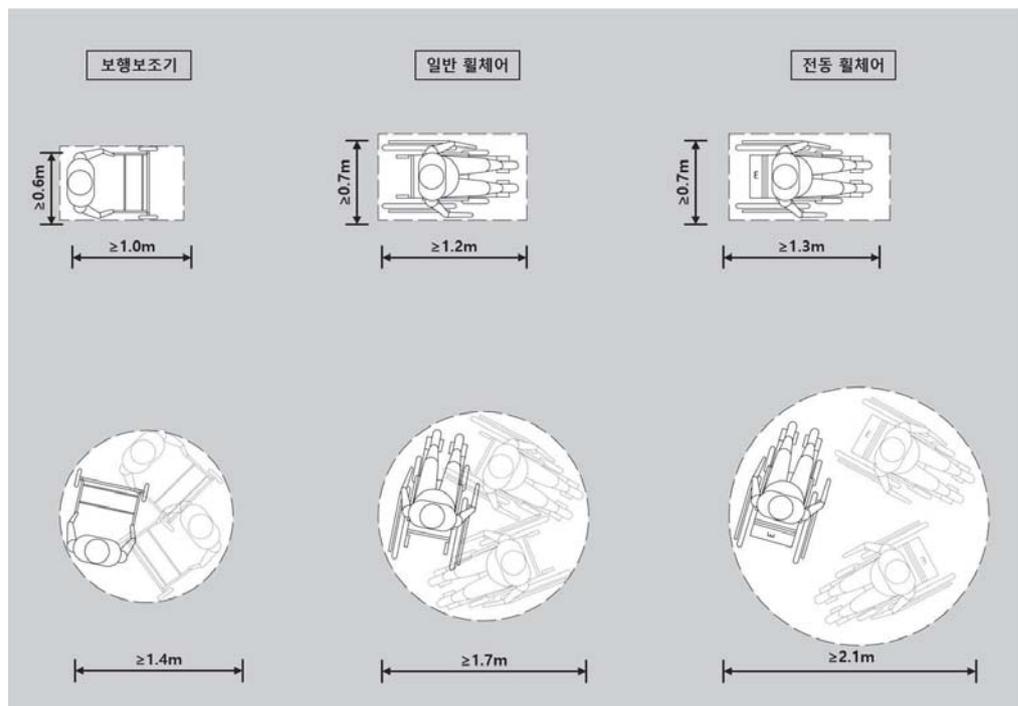
* 기존관광지 연구
- 장애물없는관광환경 실태조사, 2015, 한국관광공사
- 장애물없는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2012, 한국관광공사

03. 행동 특성 및 활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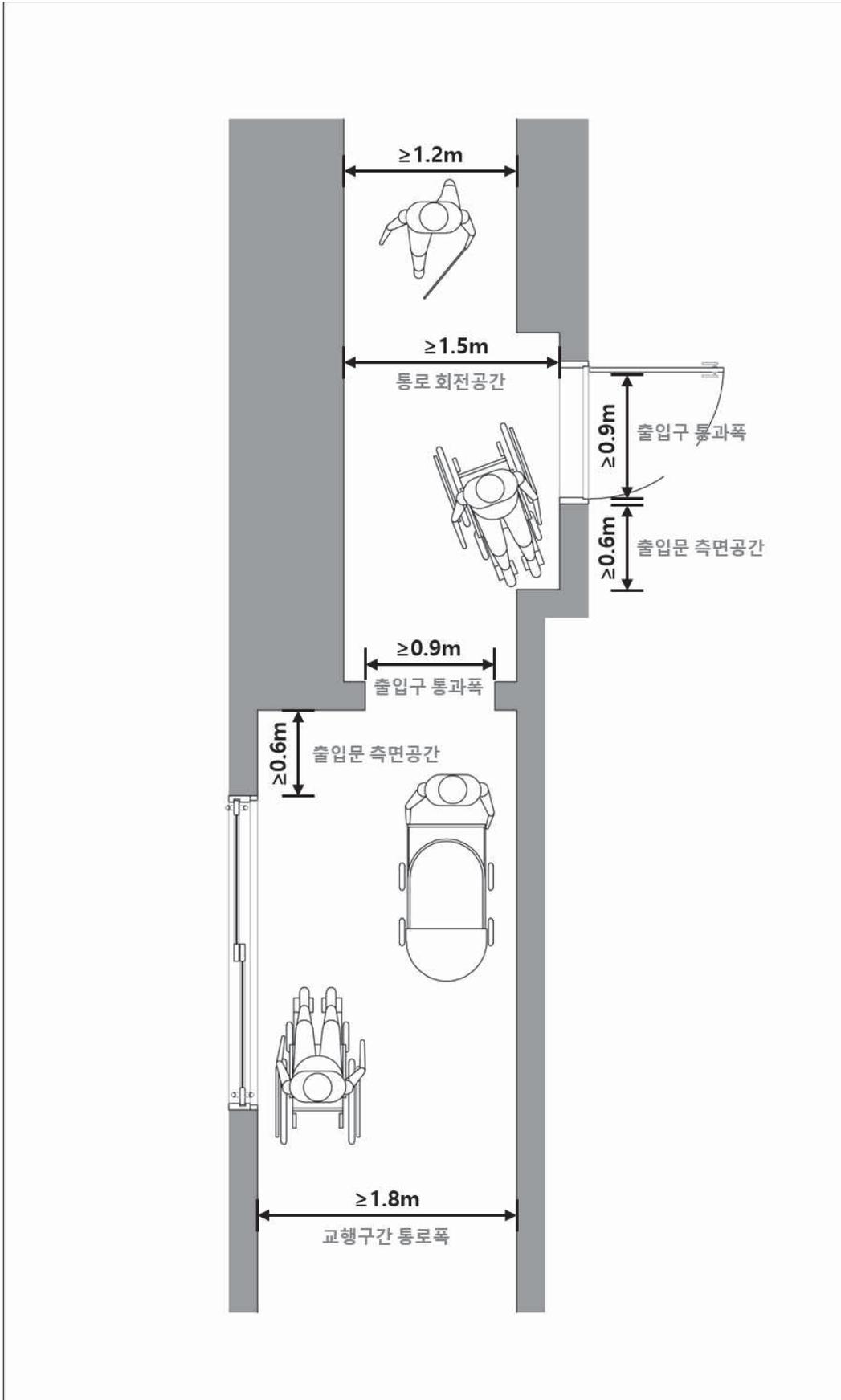
■ 최소 통과 유효폭



■ 소요 바닥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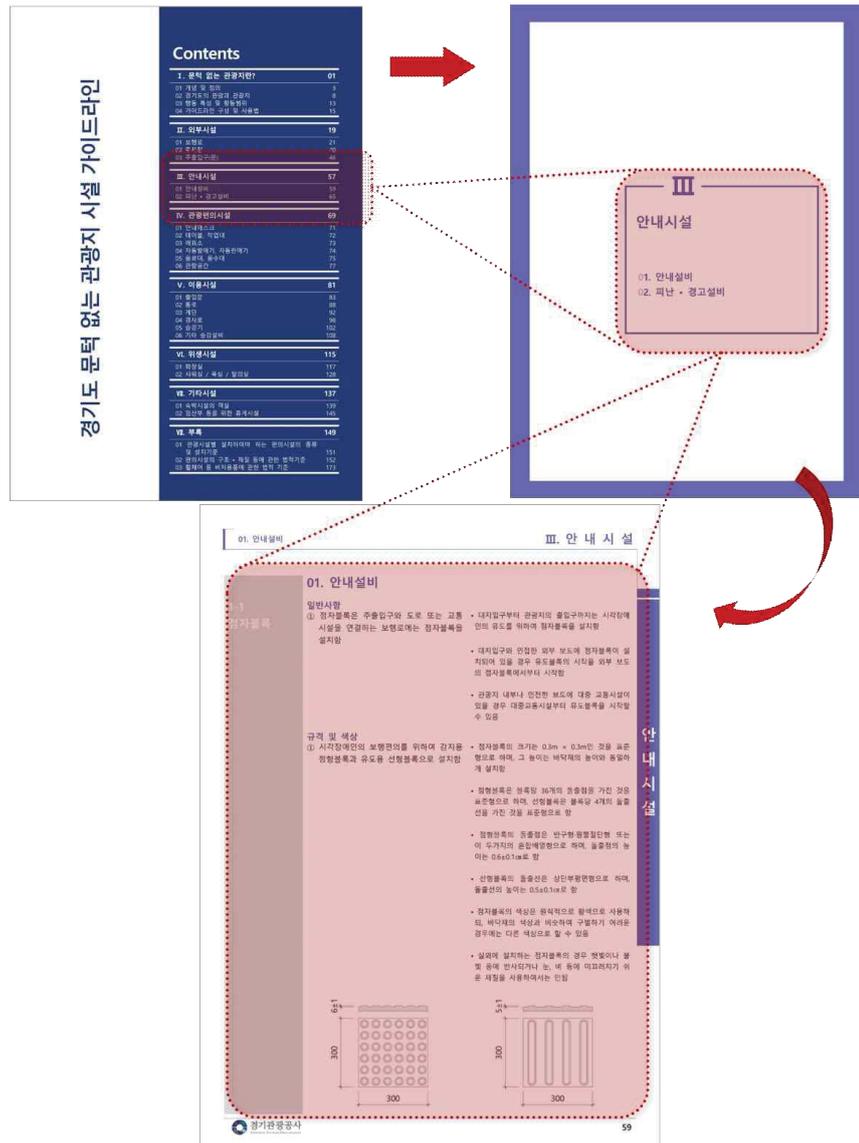
■ 최소 규격



04. 가이드라인 구성 및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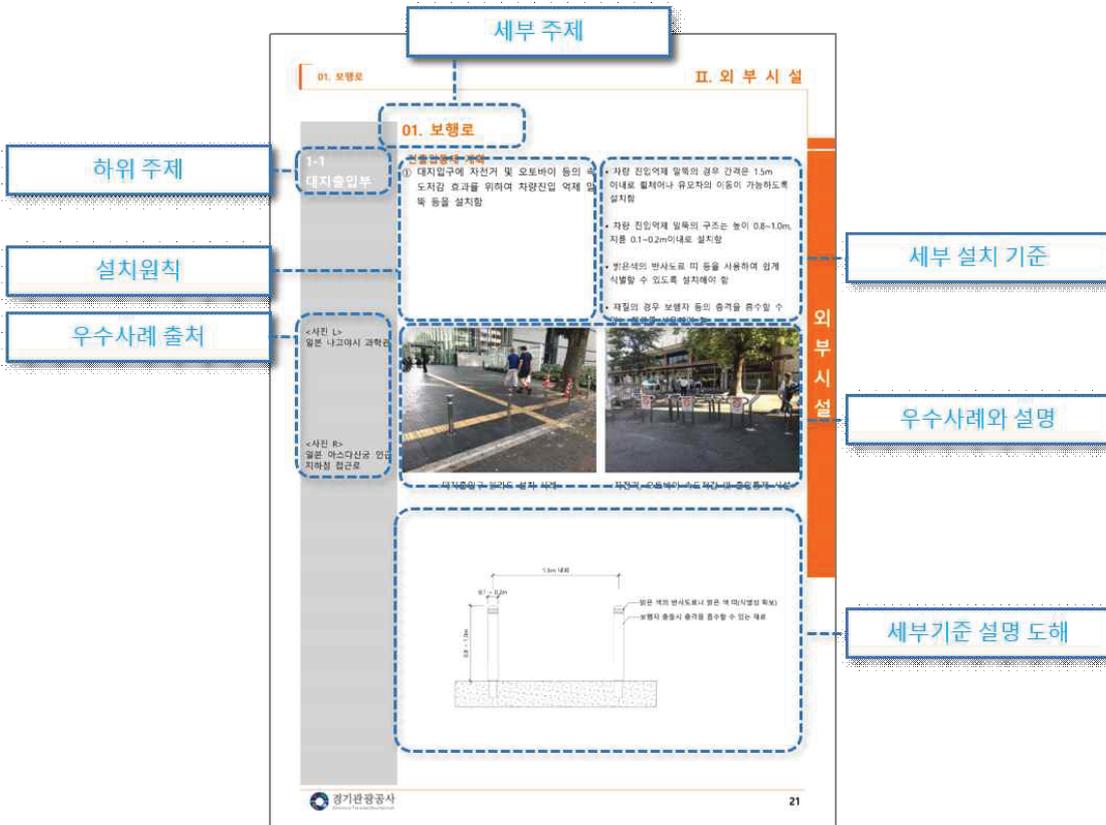
I 가이드라인 작성 원칙

- 가이드라인은 「I. 문턱 없는 관광지란?», 「II. 외부시설», 「III. 안내시설», 「IV. 관광편의시설», 「V. 이용시설», 「VI. 위생시설», 「VII. 기타시설», 「VIII. 부록」으로 구성
- 「I. 문턱 없는 관광지란?」에서는 관광과 문턱 없는 관광의 정의 및 경기도의 관광과 관광지에 대한 정리와 본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활용법을 수록
- 「II. 외부시설», 「III. 안내시설», 「IV. 관광편의시설», 「V. 이용시설», 「VI. 위생시설», 「VII. 기타시설」은 본 가이드라인의 본문으로서 경기도의 문턱 없는 관광지 조성에 활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 「VIII. 부록」에서는 관광 시설별 설치하여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세부 적인 법적 설치 기준을 정리하였음



문턱 없는 관광지란?

가이드라인 세부 구성



■ 문턱 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주제별 적용 범위

| 분류 | 항목 | 역사유적 | 자연자원 | 문화 콘텐츠 | |
|-------------|-------------------|----------------------|------|--------|---|
| 외부 시설 | 1. 보행로 | 1-1 대지출입부 | ● | ● | ● |
| | | 1-2 문턱없는 보행로의 연속성 | ● | ● | ● |
| | | 1-3 보행로의 구조 | ● | ● | ● |
| | | 1-4 야외시설 | ● | ● | ● |
| | | 1-5 자연자원 관광지의 보행로 | △ | ● | - |
| | | 1-6 역사유적 관광지의 보행로 | ● | △ | - |
| | 2. 주차장 | 2-1 설치장소 | ● | ● | ● |
| | | 2-2 주차공간 | ● | ● | ● |
| | 3. 주출입구(문) | 3-1 높이차이 제거 | ○ | ○ | ● |
| | | 3-2 방풍실 | ○ | ○ | ● |
| 3-3 안전한 출입문 | | ○ | ○ | ● | |
| 안내 시설 | 1. 안내설비 | 1-1 점자블록 | ● | ● | ● |
| | | 1-2 시각장애인 유도설비 | ● | ● | ● |
| | | 1-3 시각장애인 안내설비 | ● | ● | ● |
| | | 1-4 안내표시 | ● | ● | ● |
| | | 1-5 청각장애인 안내설비 | ● | ● | ● |
| | 2. 피난·경고설비 | 2-1 시각, 청각 경보, 피난 설비 | ● | ● | ● |
| 2-2 피난구 유도등 | | ○ | ○ | ● | |
| 관광 편의 시설 | 1. 안내데스크 | ● | ● | ● | |
| | 2. 테이블, 작업대 | ● | ● | ● | |
| | 3. 매표소 | ● | ● | ● | |
| | 4.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 ● | ● | ● | |
| | 5. 음료대, 음수대 | ● | ● | ● | |
| | 6. 관람석 | ○ | ○ | ● | |
| 이용 시설 | 1. 출입문 | 1-1 문의 구조 | ○ | ○ | ● |
| | | 1-2 안전한 출입문 | ○ | ○ | ● |
| | 2. 통로 | 2-1 통로의 구조 | ○ | ○ | ● |
| | | 2-2 안전한 통로 | ○ | ○ | ● |
| | 3. 계단 | 3-1 계단의 구조 | ● | ● | ● |
| | | 3-2 안전한 계단 | ● | ● | ● |
| | 4. 경사로 | 4-1 경사로의 구조 | ● | ● | ● |
| | | 4-2 안전한 경사로 | ● | ● | ● |
| | 5. 승강기 | 5-1 설치장소 | ○ | ○ | ● |
| | | 5-2 승강기 구조 | ○ | ○ | ● |
| | | 5-3 이용자조작설비 | ○ | ○ | ● |
| | 6. 기타승강설비 | 6-1 에스컬레이터 | ○ | ○ | ● |
| 6-2 휠체어리프트 | | ○ | ○ | ● | |
| 위생 시설 | 1. 화장실 | 1-1 화장실 접근 | ● | ● | ● |
| | | 1-2 대변기 | ● | ● | ● |
| | | 1-3 소변기 | ● | ● | ● |
| | | 1-4 세면대 | ● | ● | ● |
| | 2. 샤워실 / 욕실 / 탈의실 | 2-1 샤워실 | - | ○ | ● |
| | | 2-2 욕실 | - | ○ | ● |
| | 2-3 탈의실 | - | ○ | ● | |
| 기타 시설 | 1. 숙박시설의 객실 | 1-1 객실의 접근 | - | ● | △ |
| | | 1-2 내부구조 | - | ● | △ |
| | | 1-3 위생공간 | - | ● | △ |
| | | 1-4 안내 및 이용설비 | - | ● | △ |
| | 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 2-1 접근 | ● | ● | ● |
| | | 2-2 내부구조 | ● | ● | ● |
| | 2-3 이용설비 | ● | ● | ● | |

적용범위 범례

- : 적용대상
- : 시설에 따라 적용
- △ : 적용률 낮음

문턱 없는 관광지란?



II

외부시설

01. 보행로
02. 주차장
03. 주출입구(문)



1-1
대지출입부

01. 보행로

진출입통제 계획

① 대지입구에 자전거 및 오토바이 등의 속도저감 효과를 위하여 차량진입 억제 말뚝 등을 설치함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의 경우 간격은 1.5m 이내로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차량 진입억제 말뚝의 구조는 높이 0.8~1.0m, 지름 0.1~0.2m 이내로 설치함
- 밝은색의 반사도로 띠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 재질의 경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

<사진 L>
일본 나고야시 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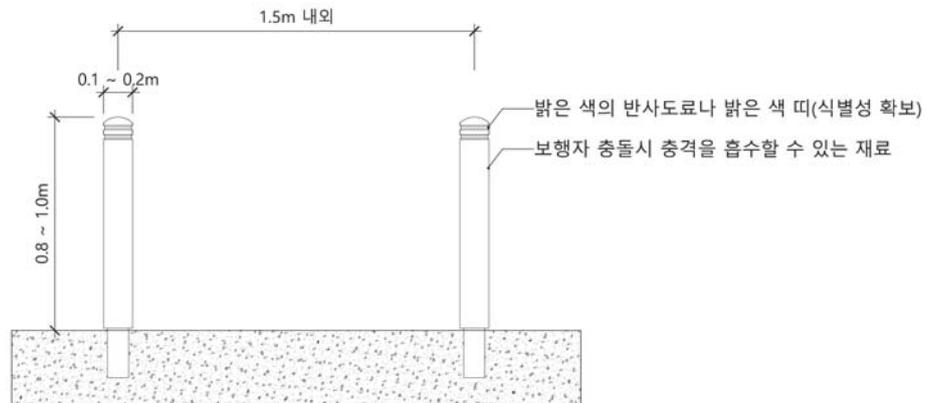


<대지출입구 블라드 설치 사례>



<자전거, 오토바이 속도저감 및 출입통제 시설>

<사진 R>
일본 아사다신궁 인근
지하철 접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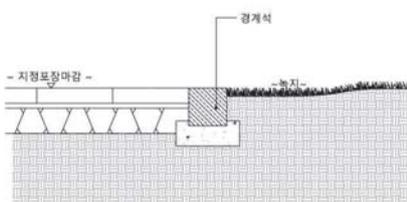
대지입구와 보행로와의 경계

- ① 보도와 부지내 보행로와의 경계는 높이 차이가 없도록 평탄하게 하여 보도에서 관광지로의 접근에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높이차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상 부득이하게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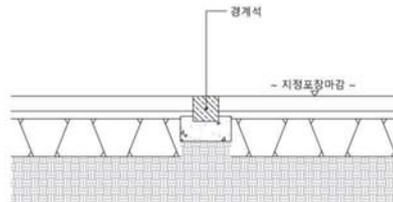


<사진>
일본 나고야성

<높이차이가 제거된 대지 입구 사례>



녹지경계석



포장경계석

1-2
문턱 없는
보행로의
연속성

- ② 관광지가 복수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부출입구를 적절한 위치에 복수로 설치함
 - 관광지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모든 보행로는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와 형태로 설치하도록 권장함
 - 모든 사람의 이용이 어려운 출입구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출입구의 위치를 연속적으로 안내함

문턱 없는 보행로 지정

- 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는 관광지의 주요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보행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함
 - 문턱 없는 보행로는 어린이, 유모차,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로는 뜻함
 - 문턱 없는 보행로는 차도 등과의 경계에 경계석이 설치되며 재료와 색상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구조 설치함
 - 문턱 없는 보행로는 자동차 및 자전거도로와 교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부득이하게 보행로와 차도가 교행하는 경우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설치함

<사진>
일본 아스다신궁에 설치된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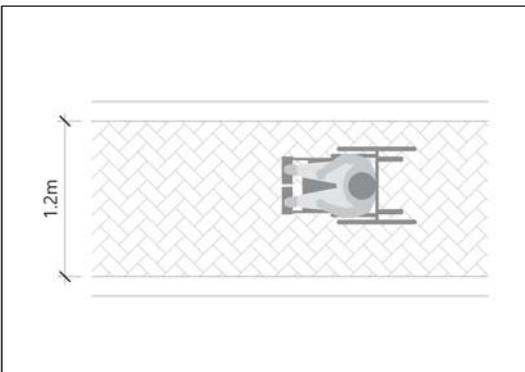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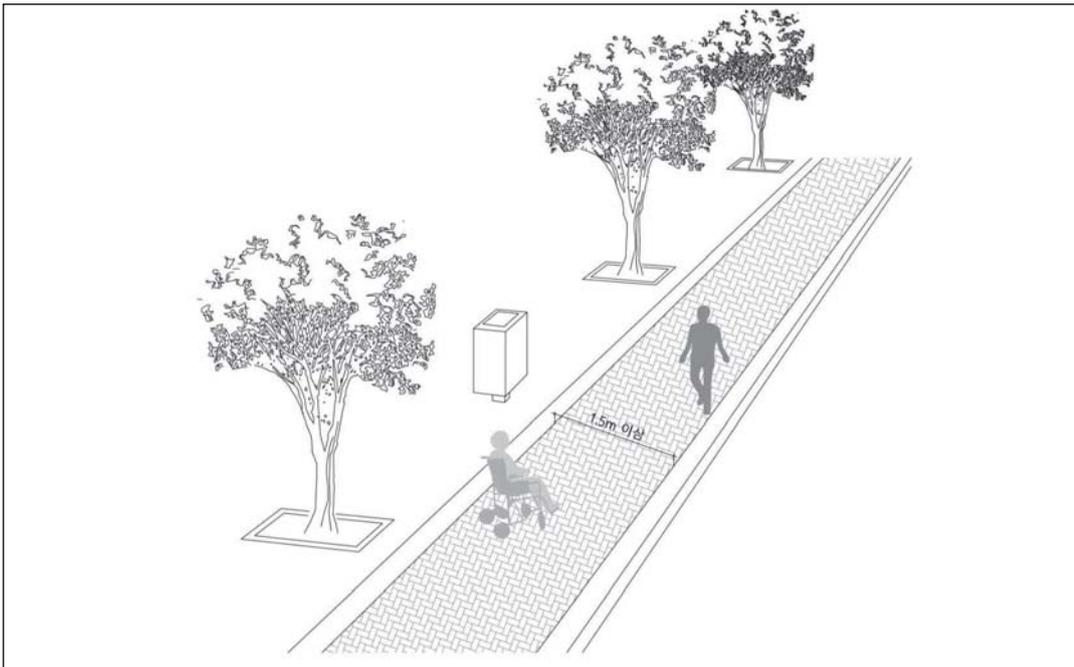
<역사유적의 문턱 없는 보행로 설치 사례 >

- ② 관광지의 특성상 모든 보행로를 문턱없는 보행로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출입구부터 주요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동선에 대하여 문턱없는 보행로로 설치할 수 있음
- 역사유적이거나 자연자원 관광지의 경우 모든 보행로의 구조를 문턱없는 보행로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관광동선에 대해서만 문턱없는 보행로로 설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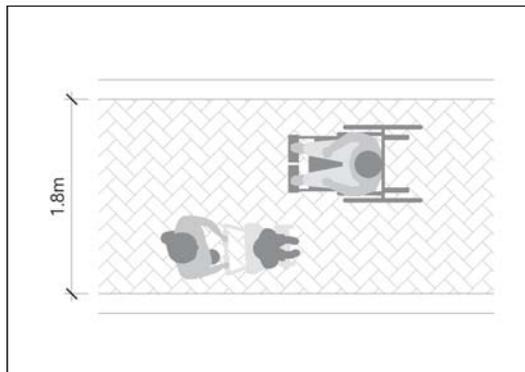
유효폭 및 활동공간

- ① 보행로의 유효폭은 유모차 및 영유아 동반자가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고 통행하고, 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도록 최소 1.5m 이상 확보함
- 보행로의 유효폭 법적 치수는 1.2m 임
- 가급적 유모차나 휠체어 상호간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를 권장함
- 모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될 수 있도록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시설물(배수구 덮개, 휴지통, 벤치, 화단, 가로등, 가로수 등)은 보행로에 설치하지 않음.

1-3
보행로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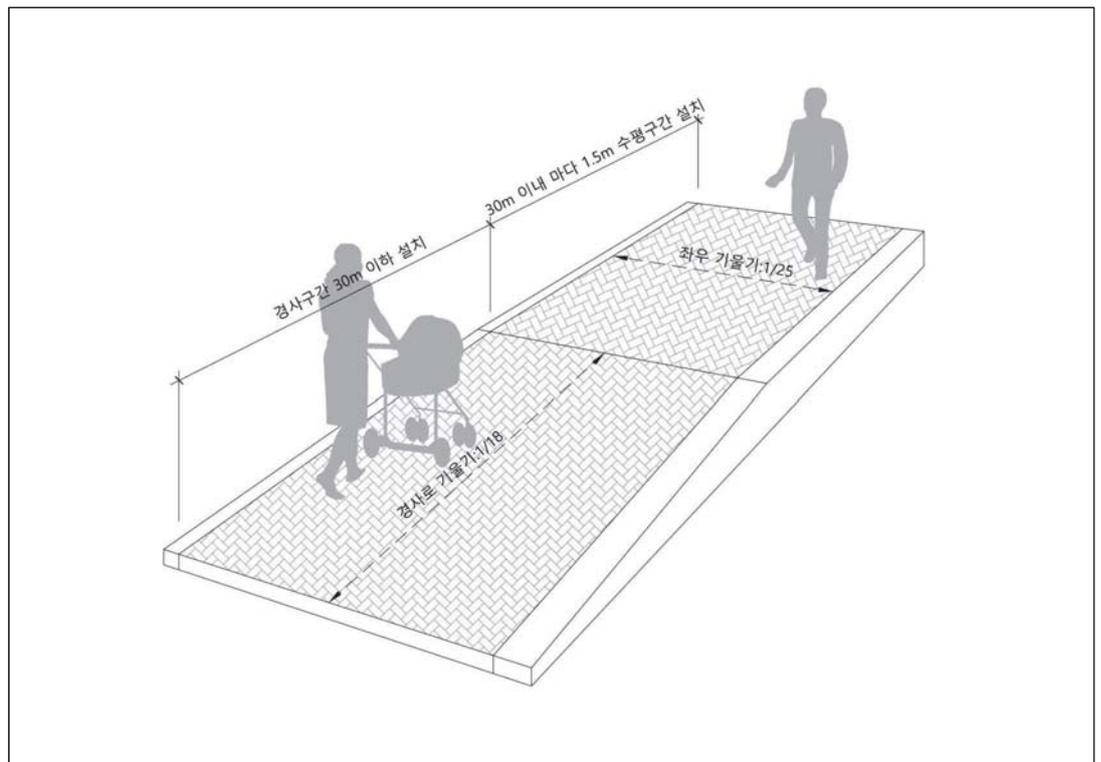
< 법적 보행로 유효폭 >



< 권장 보행로 유효폭 >

기울기

- ① 보행로의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며, 좌우 기울기 1/25 이하로 설치함
- 기울기 1/18이하의 보행로는 보행방향으로 직선 형태로만 설치하며, 곡선 구간에서는 보행방향으로 기울기 1/25로 설치함
 - 경사진 보행로가 연속될 경우 휠체어나 유모차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m 마다 1.5m X 1.5m 이상의 수평구간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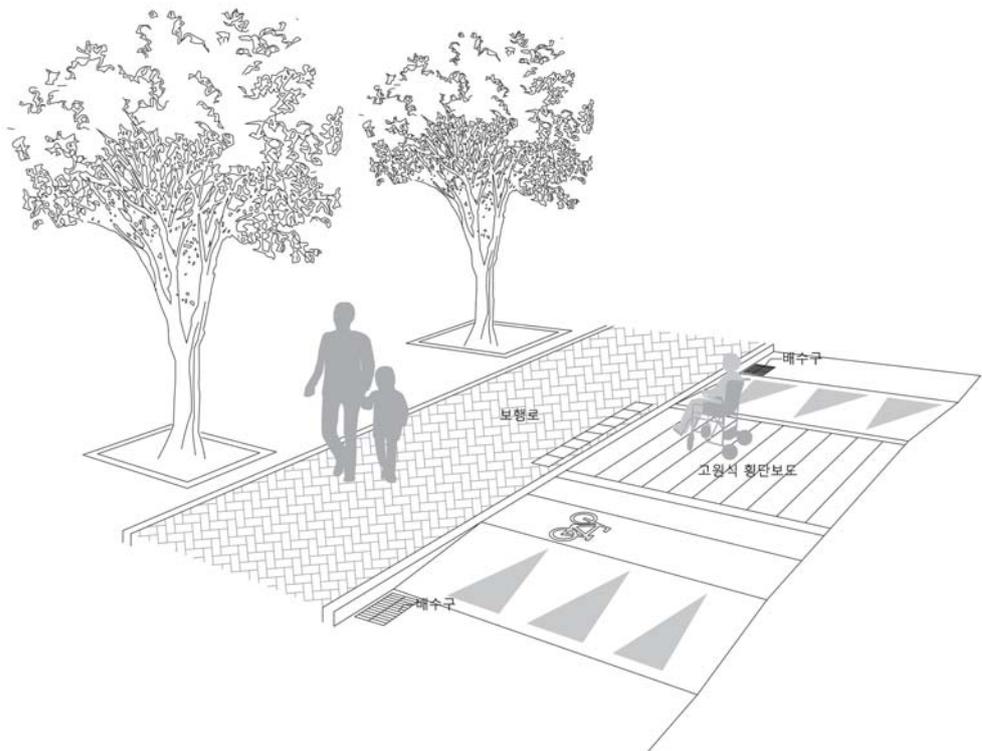
경계

- ① 관광지 내를 연결하는 보행로에 재료분리 구간이 발생할 경우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형상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함
- ② 보도와 차도와의 경계석의 높이는 6cm 이상 15cm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차도의 색상과 질감은 보행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함
 - 차도와 보행로의 경계에는 필요한 경우 울타리 등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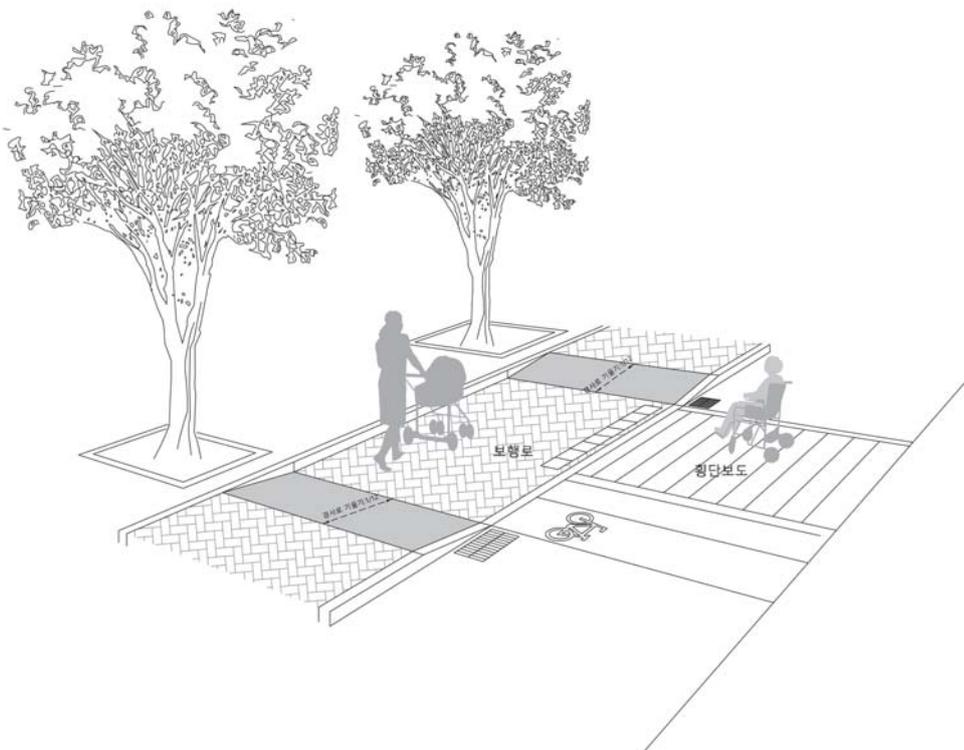


<사진>
일본 시라카와 공원에
설치된 보행로 재료분리
구간

- ③ 보행로에 차도 횡단이 발생하는 경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차량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 고원식 횡단보도란 차도와 보행로의 교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기 위하여 횡단구간을 보행로의 레벨과 동일하게 설치하는 횡단보도를 뜻함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시 도로면 양측면은 배수구를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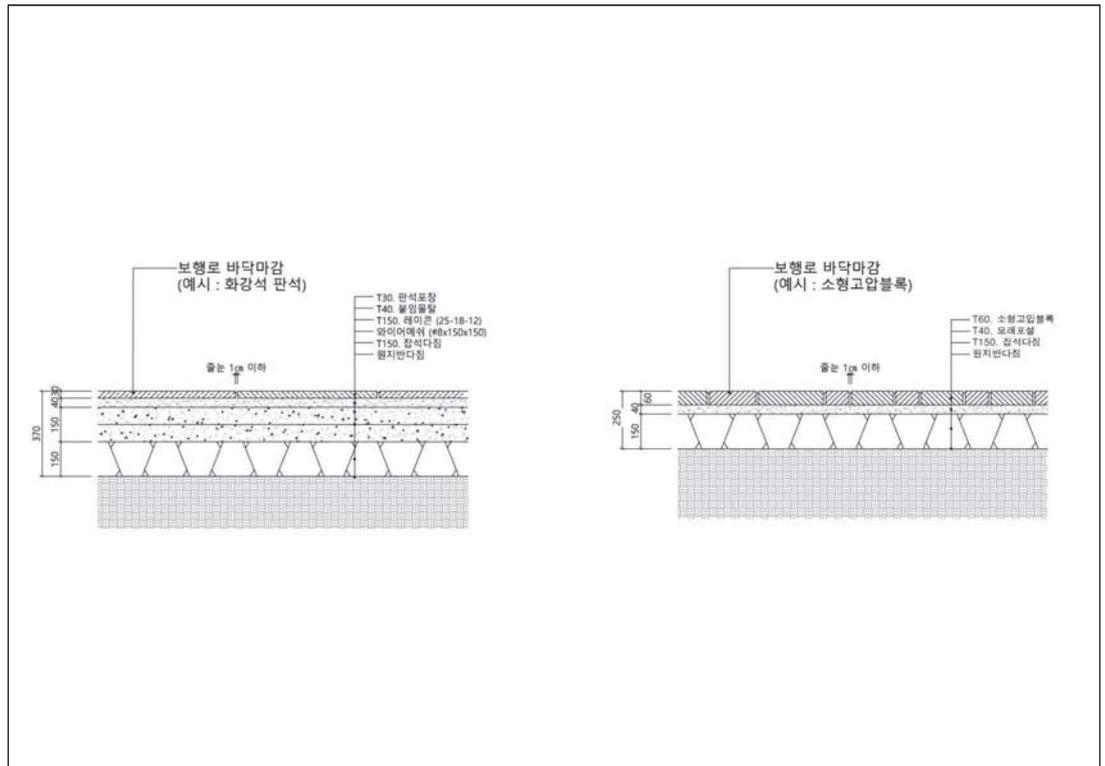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어려운 경우, 턱낮춤 부분 경사로의 유효폭은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를 확보하며, 재료분리구간은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 또한 턱낮춤 부분의 경사 시작부는 1.5m 이상의 수평구간을 확보하여 보행로 이용자가 보행시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보행로의 폭이 충분하지 않아 부분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보행로에 횡경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행로 진행방향으로 경사로를 두어 차도 횡단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함



재질과 마감

- ① 바닥은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하게 마감함
 - 바닥은 비나 눈이 올 경우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함
 - 자연석 포장, 자갈 포장, 잔디 블록 포장 등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함
- ② 블록 등으로 보행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함
 - 블록 등의 줄눈 간격은 1cm이하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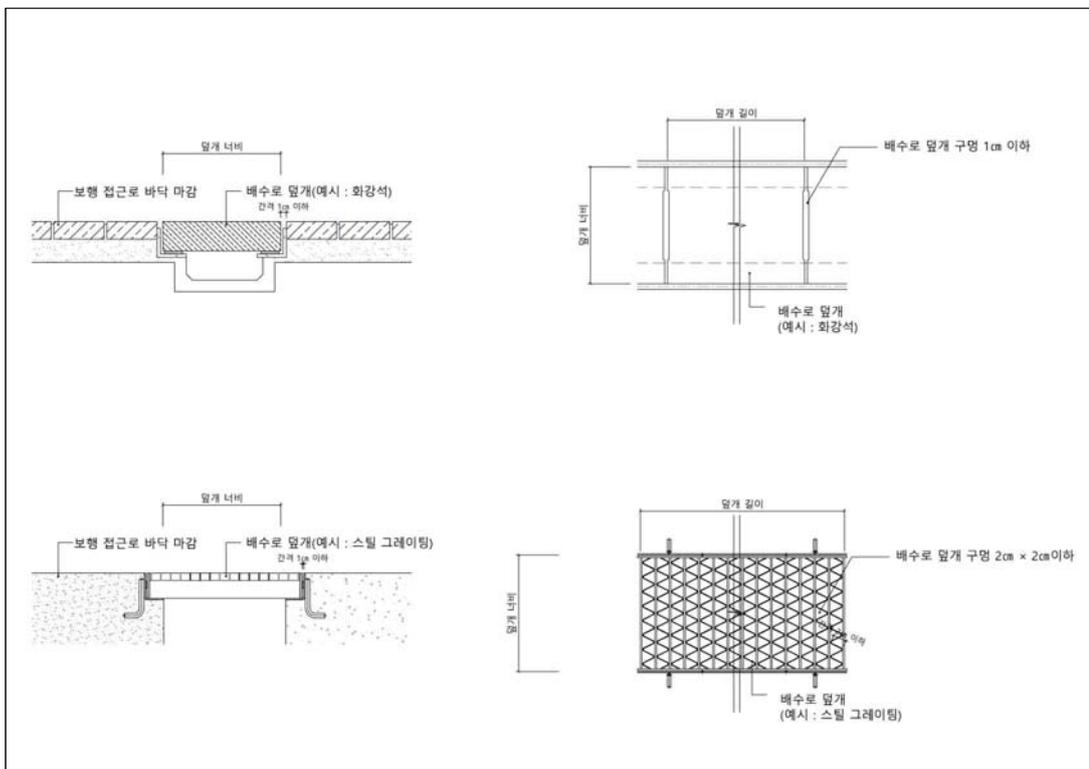
③ 보행접근로에는 배수로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덮개를 설치한 경우에는 보행접근로의 포장면과 높이차이가 없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며, 틈새가 없거나 격자구멍이 모든 방향에서 2cm 이하인 덮개를 설치함
- 이음새 등의 틈새가 한 방향 1cm 이하인 경우 설치가 가능하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행방향으로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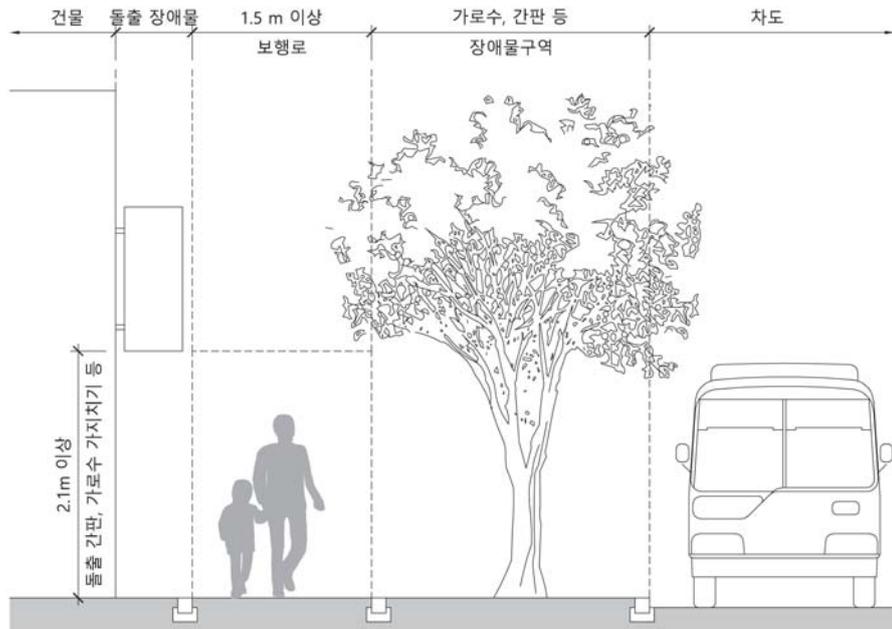
<사진 L>
일본 나고야시 과학관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사진 R>
일본 오아시스21에 설치된 배수로 덮개



보행 장애물

- ④ 보행로에는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음
- 지면에서 높이 2.1m 이내에는 가로수의 가지나 상부돌출물이 없어야 함



<사진>
일본 메이조공원 주변
보행로



<장애물이 제거된 보행로>

- ② 부득이하게 보행장애물이 설치된 경우 접근 방지용 난간, 보호벽을 설치함
- 장애물 접근 방지용 난간은 공사 중이거나 계단하부 공간 등 충돌의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관광객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함
 - 시각장애인이 흰지팡이로 감지할 수 있도록 난간 하부 0.3m 이하의 높이로 가로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는 어린이가 위험지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



1-4
야외시설

통합이용시설

④ 모든 관광객이 이용하는데 차별 없이 이용 가능한 통합이용시설을 설치함

- 장애를 가진 사람도 오감을 이용하여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식재 및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계획함
- 휠체어사용자나 어린이도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거나 만질 수 있는 자연공간을 적극 조성
- 통합이용공간의 식재는 직접 만지거나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4계절에 걸쳐 볼 수 있는 식물로 배치함
- 장애가 있는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 설치를 권장함



<휠체어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그네>

<사진>
독일 바르타바일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휴게시설

- ① 휴게시설은 휠체어와 유모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휴게공간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
 -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는 높이차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높이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휴게시설에 이르는 통로의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함
 - 휴게시설 상부에는 비나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지붕설치를 권장함
 - 휴게시설 주변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도록 식재나 시설물은 시선을 차단하지 않도록 주의함



<휠체어 사용자와 어린이 등의 시선 확보 휴게공간>

<사진>
일본 중부공항에 설치된 시선확보 휴게공간

② 휴게시설의 벤치 및 테이블은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함

- 등받이는 노약자가 등을 기대어 쉴 수 있도록 하며, 손잡이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설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기능을 함
- 벤치는 보행로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배치함
- 벤치의 의자 높이는 0.4~0.45m 내외로 설치함
- 벤치 주변 바닥마감은 보행로의 바닥과 높이차이가 없으며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함
- 테이블의 상부면 높이를 0.7~0.9m 정도로 하며,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을 확보함
- 테이블 주변에는 유모차를 두거나 휠체어의 접근과 회전이 가능하도록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 벤치 및 테이블의 모서리는 둥글게 처리함

<사진>
일본 중부공항에 설치된 벤치



<등받이와 손잡이가 설치된 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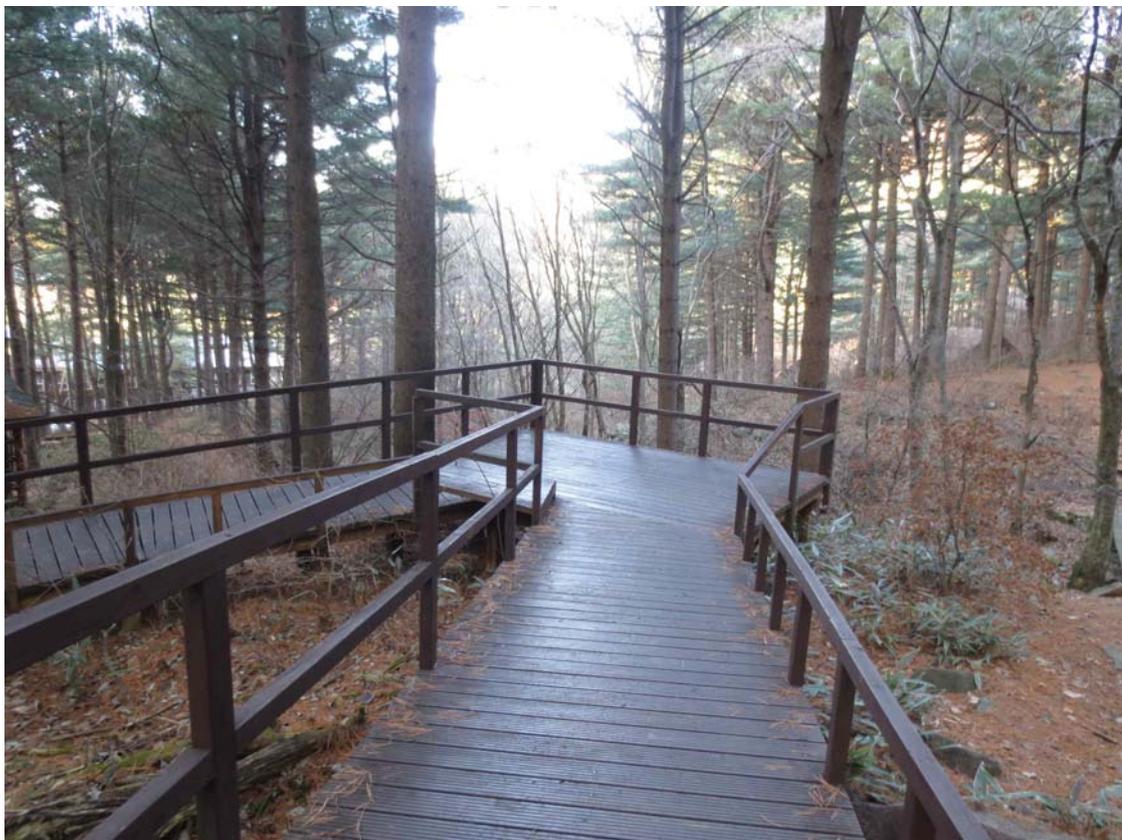
일반사항

① 자연휴양림 등 관광지가 산지나 경사진 대지에 위치하여 모든 보행로가 기울기 1/18이하를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 유모차와 휠체어를 위한 산책로(데크 경사로)를 1구간 이상 계획함

- 산책로는 장애인객실 및 모든 시설에서 보행 안전구간을 통해 진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사가 있을 경우 해당 산책로의 경사로를 1/18이하로 설치함.
- 산책로의 시작과 끝, 중간 지점에는 전체 코스 및 현재위치, 구간별 경사도 등을 표기함.
- 산책로에 설치된 안내판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난간 외부에 설치하도록 함.

1-5 자연자원 관광지의 보행로

<사진> 청태산 자연휴양림에 설치된 데크 산책로



데크 산책로의 구조

- ② 산책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하여 누구나 이용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함
- 산책로는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하며, 기울기는 1/18이하로 설치함.
 - 산책로 측면에는 안전을 위하여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하며, 휠체어 사용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높이 1.2m 내외의 난간을 설치함.
 - 양방향 통행을 위해 유효폭 1.5m × 1.5m 이상의 교행구역의 설치함.
 - 산책로는 장애인이 오감을 통하여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함

<사진>

국립형성숲체원에 설치된 데크 산책로의 체험시설 사례



일반사항

① 관광지내 주요 관광 동선을 연계할 수 있는 보행로에 대하여 바닥마감을 미끄럽지 않으며 평탄한 재질로 포장함

- 역사유적 관광지의 특성상 모든 보행로의 바닥마감을 미끄럽지 않으면 평탄한 재질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주요 관광 동선에 대하여 문턱없는 보행로 구조에 따라 설치함
- 문턱없는 보행로 구조에 따라 설치된 보행로는 주변 보행로와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함



<역사유적 관광지의 보행로 설치 사례>



<주변보행로와의 높이차이 제거>

1-6 역사유적 관광지의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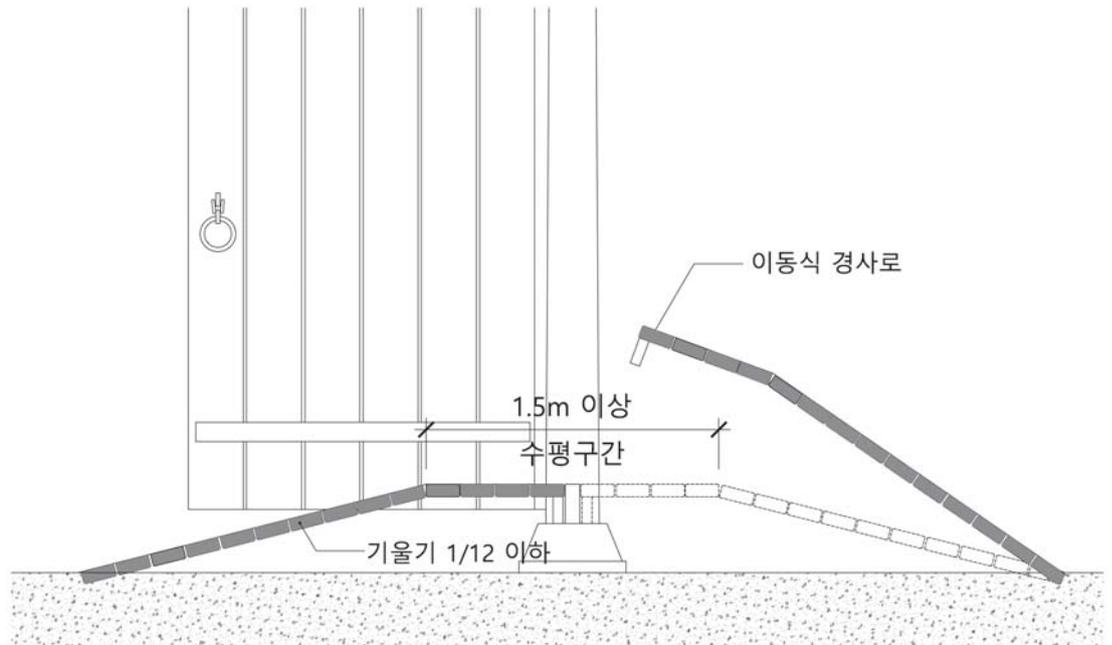
<사진 L, R>
일본 아스다신궁에 설치된 보행로

역사유적 관광지 보행로의 구조

④ 보행로의 구조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힘들지 않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함

- 보행로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동방향에 대하여 회전 등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하며,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교행을 고려하여 1.8m 이상 설치를 권장함

- 보행로 상에 문턱 등으로 인한 높이차이 발생시 보행구간의 경사로 기울기는 1/24이하로 설치하거나, 수평구간을 확보한 경사로는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함



02. 주차장

설치장소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광지의 출입구 또는 출입구의 승강설비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 주차장이 시설내 설치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설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 주차장이 옥외에 설치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광지 출입구 또는 매표소, 관광안내소 등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보행안전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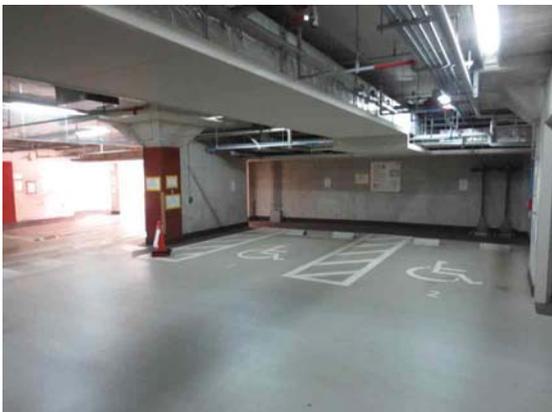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관광지의 출입구 또는 출입구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보행안전통로를 설치함

• 보행안전통로는 차량의 간섭이 전혀 없는 통로를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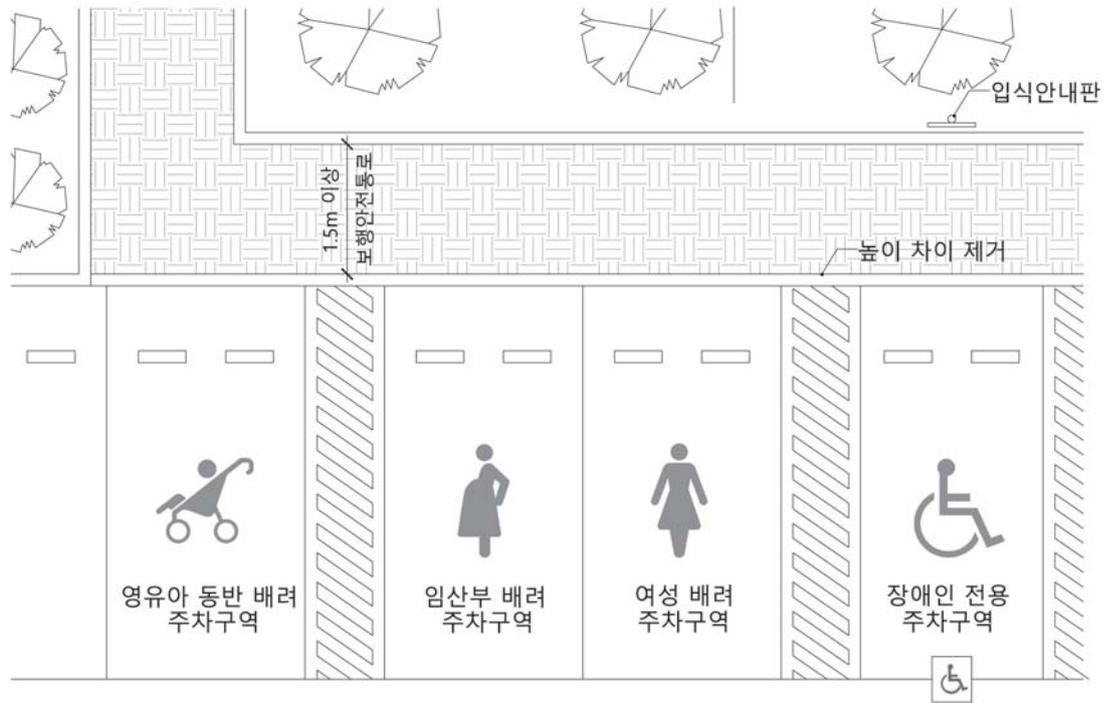
• 보행안전통로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제거하며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높이차이의 법적 허용 치수는 2cm이하이며, 유효폭의 법적 허용 치수는 1.2m 이지만, 휠체어와 유모차의 편리한 이동과 회전 및 활동공간 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편리하고 안전한 통로를 확보함

2-1
설치장소



<사진 L, R>
일본 도쿠가와정원 지하 주차장



<사진 L, R>

국내 관광지에 설치된 잘못된 보행안전통로 사례

- 도로측으로 설치되어 있음



② 보행안전통로는 차도와 명확히 구분되는 재질과 색상으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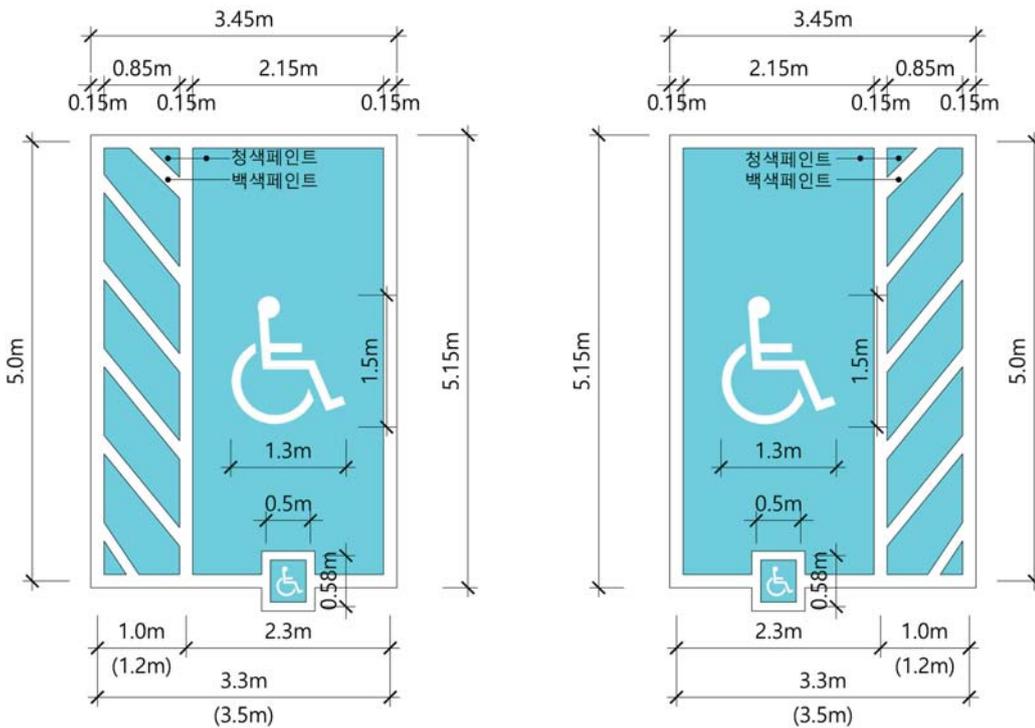
• 우천시 유모차와 휠체어의 이동을 위하여 보행 안전통로에 비가림지붕 설치를 권장함

• 비가림지붕의 지지기둥은 보행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함

2-2
주차공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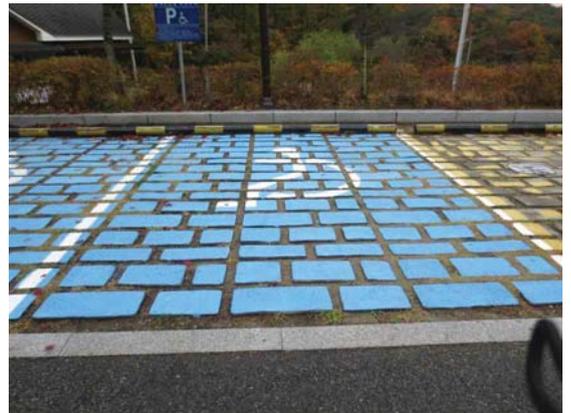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폭 2.3m는 주차공간, 1.0m는 휠체어활동공간으로 확보함
 - 탑승자가 좌우 어느 쪽으로도 탑승 및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연속하여 설치하고 마지막 주차구역은 양측에 휠체어 활동공간 설치를 권장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평행주차형식(폭 2.0m, 길이 6m)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탑승자가 차도 측으로 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직각 주차 방식으로 설치함
 - 직원 중에 휠체어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광객 주차장과 별도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장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조

- ①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1/50이하로 설치함
 -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안전을 위하여 수평한 구조로 설치함
- ②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보행안전통로는 휠체어나 유모차의 이동이 어려운 자갈 포장이나 잔디블록 포장은 설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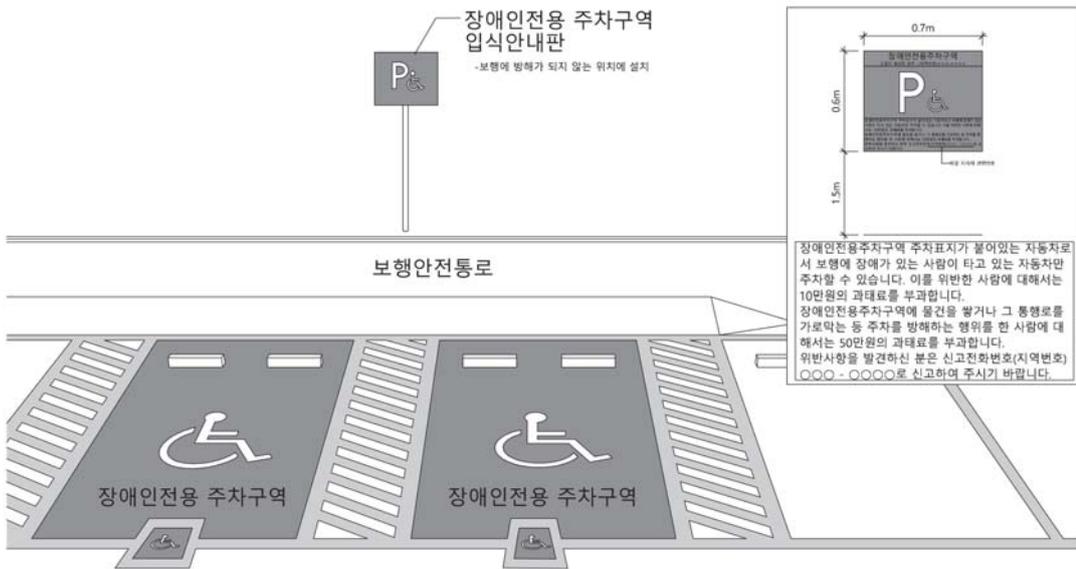
<사진 L, R>
국내 관광지에 설치된
잘못된 주차장 사례



<주차장내 잔디블록이나 자갈포장은 이용에 불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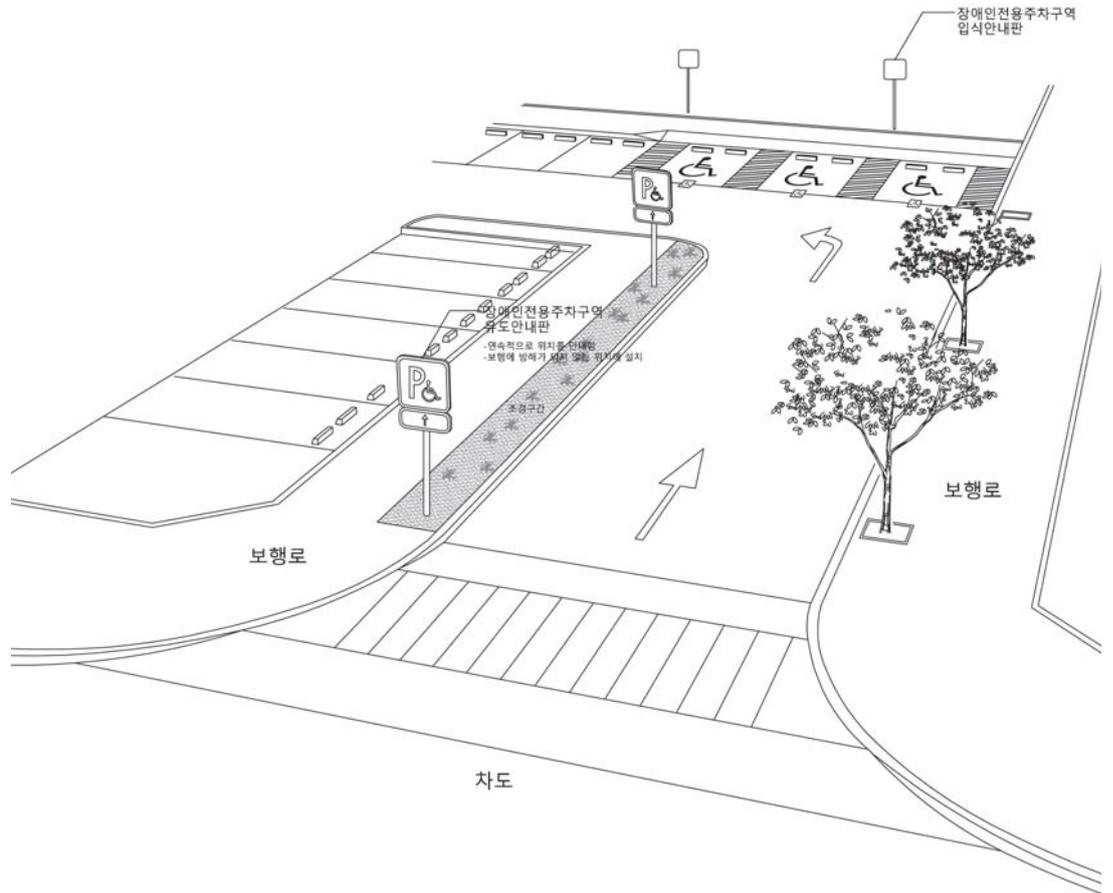
유도 및 표시

- 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 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설치
 -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 전용표시 : 가로 1.3m, 세로 1.5m
 -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 가로 50cm, 세로 58cm
-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m, 세로 0.6m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m로 설치함
 - 안내표지는 가급적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벽부형 또는 조경구간에 설치함
 - 보행구간에 인접하여 설치할 경우 안내판 모서리에 충격방지 조치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 ③ 주차장이 지하 또는 차량출입구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에 설치된 경우, 주차장 입구로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까지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지 부착
 - 주차장 출입구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유도 연속적으로 유도안내표지를 설치함
 - 유도 안내 표지는 차량에서 식별하기 용의한 크기와 색상, 위치에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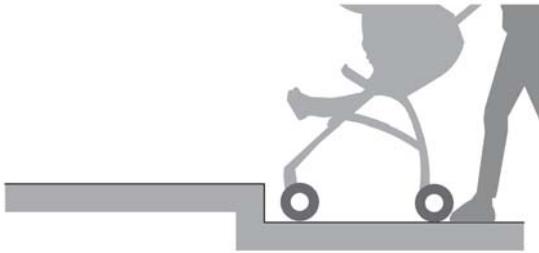


03. 주출입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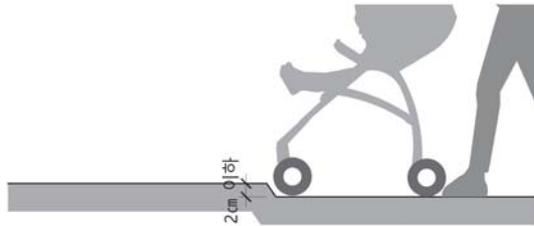
주출입구 접근

① 보행로에서 시설의 출입구가 가는 동선에는 높이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높이차이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형상 부득이하게 높이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2cm 이하로 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사용자가 손쉽게 오를 수 있도록 모서리 처리를 함



< 높이차이가 있는 바닥마감 : X >



< 높이차이를 경사처리한 바닥마감 : △ >



< 평탄한 바닥마감 : ○ >

② 주출입구는 처음 방문한 관광객이라도 쉽게 인지할 수 있고,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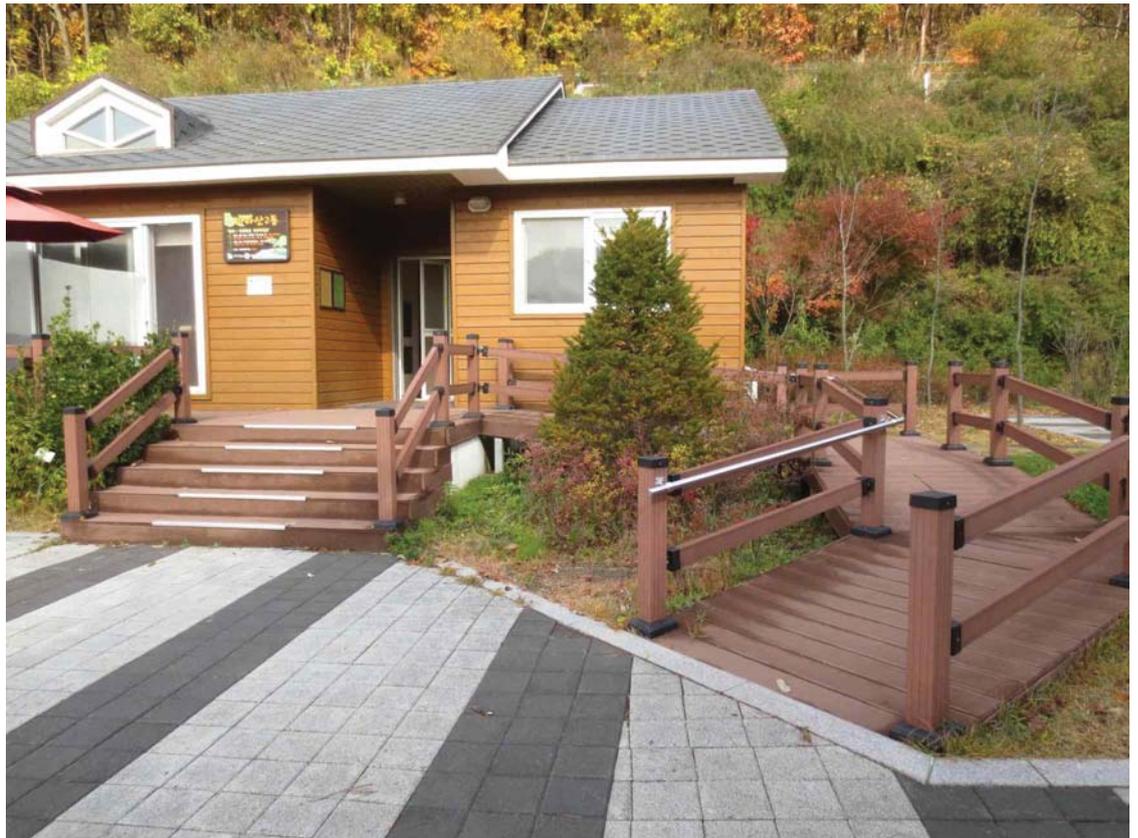
- 주출입구에서 로비로 들어서면 안내데스크, 전시 및 관람공간,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주요 공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함
- 주출입구에서 주요공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충분한 안내 설비를 주출입구에 배치함

3-1
높이차이 제거

수직이동 설비

- ④ 시설의 주출입구 접근 동선상의 보행로가 기울기 1/18 이하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출입구에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 할 수 있음
- 경사로 또는 휠체어 리프트 설치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위하여 계단을 함께 설치함
 - 계단과 경사로는 사용자가 멀리 돌아가지 않도록 이동거리가 짧은 곳에 설치함
 - 계단에 설치되는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안전 사고의 우려가 있어 지양하며, 수직형 리프트 설치를 권장함
 - 경사로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04. 경사로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휠체어리프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06. 기타 승강설비의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사진>
바리산 자연휴양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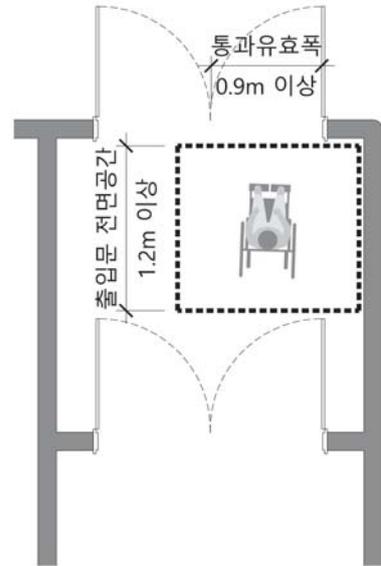
3-2
방풍실

문의 구조

- ① 주출입문은 회전문으로 설치해서는 안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출입문 구조로 설치함
 - 회전문은 휠체어나 유모차 등의 이용이 어려우며 시각장애인의 경우 방향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어 회전문만을 설치해서는 안됨
 - 회전문의 경우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문과 함께 설치시 보행자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설치 가능함
 -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문은 자동문 또는 자동 여닫침 기능이 있는 여닫이문을 설치함
 - 유모차나 휠체어의 이용을 고려하여 출입문 중 1개소는 자동문 설치를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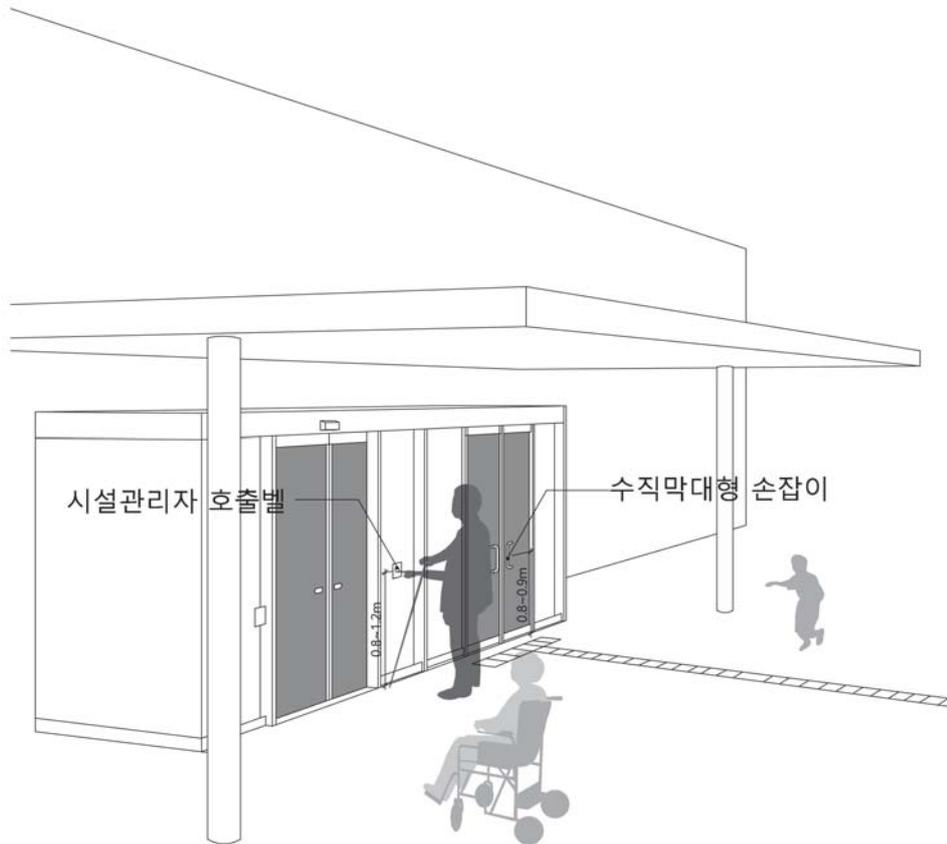


- ② 방풍실 등으로 출입문이 연속될 경우 출입문 전면 유효공간은 1.2m 이상 확보함
- 출입문 전면 유효공간은 출입문 개폐시 소요되는 공간을 제외하고 확보함



- ③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하며 통로와의 높이차이는 2cm이하로 설치함
- 출입문 통과 유효폭은 문 프레임과 문짝 두께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유효폭을 뜻함
- 양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 한쪽문 개방시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유모차나 휠체어 등의 이동을 위하여 문턱 등은 제거함

- ④ 출입문 손잡이는 막대형 또는 레버형 손잡이를 설치함
 - 손잡이 높이는 바닥에서 0.8~0.9m에 설치함
 - 막대형 손잡이 설치시 아동부터 성인까지 모두 이용이 용이한 수직 막대형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⑤ 자동문의 경우 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 옆에 설치를 권장함



3-3
안전한 출입문

경고블록

① 외부 출입문에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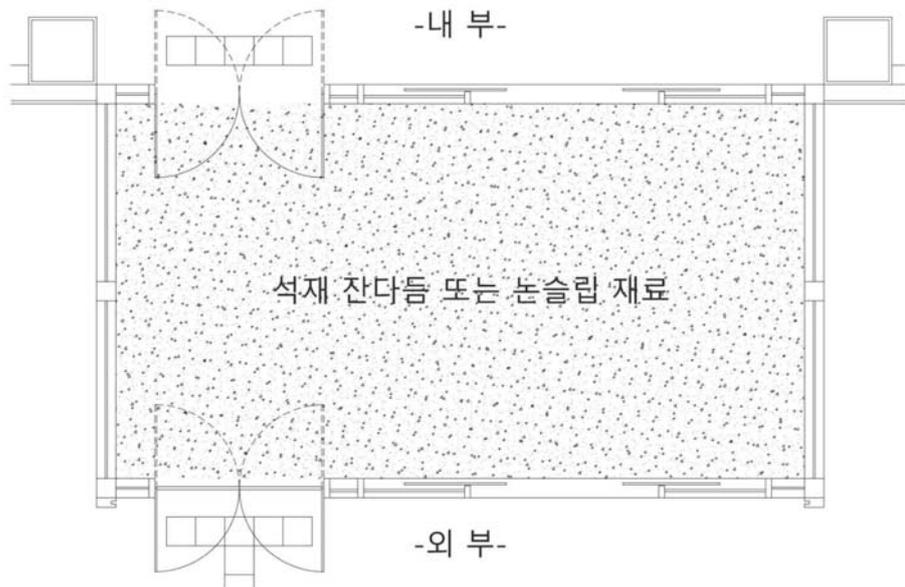
- 점자블록은 문짝을 기준으로 0.3m 전면에 통과 유효폭 만큼 설치함
- 점자블록은 온장으로만 설치함
- 방풍실 길이가 3m 미만일 경우 방풍실 내부 점자블록은 제거 가능함
- 연속된 출입문이 2개소 이상일 경우 시각장애인의 접근 동선을 고려하여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미끄럼방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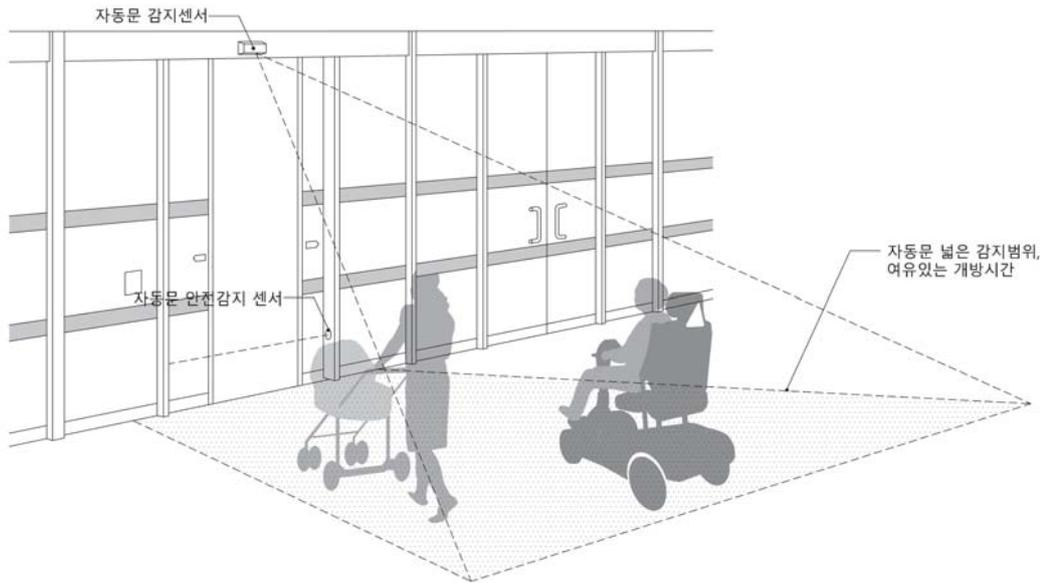
① 방풍실 내부의 바닥마감은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함

- 우천시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해 바닥이 젖을 수 있으므로 방풍실 또는 외부 출입문 주변의 일정 구간의 바닥마감은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치함
- 물이 묻어도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는 석재 잔다듬 또는 논슬립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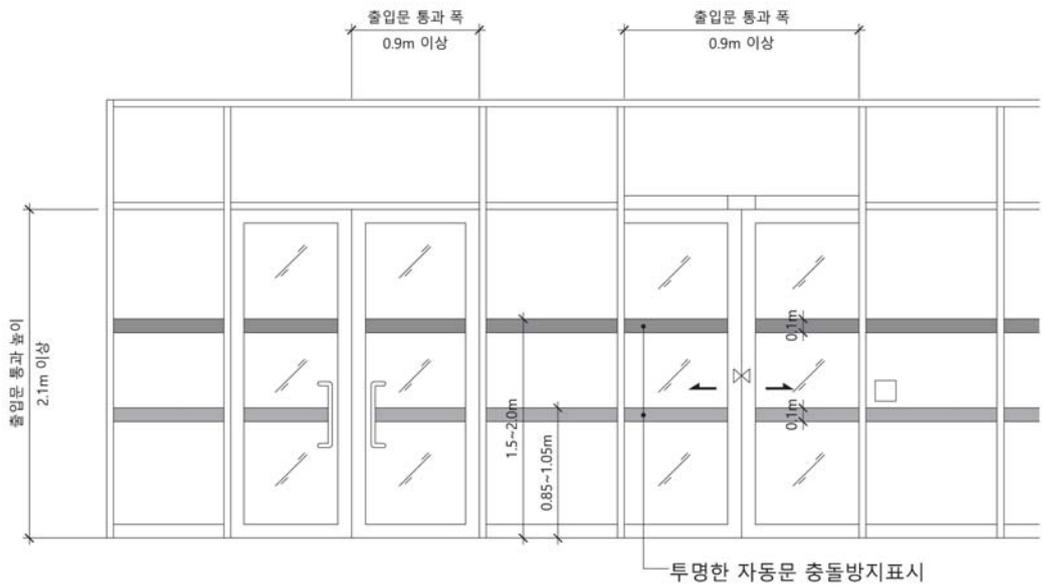


충돌방지 조치

- ① 출입구에 투명한 벽체나 유리문으로 설치할 경우 보행자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해야 함
 - 투명 벽체의 경우 불투명 시트지나 시선 높이에 식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색띠를 설치함
 - 출입구 주변에는 야간에도 충분한 밝기의 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설치함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해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해야 함
 - 여닫이문은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확보되는 도어체크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함



- ② 출입구 주변으로 보행시 충돌할 우려가 있는 장애물은 제거하여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함
 - ③ 출입문에는 어린이나 유아의 손가락 등이 문틈에 끼일 우려가 있으므로 손끼임 방지설비를 설치함
- 방풍실 내부와 외부에 안내판이나 우산거치대를 설치하는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로 하며, 적절한 공간을 확보함



외부시설 개선안

현 황



보행로에 구멍간격이 넓은 배수구덮개가 설치되어 있음

개선안



보행로에 설치되어있는 배수구덮개는 구멍간격이 작은 디자인 그레이팅으로 설치함



보행구간 양 측면으로 바퀴 등의 추락 위험이 있음



추락위험 있는 구간에 대하여 높이 5cm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벤치가 조경구간에 설치되어 있으며, 등받이, 손잡이가 미설치되어 있음



벤치가 있는 구간까지 보행구간으로 마감하며, 벤치에는 등받이와 손잡이를 설치함

외부시설 개선안

현 황



장애인주차구역의 바닥 안내표시가 법적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개선안



바닥안내표시를 법적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휠체어 활동공간 노면표시는 출입구 접근 동선과 연계하여 설치함



관광지내 보행로가 줄눈간격이 넓은 자연석 포장으로 되어 있음



관광지내 모든 보행구간은 줄눈 간격이 1cm 이하의 평탄하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포장함



출입문에서부터 경사구간이 바로 시작함



출입문 전면에 경사구간 설치시 충분한 수평수간을 확보하고 경사구간을 설치함



Ⅲ

안내시설

01. 안내설비
02. 피난 · 경고설비



1-1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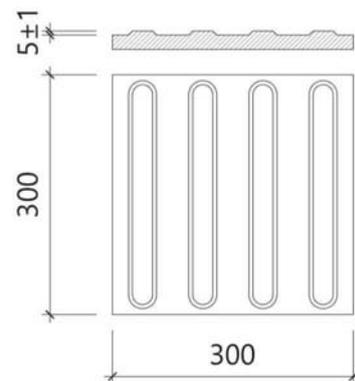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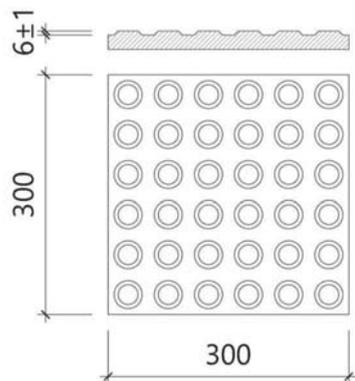
01. 안내설비

일반사항

- ① 점자블록은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함
 - 대지입구부터 관광지의 출입구까지는 시각장애인의 유도를 위하여 점자블록을 설치함
 - 대지입구와 인접한 외부 보도에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유도블록의 시작을 외부 보도의 점자블록에서부터 시작함
 - 관광지 내부나 인접한 보도에 대중 교통시설이 있을 경우 대중교통시설부터 유도블록을 시작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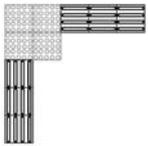
규격 및 색상

- ①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감지용 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으로 설치함
 - 점자블록의 크기는 0.3m × 0.3m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함
 -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함
 -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cm로 함
 -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cm로 함
 -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음
 -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설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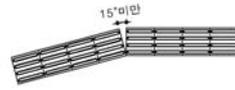
- ①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이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m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함
-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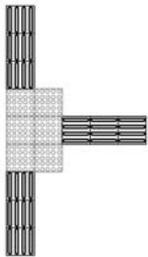
ㄱ 자 꺾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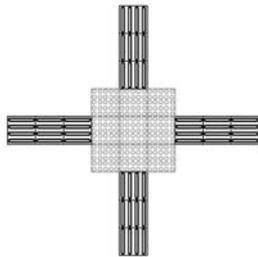
꺾임(15도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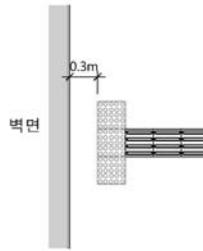
꺾임(15도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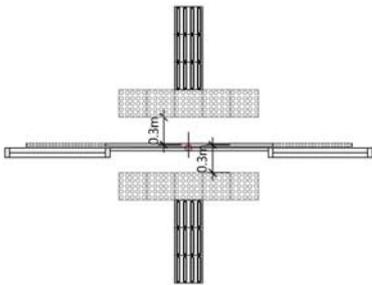
T 자 교차, 3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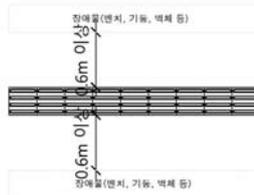
+ 자 교차, 4방향



경고블록 설치방법



출입문 점자블록 설치방법



유도블록 설치방법

1-2
유도 및
안내설비

일반사항

- ① 관광지 이용 편의를 위하여 관광지와 건물의 출입구 부근에 관광지와 건물 내부를 안내하는 안내시설을 설치함
 - 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 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함
 - 안내판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함
 -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 전면 0.3m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함
 - 모든 사람의 이용을 위하여 문자안내와 음성안내 기능을 확보함
 - 외국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외국어 안내 기능을 확보함
- ② 안내시설에는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한 설비 및 시설의 설치 위치를 명확히 표기하여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

<사진 L>
일본 나고야시 쇼핑물 화장실 안내판



<사진 R>
일본 아스다신궁에 설치된 안내판 확대

<사진>
일본 나고야성에 설치된 안내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 ①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관광지 출입구와 건물 출입구에는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설치함
 - 점자안내판에는 주요시설의 위치 또는 공간의 배치를 점자로서 안내함
 - 일반안내도에 점자를 병기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의 위치 또는 공간의 배치를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기하며 점자를 병기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② 점자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함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 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 ~ 1.2m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함
 -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 ~ 1.2m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1.5m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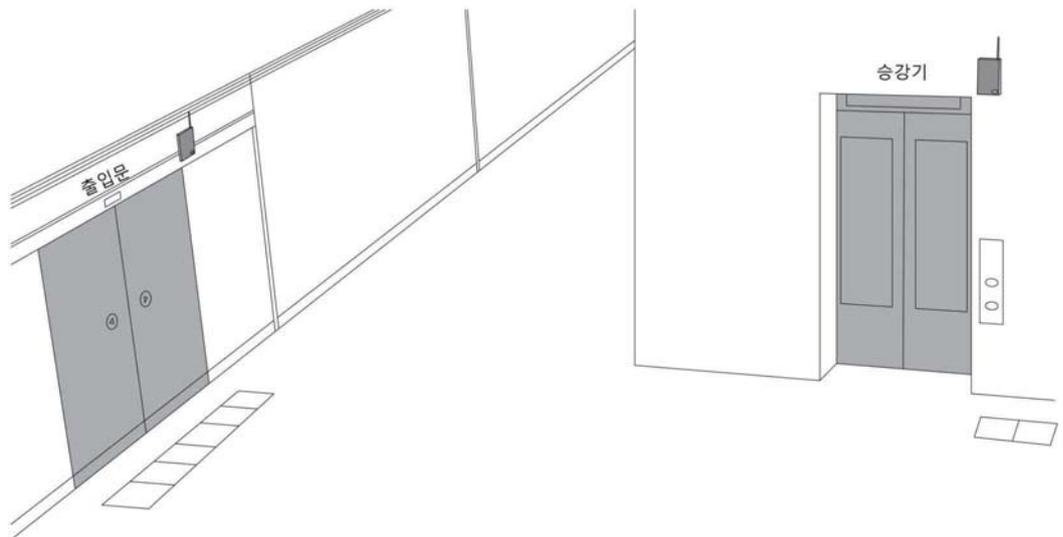
<사진 L, R>
임직각 평화누리에 설치된 종합안내판과 촉지도식 안내판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음성안내장치

- ④ 시각장애인의 관광지 이용을 위하여 다양한 음성 및 유도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이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할 수 있음
 - 시각장애이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안내표시

- ① 안내표시는 모든 사람이 쉽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함
 - 안내표지의 색상은 청색과 백색을 사용함
 - 안내표지의 크기는 단면을 0.1m 이상으로 함
 - 시각장애인용 안내표지와 청각장애인용 안내표지는 기본형과 함께 설치함
 -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표지에는 점자를 병기하여야 설치함
 - 설치방법은 장애인의 이동에 안전하고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사용 장애인의 신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
 - 편의시설의 안내표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별표 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기준'에 따라 설치함



<KS S ISO 7001>



<ISO 7000>

- 장애인 안내표시는 2014년 ISO 기준과 KS 기준이 동일하게 변경되었음
-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변경전의 ISO 7000의 안내표지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법적으로 규정하는 안내표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표시를 사용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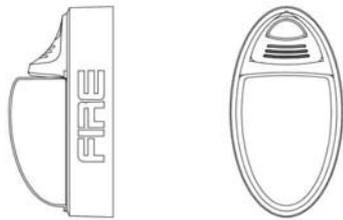
2-1
경보설비

02. 피난·경고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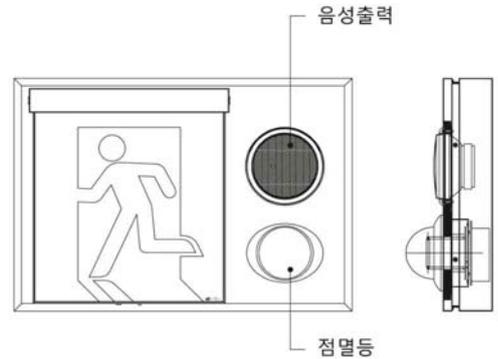
설치기준

- ①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설비 등을 설치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 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함
 - 시각경보기는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개인적 공간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설치함
- ① 피난구에 설치하는 유도등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구조로 설치함
 -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함

2-2
피난구 유도등



시각 경보기



피난구 유도등

안내시설 개선안

현 황



표준형이 아님 점자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개선안



표준형 점자블록을 매립식으로 설치함



초지도식 안내판의 위치를 안내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촉지도식 안내판 전면 30cm에 점형블록을 설치함



안내판의 장애인 안내표시가 잘못 표기되어 있음



안내판에는 법적 규정에 맞는 안내표시를 설치하고 안내판의 내용은 누구나 알기 쉽게 표기함

안내시설 개선안

현 황



안내판의 장애인 안내표시가 잘못 표기되어 있음

개선안



안내판에는 법적 규정에 맞는 안내표시를 설치함



피난구 유도등에 점멸과 음성기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피난구에 설치하는 피난구 유도등에는 점멸과 음성기능이 있는 제품을 설치함



일반화장실에 시각경광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일반화장실 대변기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시각경광등을 설치함



IV

관광편의시설

01. 안내데스크
02. 테이블, 작업대
03. 매표소
04.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05. 음료대, 음수대
06. 관람공간



01. 안내데스크

설치 장소

- ① 안내데스크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안내데스크 전면 0.3m 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바닥재질을 달리할 수 있음
 - 출입구부터 안내데스크 전면까지 시각장애인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구조

- ② 안내데스크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휠체어 사용자, 아동을 포함하여 키가 작은 사람 등이 이용 가능한 안내데스크를 설치함
 - 안내데스크의 상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설치함
 - 안내데스크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 안내데스크에는 우산이나,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걸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사진>
일본 중부공항에 설치된 안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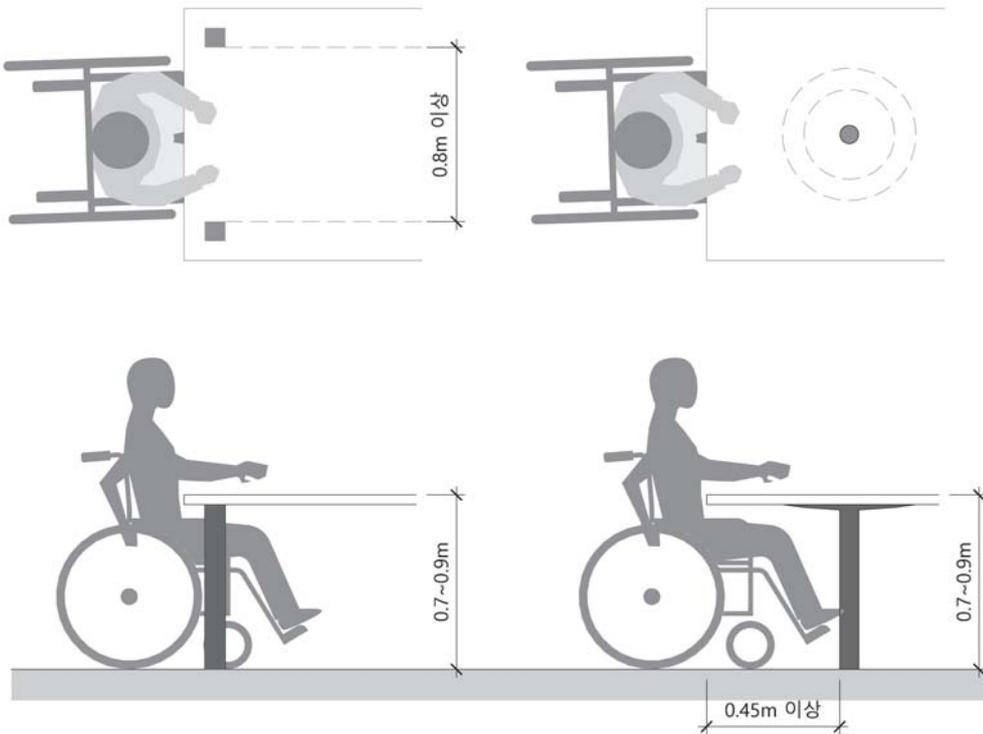
02. 테이블, 작업대

설치 장소

- ① 테이블, 작업대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작업대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구조

- ② 테이블, 작업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테이블, 작업대의 상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설치함
 - 테이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 테이블, 작업대의 의자는 고정형이 아닌 이동형으로 설치하여 휠체어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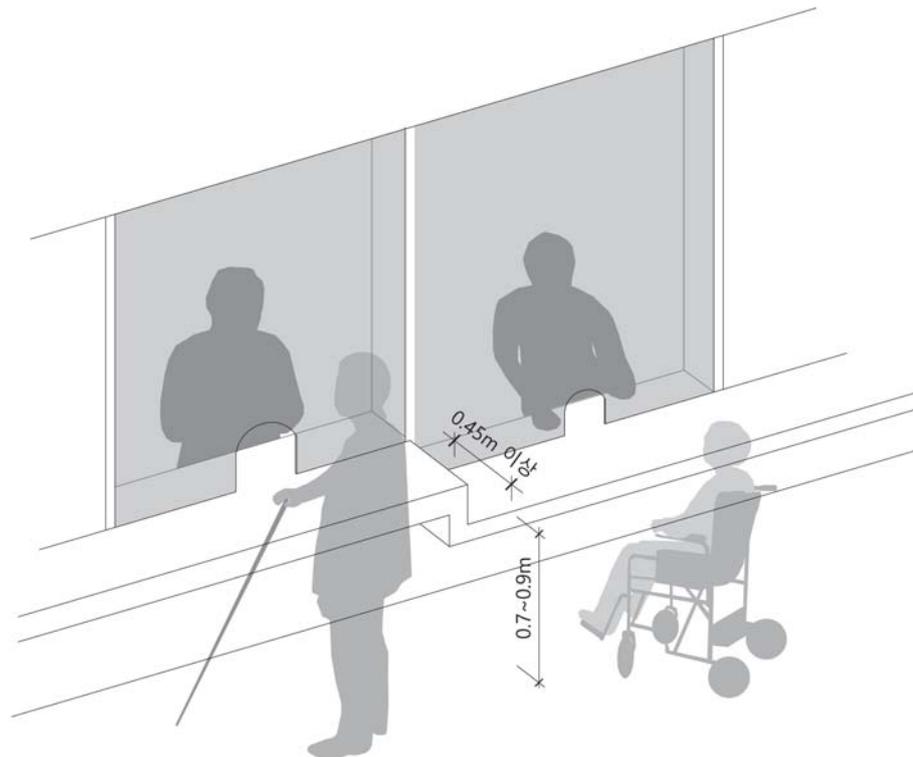
03. 매표소

설치 장소

- ① 매표소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매표소 전면 0.3m 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형블록이나 바닥재질을 달리할 수 있음
 - 건물 또는 관광지 출입구부터 매표소 전면까지 시각장애인의 유도를 위한 선형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구조

- ② 매표소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매표소의 상판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로 설치함
 - 매표소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 매표소에는 우산이나, 가방 등을 놓을 수 있는 선반이나 걸이대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 설치되는 매표소에는 비가림 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이때 비가림 지붕의 돌출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함



04. 자동발매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 ① 자동발매기와 자동판매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구조

- ② 자동발매기와 자동판매기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지폐/카드 투입구와 조작버튼, 상품출구의 높이는 0.4~1.2m 이하로 설치함
 - 자동판매기와 자동발매기의 동전/지폐/카드 투입구와 상품출구에는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점자표지판 설치를 권장함
 - 자동판매기의 조작버튼은 품목과 금액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기 쉽도록 점자가 병기된 누름버튼식으로 함
 - 자동발매기가 터치형 조작판일 경우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가 병기된 직원호출벨(버튼) 설치를 권장함
 - 외부에 설치되는 자동발매기와 판매기에는 비가림 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이때 비가림 지붕의 돌출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함



<사진>
일본 지하철에 설치된
자동발매기

05. 음료대, 음수대

설치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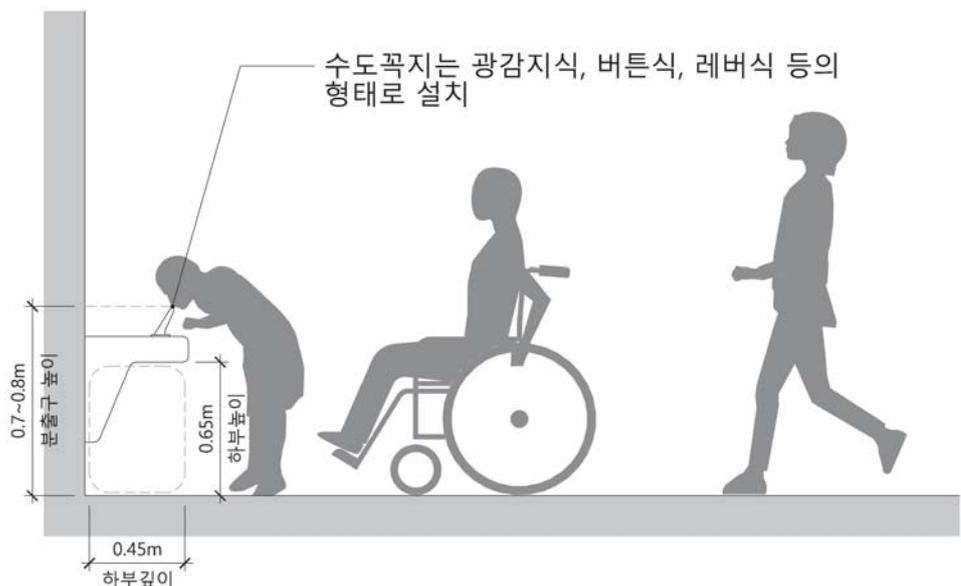
- ① 음료대 또는 음수대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외부에 설치되는 음료대 또는 음수대의 접근 동선상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음

구조

- ② 음료대 또는 음수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식수 분출구의 높이는 어린이나 휠체어사용자가 마시기 쉽도록 바닥면에서부터 0.7~0.8m로 설치함
 - 외부에 설치되는 매표소에는 비가림 지붕 설치를 권장하며 이때 비가림 지붕의 돌출 길이는 1.5m 이상으로 함

<사진출처>

Plan and Design for Choice -Universal Design Guidelines for Outdoor Spaces, City of Pitt Meadows and the District of Maple Ridge,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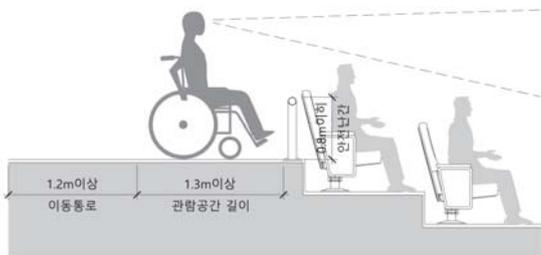
06. 관람공간

설치 장소

- ① 공연장 및 관람장소에는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공간)을 확보함
 - 전체 관람석의 1% 이상은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설치함
 - 출입구부터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까지는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피난구에서 가깝거나 피난동선에 인접한 위치에 설치함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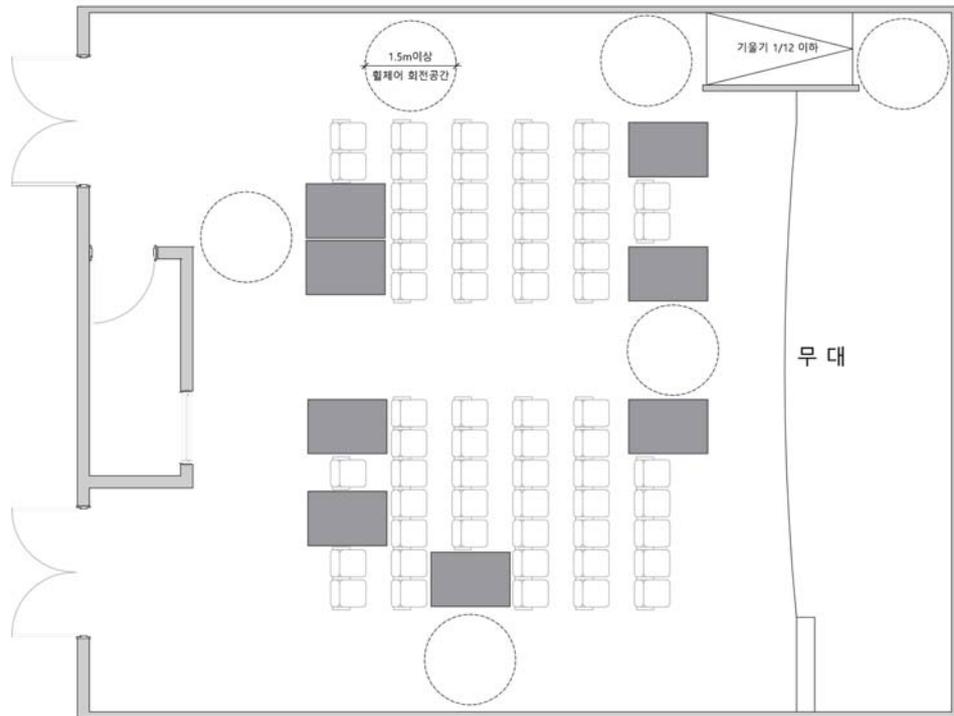
- ②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 면적은 1석당 폭 0.9m이상, 깊이 1.3m 이상으로 설치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함.
 -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제거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0.8m 이하의 높이로 설치함
 -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함
 -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함
 -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음
 -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를 권장함



무대

④ 무대에는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함

- 관광지의 무대는 다양한 무대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무대 접근 높이차이를 제거하거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함
- 경사로는 통과 유효폭 0.9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하며, 무대 높이가 0.15m를 초과할 경우 양측에 손잡이를 설치함
- 단, 경사로의 손잡이가 무대 관람에 장애가 될 경우 한쪽으로만 설치 가능함



기타시설 개선안

현 황



안내데스크 테이블 하부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개선안



안내데스크 상판 높이는 0.85m 내외로 설치하며 하부에 높이 0.65m 이상, 깊이 0.45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무대에 2cm를 초과하는 높이차이가 발생함



무대 높이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울기 1/12이하의 경사로를 설치함



휠체어 장애인 관람 공간만 확보되어 있음



휠체어 사용자가 동반인과 함께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좌석을 구비함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MEMO







이용시설

01. 출입문
02. 통로
03. 계단
04. 경사로
05. 승강기
06. 기타 승강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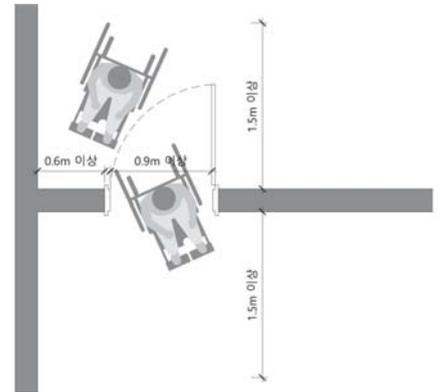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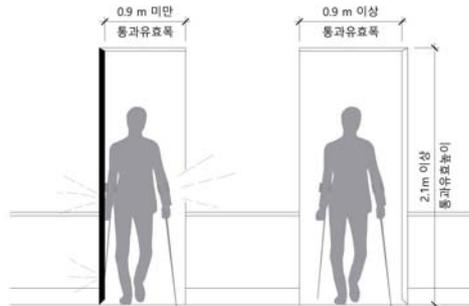
1-1
문의 구조

01.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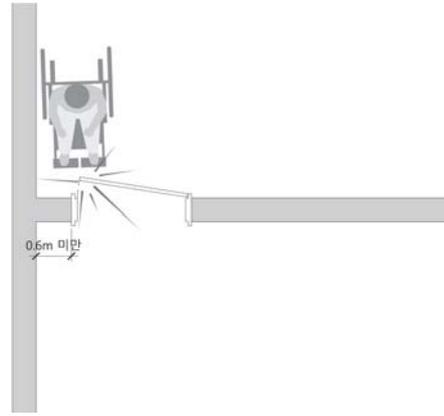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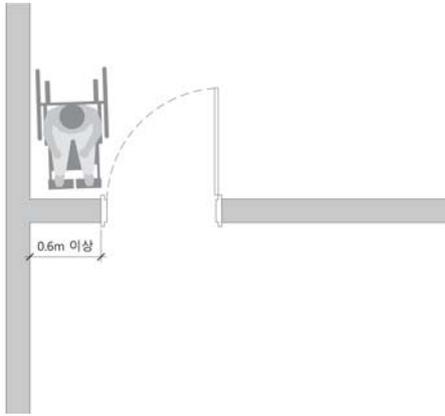
유효폭 및 활동공간

④ 출입구(문)은 통과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을 개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함

- 미닫이문의 경우 출입문 전후면으로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하며, 손잡이측으로는 0.6m 반대쪽으로는 0.35m 이상 확보함
- 여닫이문의 경우 출입문 열리는 쪽은 활동공간 1.5m 이상, 반대쪽은 1.2m 이상 확보하며, 손잡이측으로는 0.6m 이상 확보함
- 연속된 여닫이문의 경우 출입문 전후면 활동공간 1.2m 이상 확보하며 이때 출입문이 개폐되는 소요공간은 활동공간에 포함되지 않음



- 출입문 측면공간에 설치되는 측면공간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문을 이용하기 위한 필요공간이므로 반드시 확보함



- ②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지 않음
- 문턱은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퀴나 목발 및 지팡이 이용자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공이 이용하는 출입문에는 문턱을 제거함



<사진>
독일 바르타바일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문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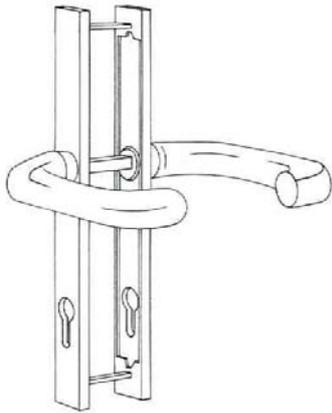
②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함

-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지 않음
-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함
-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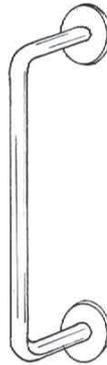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①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와 0.9m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설치함
 - 막대형 손잡이를 설치할 경우 수직막대형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키가 크거나 작은 사람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레버형 손잡이 >



< 수직막대형 손잡이 >

- ②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 점자표지판은 손잡이측 벽면에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양여단이문일 경우 오른쪽 벽면에 설치함

1-2 안전한 출입문

<사진>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안전한 출입문

- ④ 열린 출입문이 복도 등의 통로를 차단하거나 돌출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됨
 - 열린 출입문의 경우 복도 이용자가 부딪히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자동 닫침 기능이 있거나 열린 상태에서 통로폭 1.2m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함
 - 출입문 내외부의 상황을 반대쪽에서 알 수 있도록 출입문 일부에 투시창을 설치할 수 있음



02.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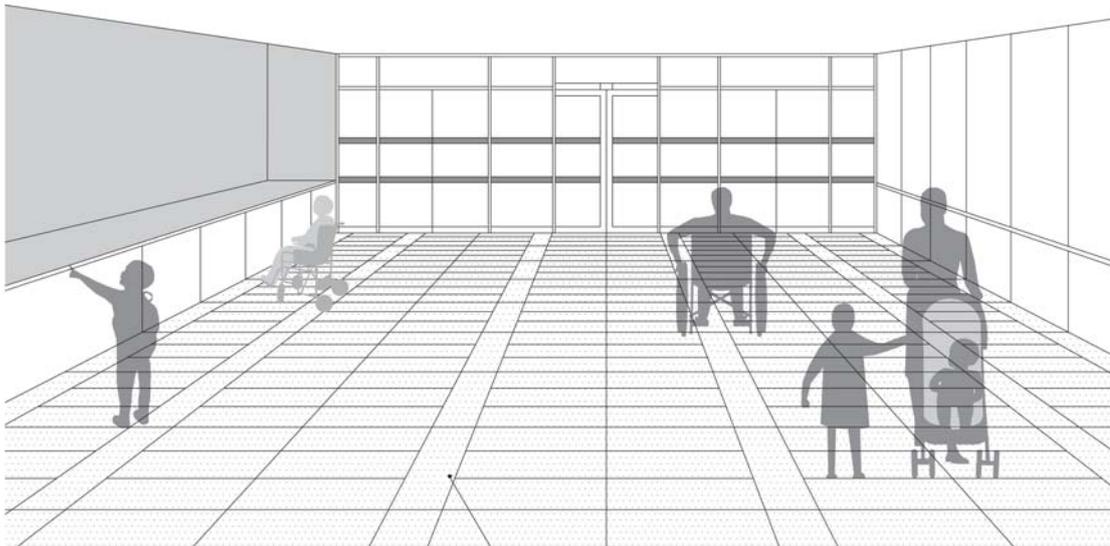
유효폭

- ① 통로는 휠체어와 유모차 등이 회전할 수 있도록 유효폭은 1.5m 이상 확보함
- 통로의 유효폭 법적 치수는 1.2m 임
- 가급적 유모차나 휠체어 상호간이 서로 지나칠 수 있도록 1.8m 이상 확보를 권장함

바닥

- ① 통로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음
-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함
- 이때 경사로는 V. 이용시설의 04. 경사로 기준에 따라 설치함
- ②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함
- 바닥마감재를 석재 물갈기나 폴리싱 타일을 설치할 경우 바닥에 물이 묻었을 때 매우 미끄럽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함
- 바닥마감재로 카펫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모차, 휠체어 등의 이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털의 길이가 짧은 것으로 설치함

2-1
통로의 구조



미끄럽지 않으며 복잡하지 않은 패턴의 바닥마감

2-2 안전한 통로

벽과 바닥

- ④ 벽과 바닥마감은 시각적으로 어지러운 패턴은 피하고 차갑지 않고 촉감 등이 좋으며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함
- 백내장의 사람이 계단으로 오인하기 쉬운 문양을 가진 바닥마감재는 지양함
 - 각 실의 출입문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 일부 바닥면은 마감재의 패턴을 달리하여 단순한 이동공간이 아닌 변화가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권장함
 - 벽 마감재료는 손으로 만져도 차갑지 않으며, 촉감 등이 좋은 것으로 설치함
 - 벽면이나 바닥 마감재료의 질감, 색상 등을 층별이나 조닝별로 달리하여 건물 내 사용자의 현 위치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주거나 유도 및 경고용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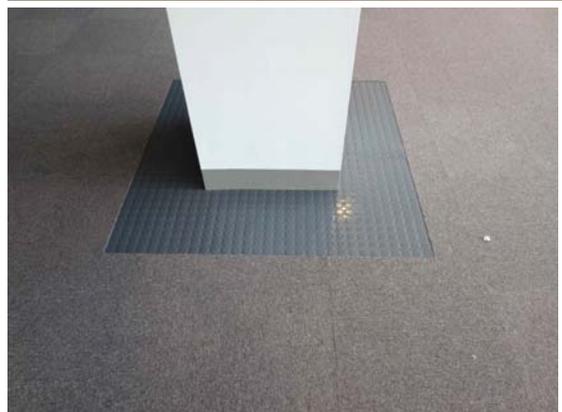
<사진>
독일 바르타바일 어린이 청소년 캠프장



충돌방지

① 통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보행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설치하며, 부득이하게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충돌방지 조치를 설치함

-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의 유효 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m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m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함
- 통로에 설치된 독립기둥의 경우 주변의 바닥재를 통로 바닥재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재질과 색상으로 설치하거나, 벤치 및 난간 등을 기둥주변으로 설치하여 충돌을 방지함
- 벽 모서리 등은 둥글게 마감하거나 충격방지용 설비를 부착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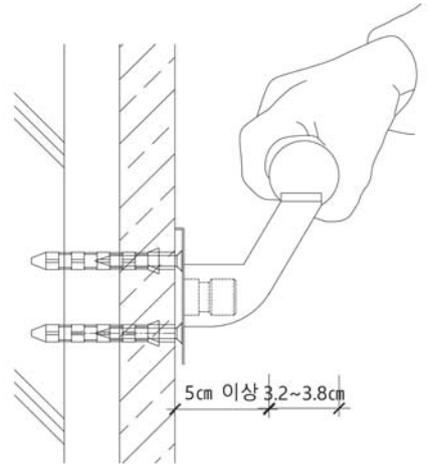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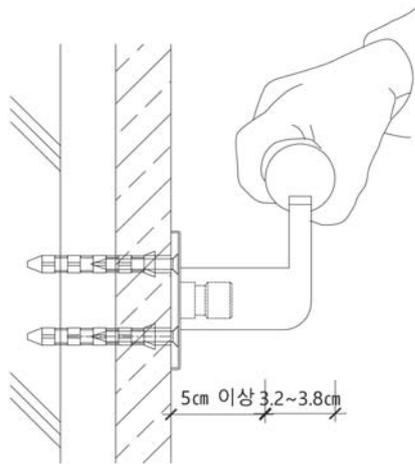


<사진>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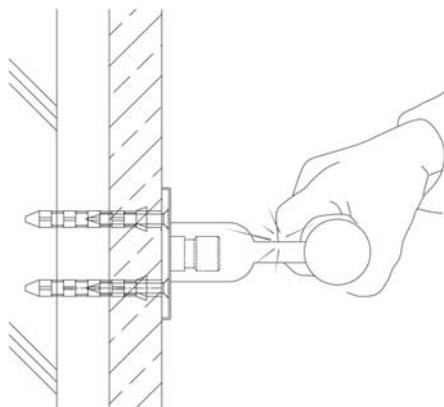
손잡이

④ 관광시설의 통로 손잡이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노약자의 관광지 이용을 고려하여 통로 양측에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설치함
-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2중으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함
-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함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함
- 손잡이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현재의 위치, 진행 방향, 주변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으며 이때 점자와 문자정보를 함께 설치함



< 손잡이 구조 >



< 잘못 설치된 손잡이 구조 >

-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므로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해야 하며, 손잡이를 잡으면서 이동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지방법으로 설치한다.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의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는 형상이어야 한다.
- 손잡이는 미끄럽지 않으며 차갑지 않은 재료 (P.V.C 또는 목재 등) 설치를 권장함

03. 계단

형태

① 계단은 직선이나 꺾인 형태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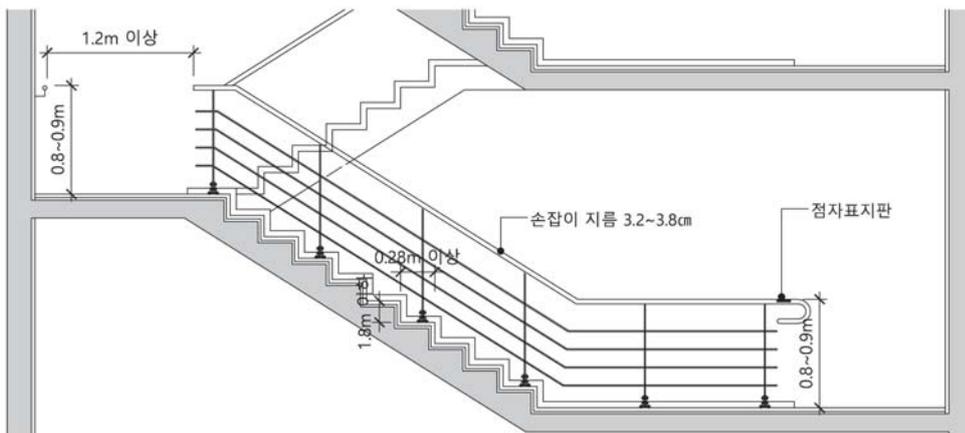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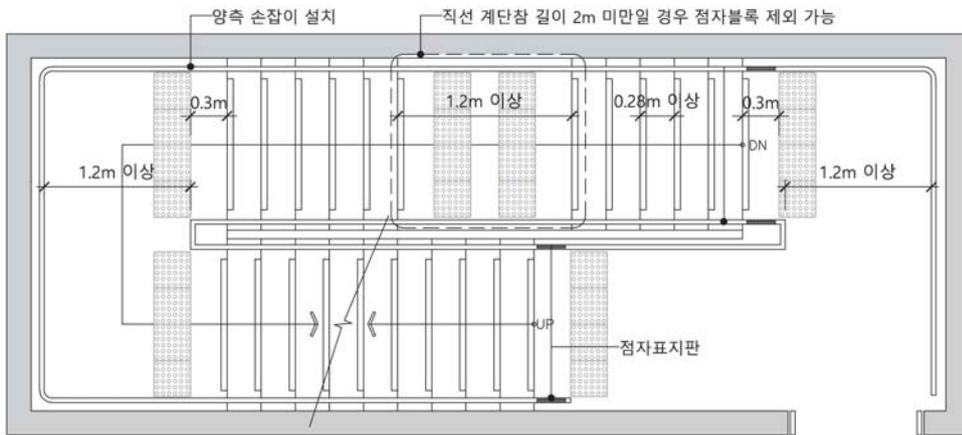
• 원형 또는 사선 등의 형태로 설치된 계단은 충분한 디딤판의 너비를 확보할 수 없으며 시각장애인은 진행 방향 등을 명확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함

유효폭

①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함

• 이동이 빈번한 계단의 경우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이용의 편의와 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해 1.5m 이상 확보를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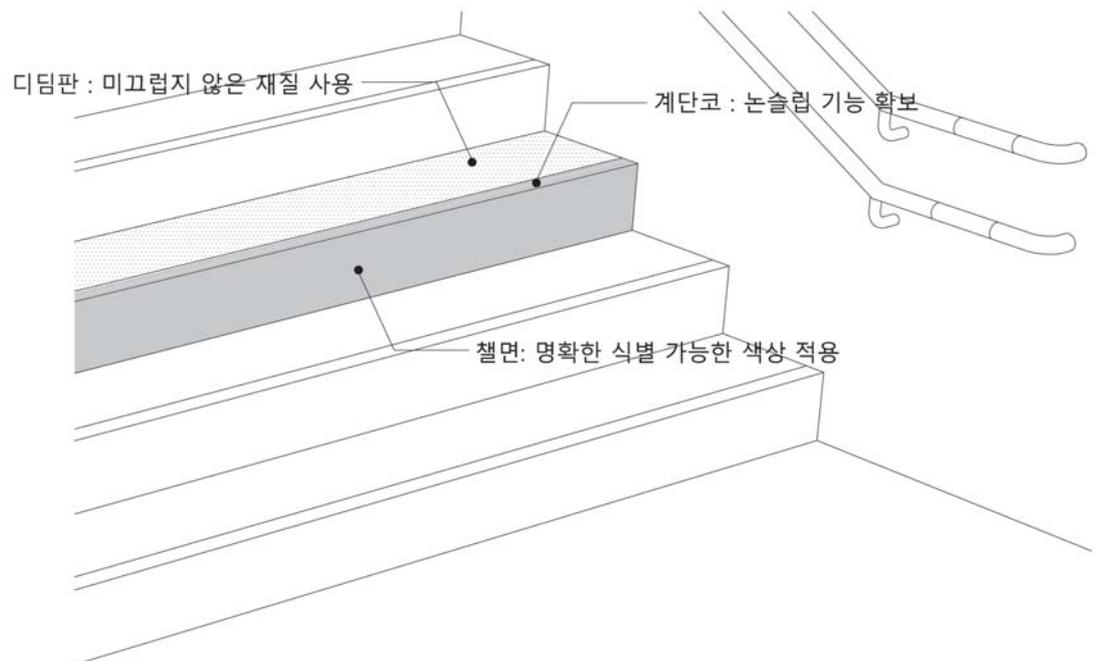
3-1 계단의 구조



구조

④ 계단에는 반드시 철퍽면을 설치함

- 계단에는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거나 발끝이 디딤판에 걸리지 않도록 철퍽면을 반드시 설치함
- 디딤판의 너비는 0.28m 이상, 철퍽면의 높이는 0.18m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퍽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함
- 디딤판의 끝부분에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퍽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 이상으로 설치하며, 계단코는 3cm 이하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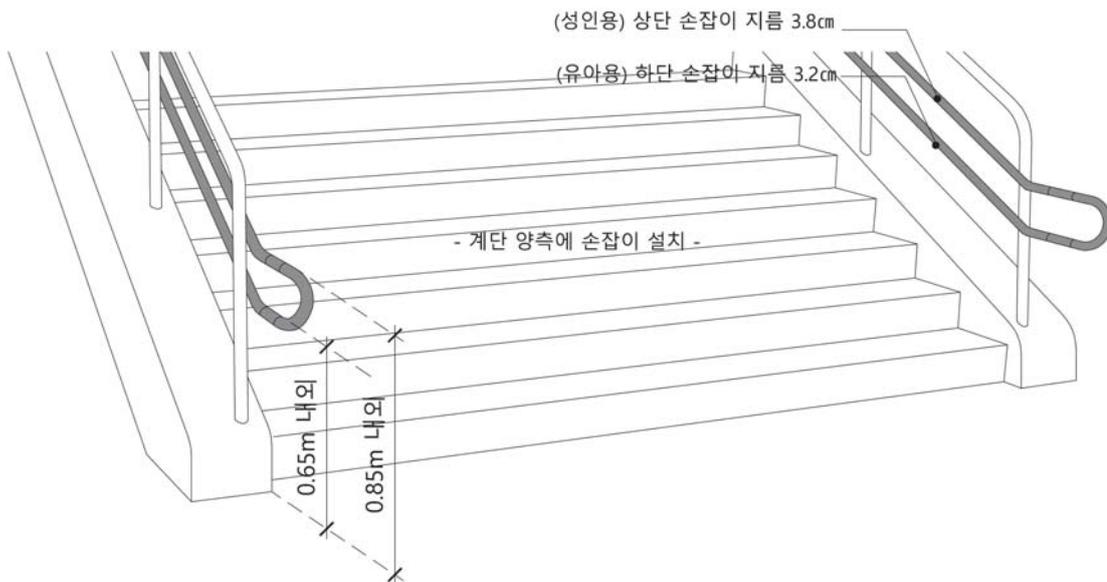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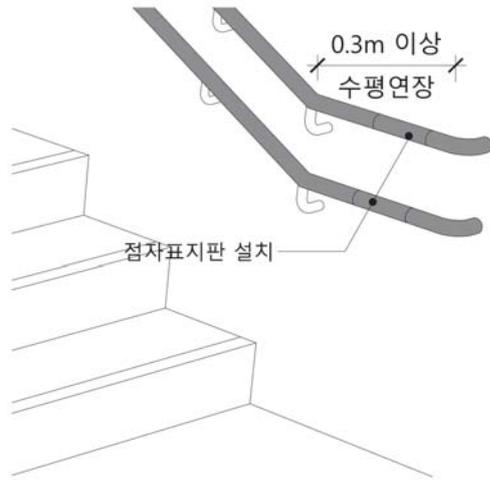
① 노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계단 이용을 위하여 양측에 손잡이 설치함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설치함
-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2중으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함
- 손잡이의 형태는 둥근 형태로 하며,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함
-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이상으로 설치함
-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므로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의 0.3m 이상의 수평 구간을 설치하며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는 형태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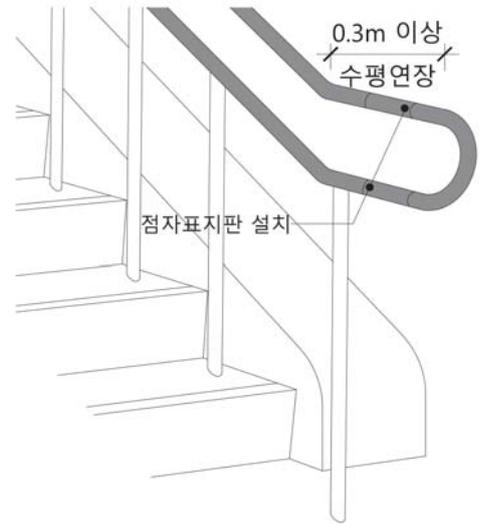
3-2
안전한 계단



- ② 계단의 시작과 끝의 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 점자표지판에는 점자외에도 문자 등을 병기하여 정보를 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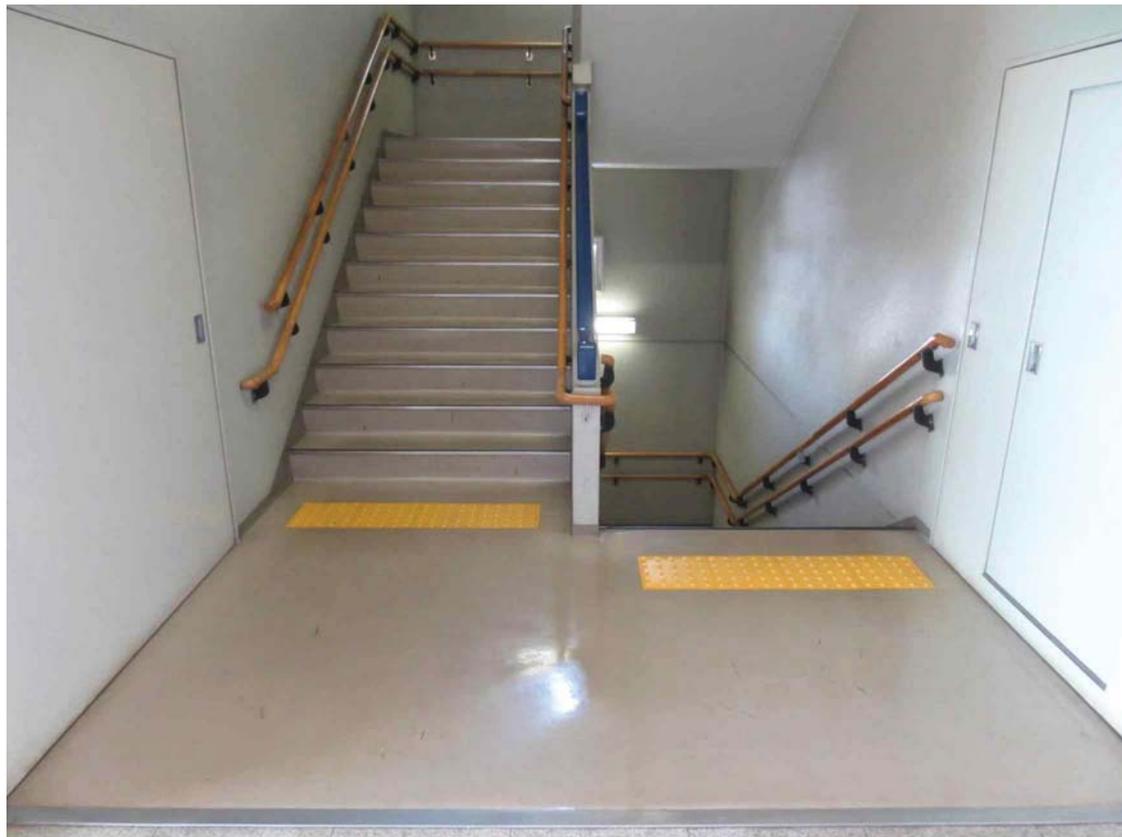
< 손잡이 설치 예시 1 >



< 손잡이 설치 예시 2 >

재질과 마감

- ① 계단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 특히 실외에 설치되는 계단에 평탄하지 않은 자연석이나 목재를 사용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노약자 등이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단의 바닥표면은 평탄하게 설치함
 - 자연자원 관광지 등 관광지 특성상 평탄한 계단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를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 설치를 권장함
- ② 계단코에는 줄눈이나 미끄럼방지 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
 - 단, 계단 전체가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로 설치한 경우 줄눈이나 미끄럼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무방함
- ③ 계단의 시작과 끝, 참에는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함
 - 점형블록은 계단 끝에서 0.3m 이격하여 설치하며 온장으로만 설치함



<사진>
나고야시 과학관 피난 계단 설치 사례

조명 및 추락방지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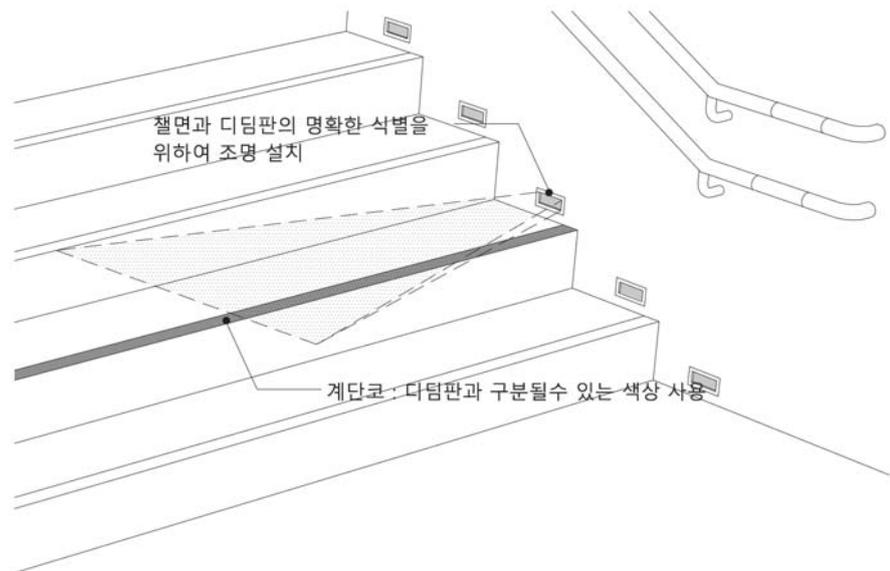
① 계단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하여 첩면과 디딤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함

- 특히 실외에 설치되는 계단에는 손잡이나 발밑 조명등을 설치하여 야간에 계단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함

- 실내 계단의 경우 항상 일정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채광창을 설치하거나 주간에도 조명 기구를 작동하여 관리함

- 계단코 식별이 어려운 경우 계단코의 색상을 달리하여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음

- 특히 계단의 첫 단과 마지막 단의 색상을 달리하여 계단의 식별성을 높일수 있음



② 계단 측면에 벽체가 없을 경우 측면에 추락방지턱 설치를 고려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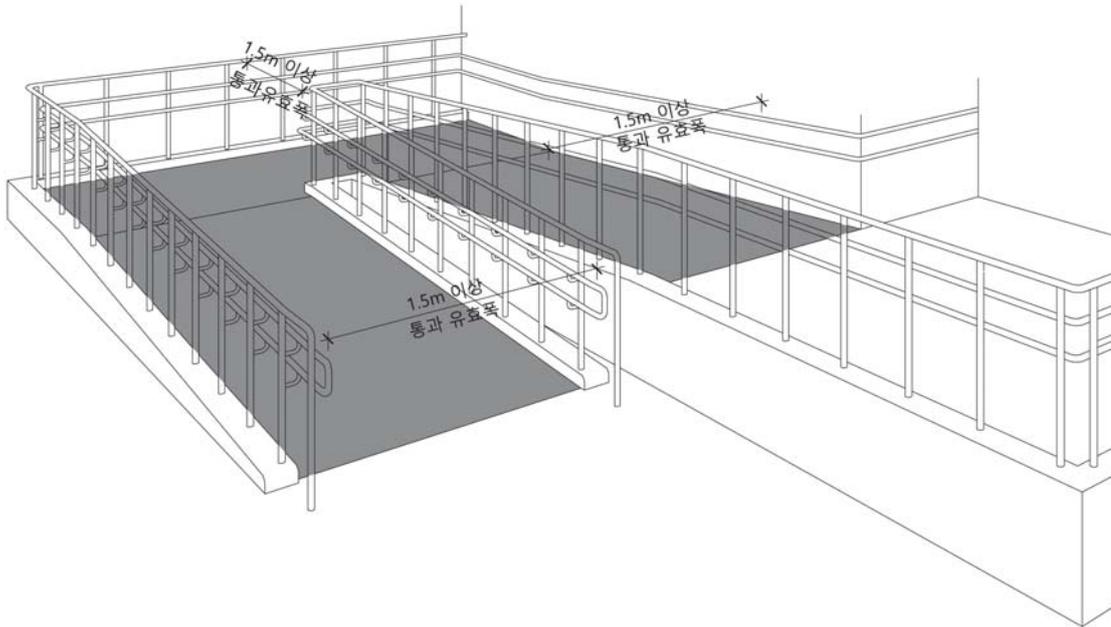
- 계단 양측으로는 목발이나 지방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추락방지턱을 2cm 이상 확보할 수 있음

04. 경사로

유효폭

- ①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을 확보함
 - 이동이 빈번한 경사로의 경우 유효폭은 이용의 편의 위하여 1.5m 이상 확보를 권장함
- ② 경사로의 참은 높이 0.75m 마다 설치하며 유효공간 1.5m × 1.5m 이상 확보함
 - 경사구간이 연속될 경우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휴식과 안전을 위하여 일정 높이마다 휴식참을 설치함
 - 경사로의 시작과 끝, 참은 휠체어와 유모차 등의 회전을 위한 공간을 1.5m × 1.5m 이상 확보함
 - 단 경사로가 직선으로 된 경우 중간 참은 유효폭은 경사로의 유효폭과 동일하게 설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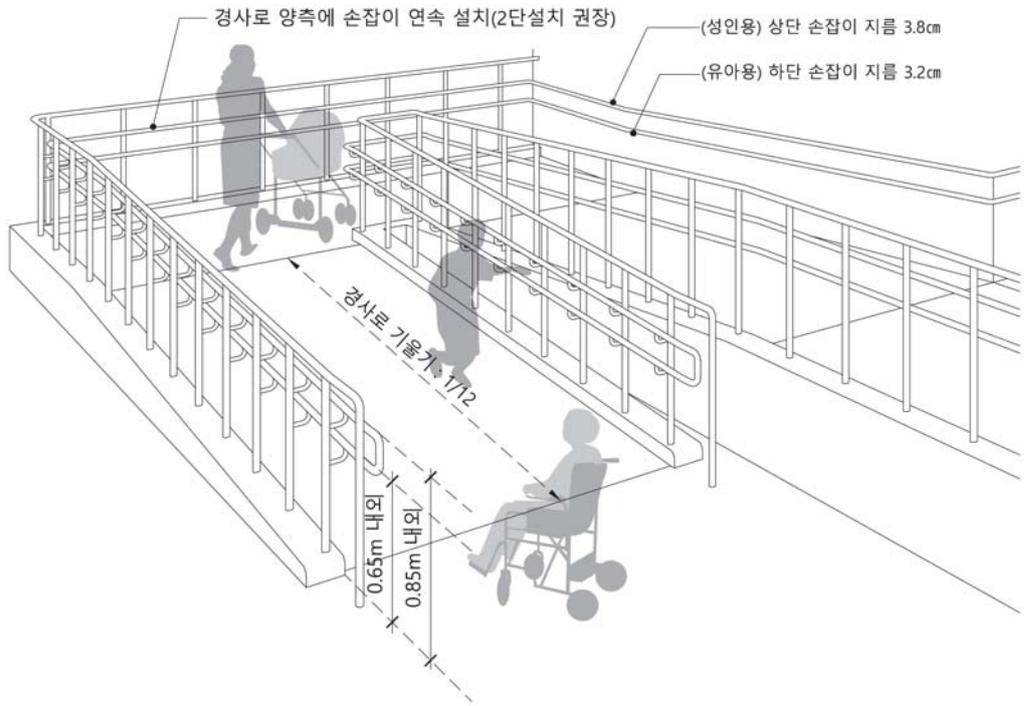
3-1 경사로의 구조



기울기

④ 경사로의 기울기는 1/12 이하로 설치함

- 경사구간은 직선으로만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으로 설치할 경우 횡경사가 발생하여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존 시설의 경우 상시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며 높이가 1m 미만인 시설의 경우 기울기를 1/8까지 완화 가능함



손잡이

① 노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경사로 이용을 위하여 양측에 손잡이 설치함

- 높이가 0.15m 미만인 경우에는 손잡이 설치를 제외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 설치를 고려함
-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로 하여야 설치함
-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2중으로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m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m 내외로 설치함
- 손잡이의 형태는 둥근 형태로 하며,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함
-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함
- 손잡이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거나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하므로 체중이 실려도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함
- 손잡이의 시작과 끝부분의 0.3m 이상의 수평구간을 설치하며 단부는 옷자락 등이 걸리지 않도록 아랫방향 또는 벽 방향으로 굽히는 형태로 설치함
- 점자표지판에는 점자와 함께 진행방향 표시와 문자 정보를 표기하여 정보를 전달함
- 점자표지판 벽면쪽으로 15°~30°기울여 시공함 (난간에 고정된 손잡이인 경우는 난간 쪽으로 15°~30°기울임)

② 경사로의 시작과 끝의 손잡이에는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3-2
안전한 경사로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재질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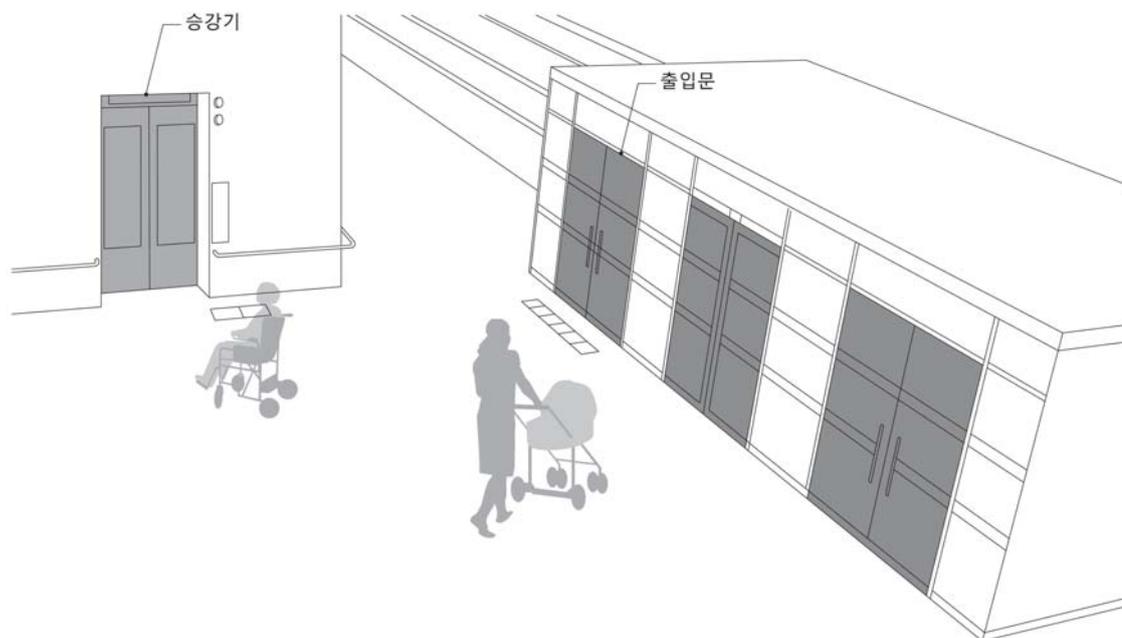
- ① 경사로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함
 - 경사로 시작과 끝지점, 경사부분과 수평한 참부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바닥마감재의 색상 및 재질을 달리하여 식별성을 높일 수 있음
- ② 경사로 측면에 벽체가 없을 경우 측면에 추락방지턱을 설치함
 - 경사로는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므로 이동수단의 바퀴 및 목발,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경사로 양측면에는 추락방지턱을 5cm 이상 설치함
- ③ 유모차나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 유모차나 휠체어 사용자가 경사로에서 균형을 잃거나 미끄러져 벽에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벽면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를 부착할 수 있음
- ③ 외부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음
 - 외부에 설치되는 경사로의 경우 비나 눈이 올 경우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붕이나 차양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함

05. 승강기

설치장소

- ①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의 수직이동 수단과 근접하게 설치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배치가 되도록 권장함
- ② 승강기의 전면에는 1.5m × 1.5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함
 - 승강기 전면 유효공간 법적 치수는 1.4m × 1.4m 임
- ③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cm 이하로 설치함
 - 승강장 바닥과 승강기 바닥의 틈에 어린아이의 발이나 지팡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확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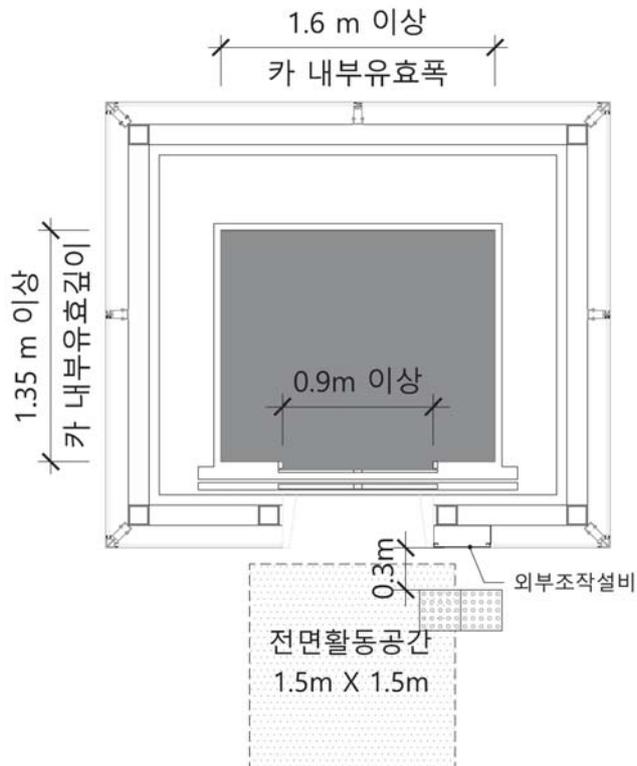
5-1 설치위치



5-2
승강기 구조

크기

- ① 내부의 유효 바닥 면적 폭 1.6m 이상, 깊이 1.35m 이상 확보함
 - 유모차나 휠체어 등 이용량이 많은 경우에는 카 내부 사이즈를 1.5m X 1.5m 이상 확보하거나, 24인승 승강기를 설치함
- ② 승강기 출입문은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m에서 1.4m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함
 -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함
 -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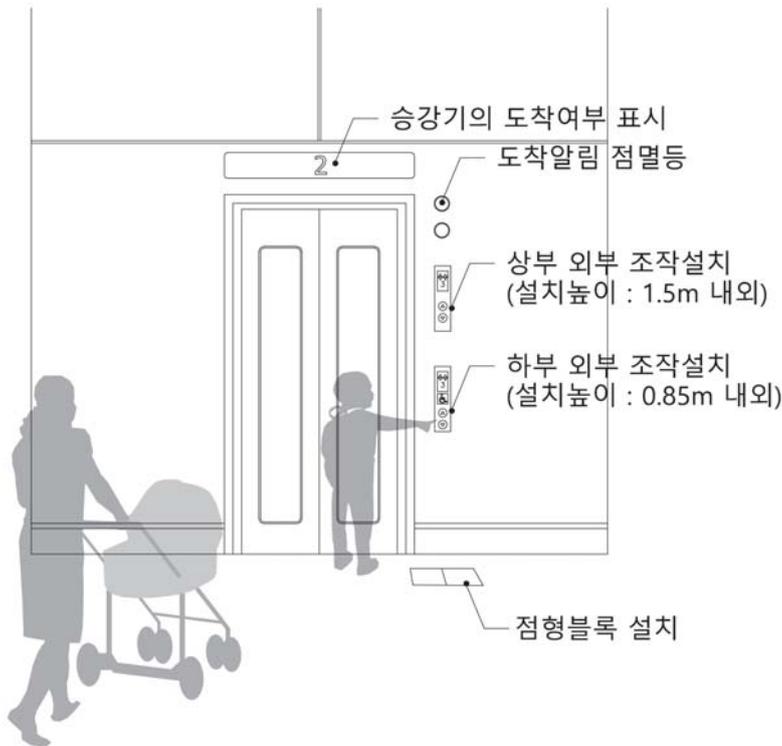
5-3
이용자
조작설비

일반사항

- ①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 내외부의 모든 스위치 높이는 바닥에서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함
 -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높이 1.4m 이하로 설치할 수 있음
- ②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승강기 조작설비를 설치함
 - 터치스크린 형태의 스위치는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하기 어려움으로 버튼형태로 점자표시와 함께 설치함
 - 조작반과 통화장치 등에는 점자 표시를 표시하여 시각장애인 등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전달함

외부조작설비

- ① 외부 조작설비는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을 고려하여 높이가 다르게 2개 설치할 수 있음
 - 아래쪽 스위치는 0.85m 내외, 위쪽 스위치는 1.5m 내외에 설치함
- ② 외부 조작설비 전면에는 0.3m 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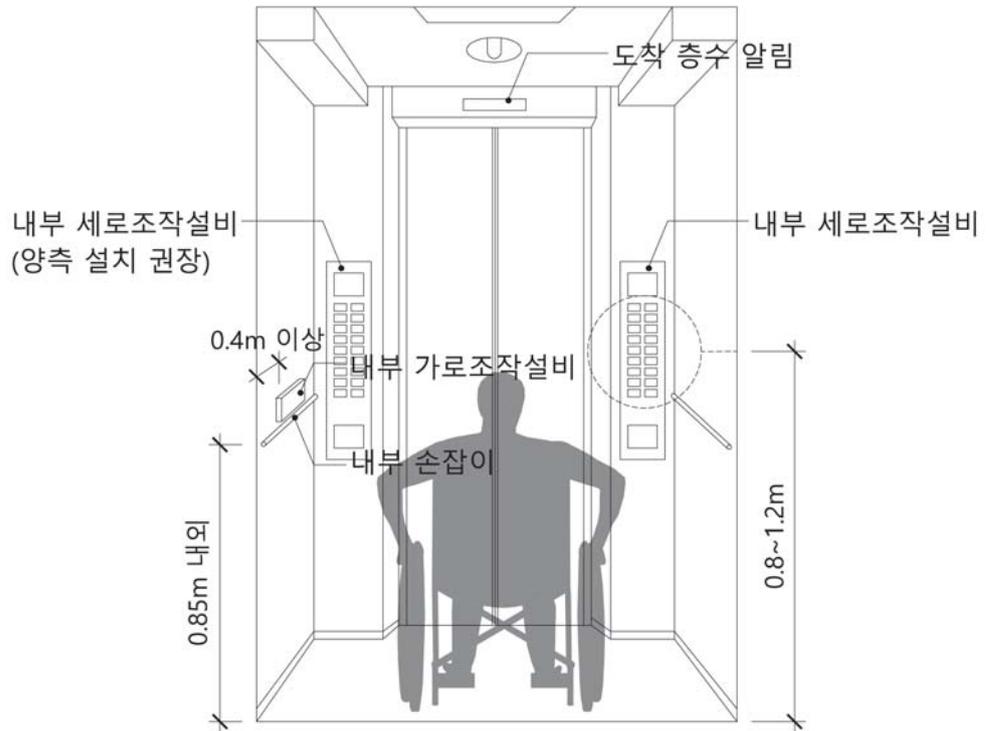


내부 가로 조작설비

- ① 내부 가로조작설비는 높이 0.85m 내외로 설치하며 진입방향 우측에 설치함.
 - 유효 바닥면적이 1.4m × 1.4m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음
- ②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설치하며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내부 모서리에서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함
 - 가로조작설비는 수평손잡이 이용을 위하여 5c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 또한 승강기 내부 모서리에서 0.4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함

내부 세로 조작설비

- ① 내부 세로 조작설비는 출입문 양측에 설치를 권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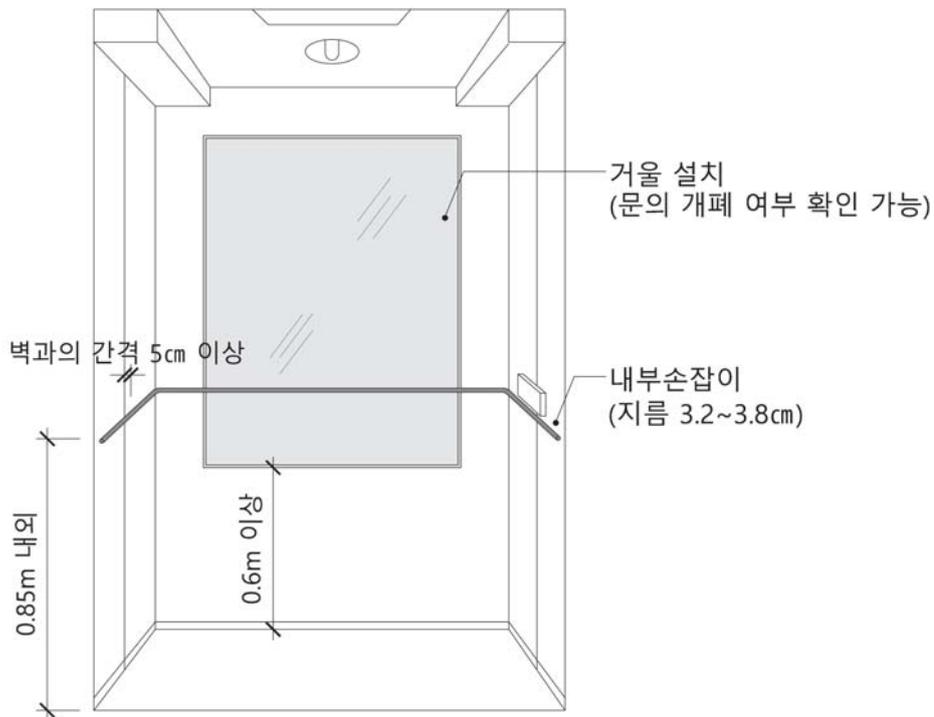


손잡이

- ① 손잡이 바닥에서 높이 0.8m 이상 0.9m 이하로 연속하여 수평손잡이 설치하거나, 3cm 이내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 손잡이의 형태는 등근 형태로 하며,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함
 -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cm 이상으로 설치함
 - 벽면을 따라 연속으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수평손잡이 사이에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할 수 있음

거울

- ① 승강기 내부에서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문 전면에 거울을 설치함
 - 거울은 내부에서 회전이 불가능한 경우 출입구에 대한 개폐여부 등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휠체어 회전 공간을 확보하더라도 설치를 권장함
 - 거울은 승강기 후면의 0.6m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함



알림

- ① 승강기 내외부에는 승강기의 도착 등을 소리로 알려주는 설비를 설치함
 -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을 안내하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함
 - 승강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 장치를 설치함
 -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함
- ② 내부 조작설비는 층수 버튼을 누르면 점멸등과 동시에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어야 함
- ③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줘야 함

조명

- ①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의 조명을 설치함

<사진 L, R>
일본 나고야시 쇼핑물
승강기 내부 조작설비



06. 기타 승강설비

고정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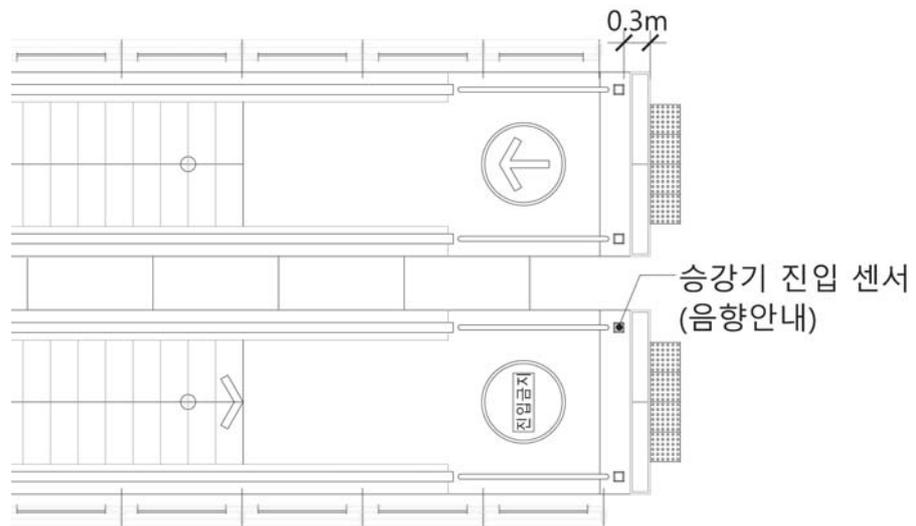
- ①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수평 고정손잡이를 설치함
 - 고정손잡이 설치는 법적 권장사항이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관광지의 특성상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 고정형 손잡이를 설치함
 - 고정손잡이는 바닥에서 높이 0.8~0.9m에 길이 1m 이상의 설치함
 - 손잡이 시작부는 도달하는 층의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6-1 에스컬레이터



점자블록

- ④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함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의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함
 - 에스컬레이터 진입부에는 진입가능여부를 표시하거나 음향안내 등의 안내 사인을 설치함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디딤판 식별

- ① 디딤판의 끝부분은 모든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색상, 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사진>
일본 중부공항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 ① 관광지에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음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하며, 속도는 분당 30m 이내로 설치함
 - 휠체어나 유모차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음
 -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하며,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는 1.2m 이상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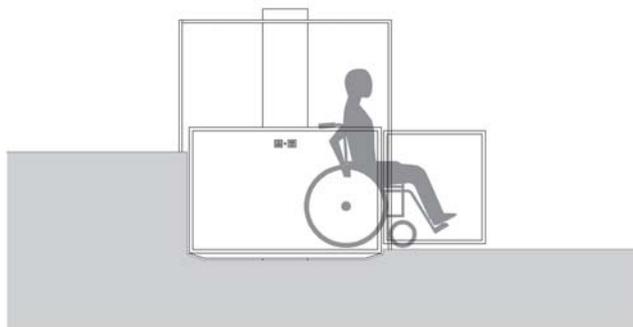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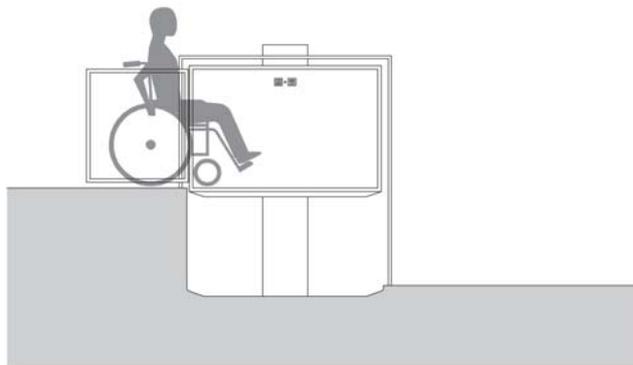
6-2
휠체어리프트

일반사항

- ①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승강장을 갖추어야 함
 - 휠체어리프트 탑승을 위하여 리프트 진입부 전면에는 1.4m × 1.4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함
 -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함
 -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함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 ① 관광지에는 승강기나 경사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음
 - 계단 한쪽면에 설치하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설치를 지양하며 계단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설치를 권장함
- ②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0.9m 이상, 깊이 1.2m 이상으로 설치함
 -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탑승하거나 휠체어 등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유효바닥면적을 1.4m × 1.4m 이상 확보함



이용시설 개선안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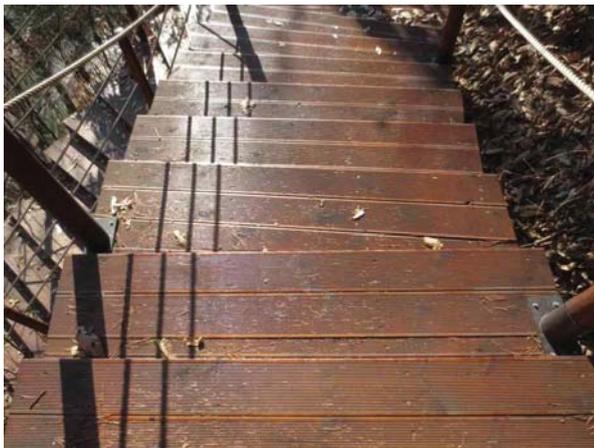


투명한 벽체와 문이 설치되어 있어 부딪힐 우려가 있음

개선안



투명한 벽체와 문에 충돌을 고려하여 눈 높이에 불투명 띠를 부착함



계단 끝의 식별이 어려워 계단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계단 끝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계단 디딤판과 명확히 구분되는 색상의 논슬립재를 설치함



계단 점형블록의 수가 부족하며, 표준형이 아닌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계단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며, 표준형 전형블록을 매립식으로 설치함

이용시설 개선안

현 황



수평 손잡이의 길이가 부족하며 점자표지판이 경사부에 설치되어 있음



개선안



손잡이의 수평부를 30cm 이상 설치하며 단부는 구부러서 옷 소매 등이 걸리지 않도록 함
점자표지판은 손잡이 수평부에 설치함



독립기둥의 돌출에 의하여 보행자가 충돌할 우려가 있음



보행 동선상에 돌출되는 독립기둥은 주변 바닥재를 기존 바닥재와 다른 재질 및 색상으로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함



승강기 스위치와 전면 점자블록 사이에 장애물이 있어 스위치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승강기 스위치 전면에는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안내판은 벽부착형으로 설치함



VI

위생시설

01. 화장실
02. 샤워실 / 욕실 / 탈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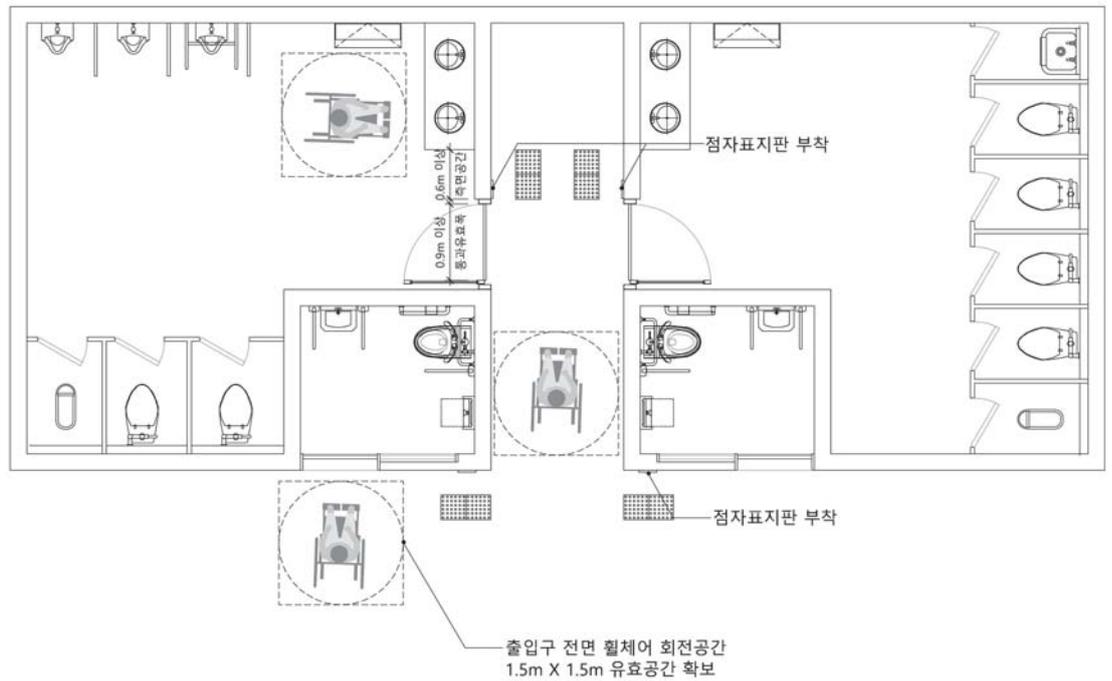


1-1
화장실 접근

01. 화장실

설치장소

- ④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이하, 장애인 등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출입구

- ① 화장실의 출입구는 통로와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화장실 출입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1. 일반 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장애인화장실과 일반화장실이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일반화장실 출입문도 관련 기준을 충족하여 설치함

재질과 마감

- 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 하는 재질로 마감함
- 화장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안전 사고사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는 논슬립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함

안내설비

- ① 화장실 출입구에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설비를 설치함
- 화장실 출입구에는 손잡이 측 벽면의 높이 1.5m높이에 남자 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 화장실(장애인 화장실과 일반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함)의 점자표지판 0.3m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함
- 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화장실 출입구에는 리모컨으로 작동되는 음성유도기를 설치할 수 있음
- 화장실 출입구에는 화장실 내부배치를 안내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안내판에는 축지도와 점자를 병행하여 설치함



<사진 L>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사진 R>
일본 중부공항 화장실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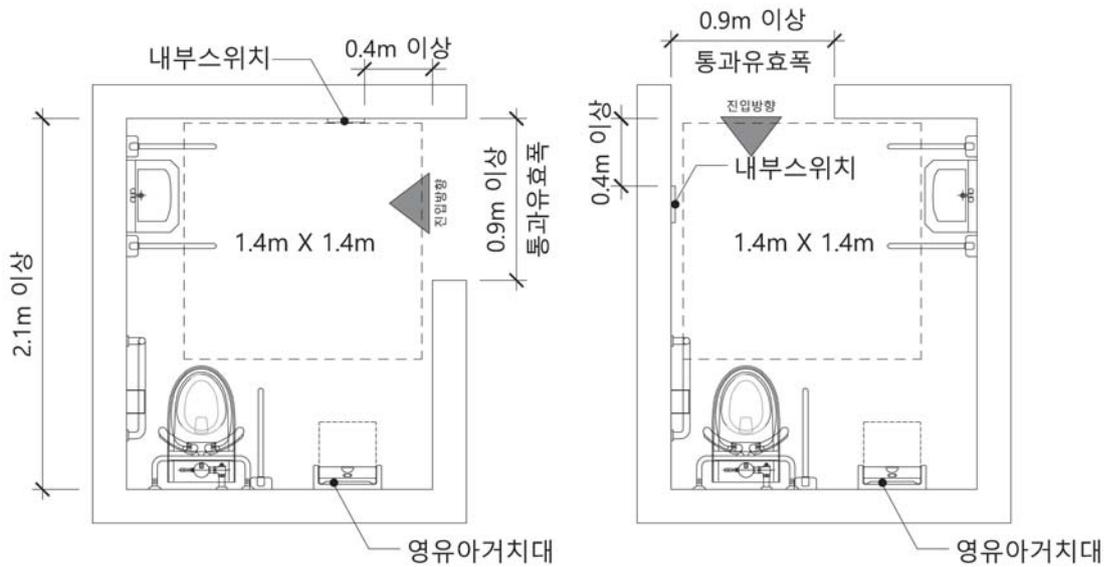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1-2
대변기

활동공간

④ 장애인 등 화장실의 대변기 유효바닥면적은 폭 1.6m 이상, 깊이 2.1m 이상 확보함

-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고려하여 유효폭 0.7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함
- 대변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함
- 이로 인하여 유효바닥면적의 깊이의 법적 기준은 2.0m 이상이지만 대변기 전면 1.4m 를 확보하기 위하여 깊이는 2.1m 이상 확보함
- 또한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대 등을 설치할 경우 세면대 등의 돌출폭을 고려하여 유효바닥면적의 폭을 계획함



출입문

- ① 대변기 출입문은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설치함
 - 대변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확보함
 -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여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프라이버시 확보가 어려운 주름문은 설치할 수 없음
 -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밖 여닫이문을 설치하거나 내부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내부공간을 확보할 경우 안 여닫이문을 설치할 수 있음
 -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사진 L>
일본 오아시스21 화장실

<사진 R>
일본 중부공항 화장실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1-2 대변기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대변기 구조

④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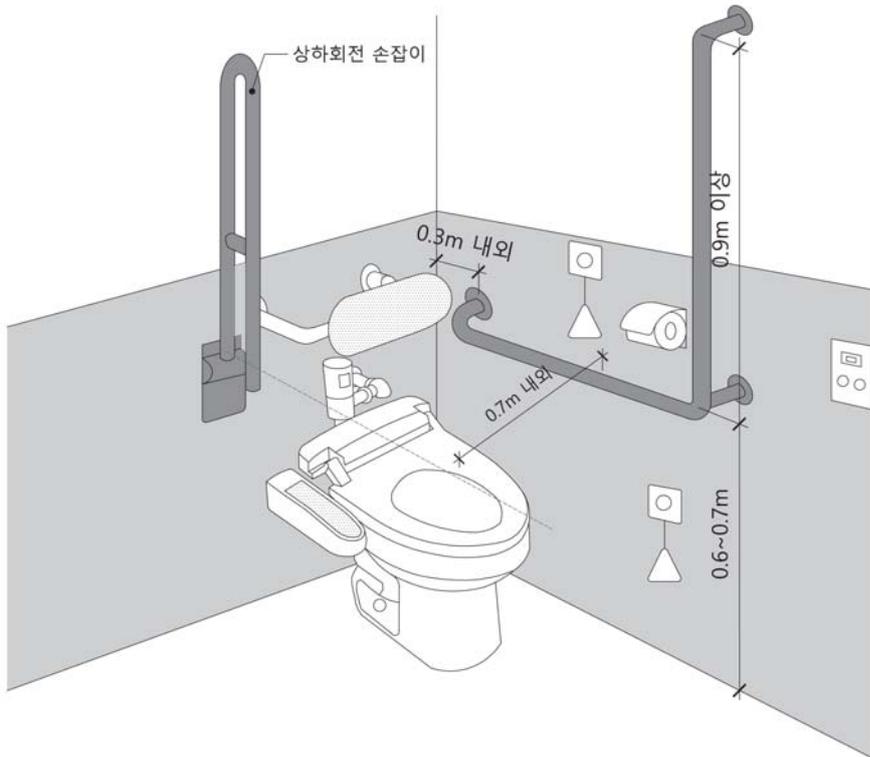
-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설치함
- 대변기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로 설치함
- 대변기에는 사용자가 기댈 수 있는 등받이를 설치함



손잡이

①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음

- 수평손잡이는 높이 0.6~0.7m 에 설치함
-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함
- 회전식 손잡이는 좌우회전형 보다 상하회전형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수평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설치함
- 수직 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으로 하며 가장 아랫부분은 0.6m 내외로 함
- 수직 손잡이는 벽부착을 원칙으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L-자형으로 설치 가능함



기타설비

- ① 세정장치와 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앞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
 - 세정장치와 휴지걸이 등의 설치 높이는 0.85m 내외로 설치함
- ②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을 대변기 가까운 곳에 설치함
 - 비상용 벨의 설치높이는 0.6m와 0.9m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m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함
 - 오스트메이트(인공항문) 사용자위한 전용 세척대를 대변기 주위에 설치할 수 있음

<사진 L, R>
일본 중부공항 화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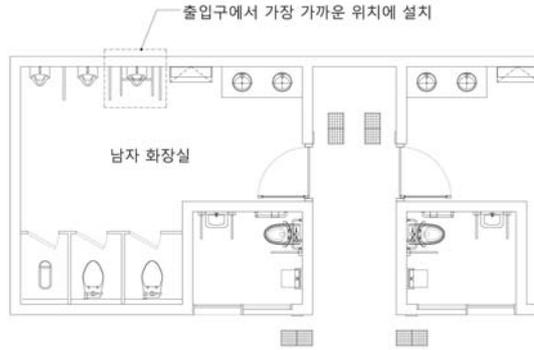


1-3
소변기

소변기 구조

①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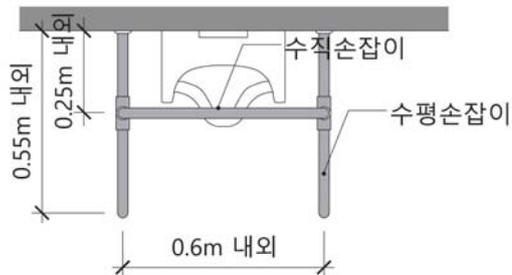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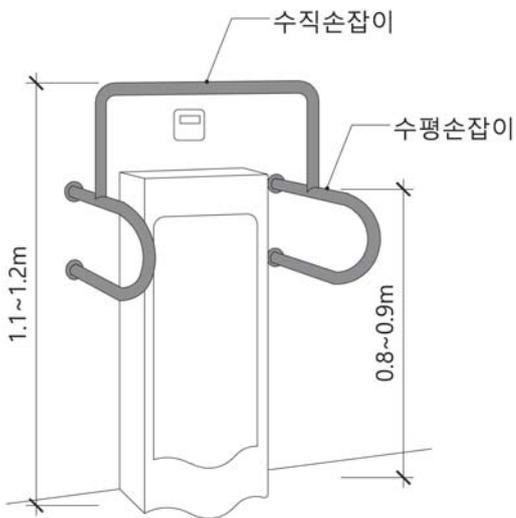
- 바닥부착형 소변기는 법적 권장사항이나 키가 작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이 모든 소변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부착형으로 설치함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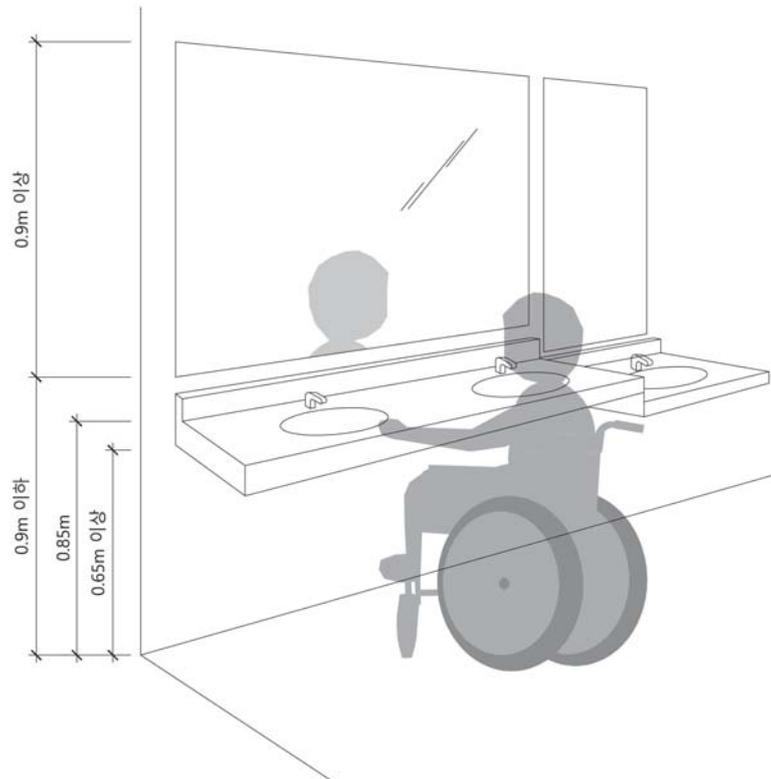
① 소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함

- 출입문에서 가까운 소변기 중 1개 이상은 손잡이를 설치함
- 손잡이가 설치되는 소변기는 장애인 등 화장실이 아닌 일반화장실에 설치함
-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0.9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m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m 내외로 설치함
-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m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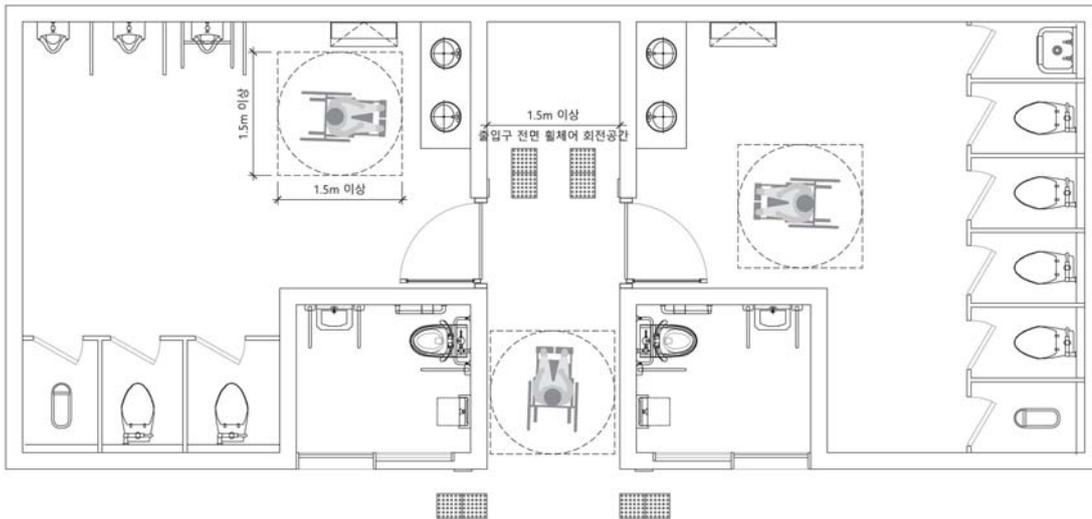
1-4
세면대**세면대 구조**

- ④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함
- 세면대의 구조는 장애인 등 화장실, 일반화장실의 세면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함
 -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하단 높이는 0.65m 이상 설치함
 - 단 어린이용 세면대의 경우 사용자를 이용을 고려한 구조로 설치할 수 있음
 - 수도꼭지는 레버형이나 누름 버튼형 또는 센서식 자동 수도꼭지를 설치하며 센서식 자동 수도꼭지를 제외한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함
 - 세면대 거울은 벽부형으로 하며, 세로 길이 0.9m 이상, 하단 높이는 0.85m 이하로 설치함



세면대의 접근

- ① 세면대는 휠체어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화장실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 장애인 등 화장실이 일반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경우 출입문에서 세면대, 장애인 등 화장실까지의 동선은 V. 이용시설의 02. 통로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
 - 장애인 등 화장실 내부의 세면대는 대변기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함
 - 일반화장실의 세면대는 세면대 이용자가 이동하는 사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해야 함



손잡이

④ 목발사용자 등 보행이 불편한 사람을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함

- 세면대의 손잡이 설치는 법적 권장사항이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관광지에서는 이용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손잡이를 설치함
- 손잡이 설치 높이는 세면대 상판 높이(H:0.85내외)와 동일하게 설치함
- 손잡이는 휠체어 등의 이동에 방해가 되는 고정형 손잡이는 지양하며 상하로 회전하는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테이블형 세면대가 설치될 경우 손잡이 설치는 제외될 수 있으나 다양한 사함의 이용을 고려하여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사진 L>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사진 R>
일본 중부공항 화장실



02. 샤워실 / 욕실 / 탈의실

샤워실의 구조

- ① 샤워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장애인용 샤워기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함
 - 샤워실 출입문으로 물 넘침이 우려될 경우 출입구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 넘침을 방지함
- ② 샤워실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출입구는 높이차이를 최소화하며,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샤워실 출입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1. 일반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샤워실 접근 동선 상의 바닥면 높이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며 모서리는 둥글거나 사선으로 처리함
 - 샤워실 출입문으로 물 넘침이 우려될 경우 출입구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 넘침을 방지함

2-1 샤워실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 ③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기는 휠체어 등의 접근과 이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함
- 샤워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고려하여 유효폭 0.75m 이상 활동공간을 확보함

- 샤워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함

재질과 마감

- ④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함
- 샤워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사고사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는 논슬립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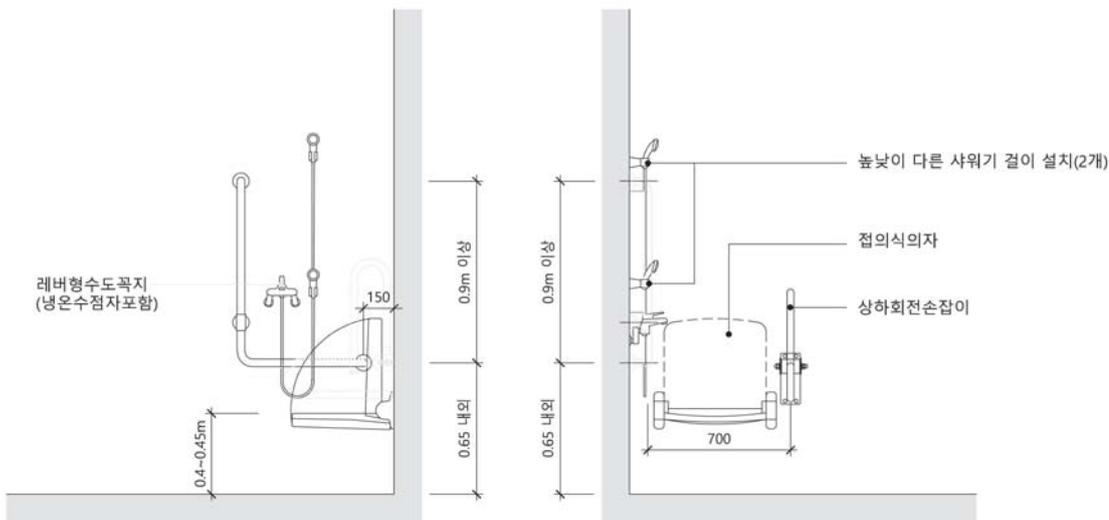
-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설치함

<사진>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샤워기의 구조

- ①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샤워기를 1개 소 이상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이용 가능한 샤워기에는 접의식의자와 손잡이를 설치함
 - 접의식 의자의 좌대 높이는 바닥면에서 0.4~0.45m에 설치함
 - 수평손잡이는 높이 0.6~0.7m 에 설치함
 - 한쪽 손잡이는 접의식의자 중심에서 0.4m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m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함
 - 회전식 손잡이는 좌우회전형 보다 상하회전형 손잡이 설치를 권장함
 - 수평 손잡이간의 간격은 0.7m 내외로 설치함
 - 샤워기는 고정형보다 가변형으로 설치하며 샤워기 걸이는 서서 이용하거나 접의식의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높이를 다르게 하여 설치함
- ② 샤워기의 수도꼭지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함
 - 수도꼭지는 레버식 또는 누름버튼식으로 설치함
 - 수도꼭지에는 냉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점차표지판을 설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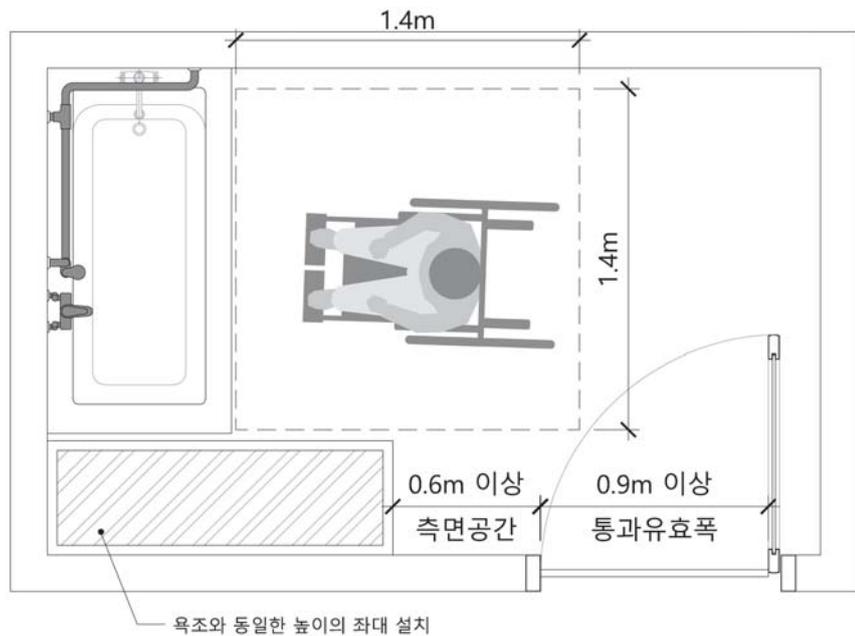
2-2
욕실

욕실의 구조

- ①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욕실 출입문으로 물 넘침이 우려될 경우 출입구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 넘침을 방지함
 - 욕조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 확보함
- ② 욕실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출입구는 높이차이를 최소화하며,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욕실 출입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1. 일반 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욕실 접근 동선 상의 바닥면 높이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며 모서리는 둥글거나 사선으로 처리함
 - 욕실 출입문으로 물 넘침이 우려될 경우 출입구에 트렌치를 설치하여 물 넘침을 방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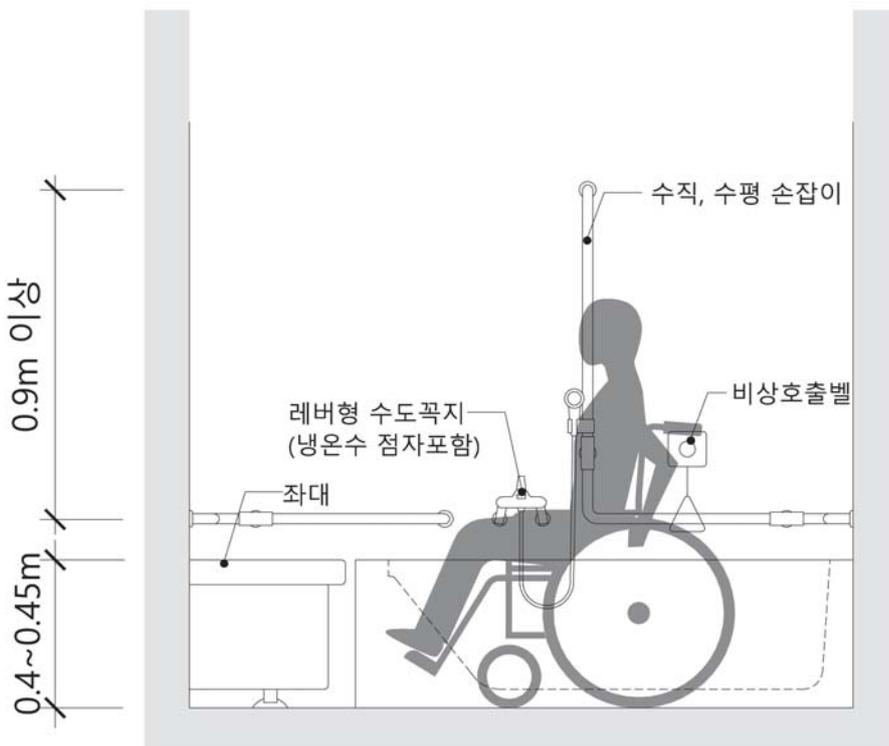
재질과 마감

- 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함
 - 욕실은 항상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바닥재는 논슬립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함
 - 욕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1/30 이하로 설치함



욕조의 구조

- ① 욕조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함
 - 욕조의 높이는 바닥에서 0.4~0.45m로 설치함
 - 욕조 주변에는 수평 및 수직 손잡이와 욕조와 동일한 높이의 좌대를 설치 할 수 있음
 -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
 - 수도꼭지는 레버식 또는 누름버튼식으로 설치함
 - 수도꼭지에는 냉온수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설치함
 - 욕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함



2-3
탈의실**탈의실의 구조**

- ①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함
- 장애인 등의 접근 가능한 통로는 유효폭 1.5m 이상 확보함
 - 장애인들이 이용가능한 사물함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m × 1.4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함
- ② 탈의실의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출입구는 높이차이를 최소화하며,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탈의실 출입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1. 일반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탈의실 접근 동선 상의 바닥면 높이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며 모서리는 둥글거나 사선으로 처리함

사물함의 구조

- ① 탈의실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사물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함
-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1.2m로 설치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함

<사진>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위생시설 개선안

현황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안내와 점자표지판, 점자블록이 미설치되어 있음

개선안



일반화장실 출입문에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안내판과 점자안내판 그리고 점자블록을 설치함



대변기 손잡이가 잘못 설치되어 있음



대변기 벽부에는 수직, 수평 손잡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L-자형 손잡이를 설치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대변기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대변기에는 몸을 기댈 수 있는 등받이를 설치함

경기도 문턱없는 관광지 시설 가이드라인

위생시설 개선안

현 황



소변기에 손잡이기 설치되어 있지 않음

개선안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의 소변기에 손잡이를 설치함



세면대에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단독형 세면대에는 양측으로 상하회전식 손잡이를 설치함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사물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휠체어 사용자가 사물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물함 하부에 빈 공간을 확보함



VII

기타시설

01. 숙박시설의 객실
0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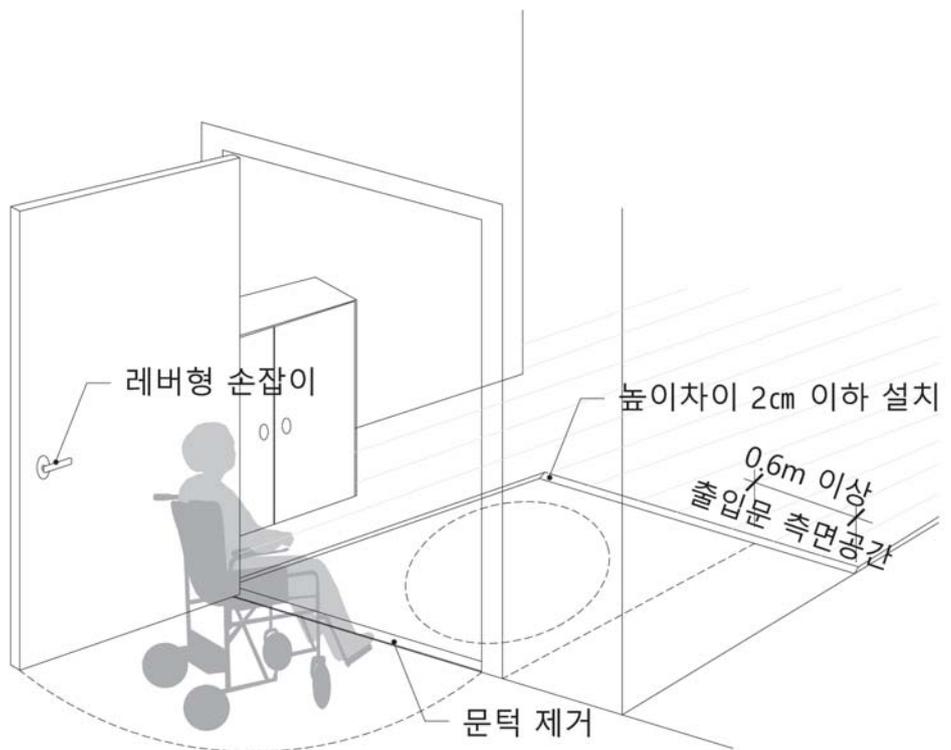


1-1
객실의 접근

01. 숙박시설의 객실

설치 장소

- ① 숙박시설이 있는 관광지에는 장애인용 객실을 설치함
 - 숙박시설의 전체 객실의 1%이상(관광숙박시설은 3% 이상)은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함(산정된 객실 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봄)
 - 장애인용 객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 승강기 등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가능한 설비를 확보함
 - 장애인용 객실은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 설치를 우선으로 함
- ② 장애인용 객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 가능한 장소에 설치함
 - 장애인용 객실의 출입구 전면은 휠체어 등의 이동 및 접근을 고려하여 1.5m 이상의 통로 유효폭을 확보함
 - 장애인용 객실 출입문의 구조는 V.이용시설의 1. 일반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침대

- ① 장애인용 객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침대를 설치함
 - 휠체어 사용자는 온돌방보다 침대방 이용이 더 편리함
 -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 ~ 0.45m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m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통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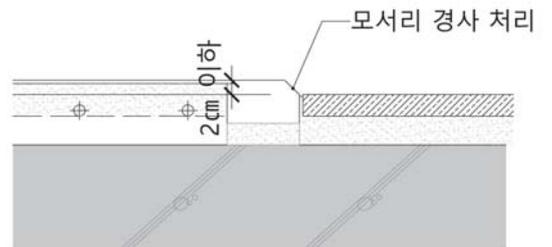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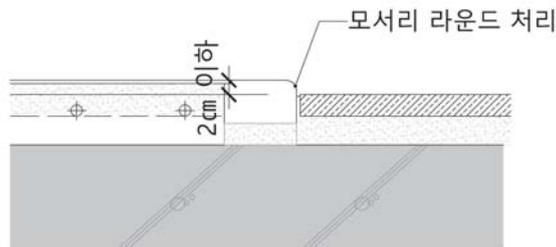
- ① 장애인용 객실은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충분한 유효공간을 확보함
 - 장애인용 객실 내부의 이동 통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하여 1.5m × 1.5m의 회전 공간을 확보함
 - 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공간과 가구의 문은 미닫이문 설치를 권장하며, 미닫이문 손잡이는 막대형 손잡이를 설치함
 - 장애인용 객실 내부의 이동 통로는 노약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음

1-2 내부구조

바닥

- ① 장애인용 객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음
 - 객실 외부에서부터 내부, 객실내 화장실 및 욕실과 발코니 등의 피난경로에 이르는 모든 통로에는 높이차이를 두지 않음
 - 부득이하게 높이차이를 둘 경우 높이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며 모서리는 둥글거나 사선으로 처리함
- ② 장애인용 객실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함
 - 객실의 현관 및 내부 바닥마감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함
 - 털의 길이가 긴 카펫의 경우 휠체어 등의 바퀴가 이동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지양함

<사진 L, R>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문턱 모서리 처리 방안>

화장실

- ① 장애인용 객실에는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함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구조는 VI. 위생시설의 1. 화장실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객실내 화장실이 없는 경우 장애인용 객실에서 가장 가까운 화장실은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며, 객실내 화장실의 위치를 안내하는 안내설비를 구비함

욕실 및 샤워실

- ① 장애인용 객실의 욕실 및 샤워실 중 1개소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구조로 설치함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욕실과 샤워실의 구조는 VI. 위생시설의 2. 샤워실/욕실/탈의실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욕실의 경우 많은 공간을 차지하므로 샤워실을 설치하는 것이 공간활용에 용이함
 - 장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욕실과 샤워실은 화장실과 함께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내부에는 휠체어의 회전이 가능하도록 1.4m × 1.4m 이상의 유효공간을 확보함
 - 화장실과 샤워실을 함께 설치할 경우 고정형 샤워부스보다는 샤워커튼을 설치하는 것이 공간활용에 용이함

1-3
위생공간

1-4 안내 및 이용설비

출입문 안내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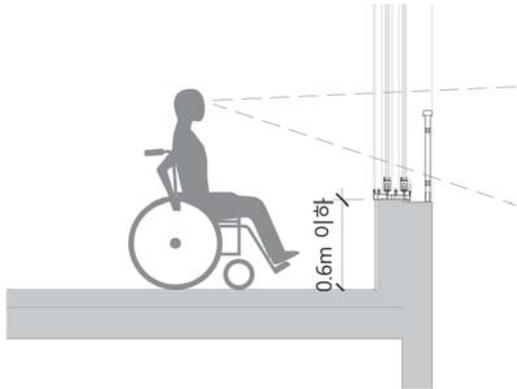
- ① 장애인용 객실에는 이를 안내하는 안내 설비를 설치함
 - 객실의 출입문옆 벽면의 1.5m 높이에 실명으로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함
 - 점자표지판 전면 0.3m 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음
- ② 장애인용 객실에는 초인종과 연동되는 초인등을 설치함
 - 청각장애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출입문의 초인종과 연동될 수 있는 초인등을 장애인용 객실에 설치함
 - 초인등은 초인종 사용시 불빛이나 문자 등으로 이를 안내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는 침실과 거실, 화장실 등에 설치함

<사진>
국내 BF인증 적용사례



이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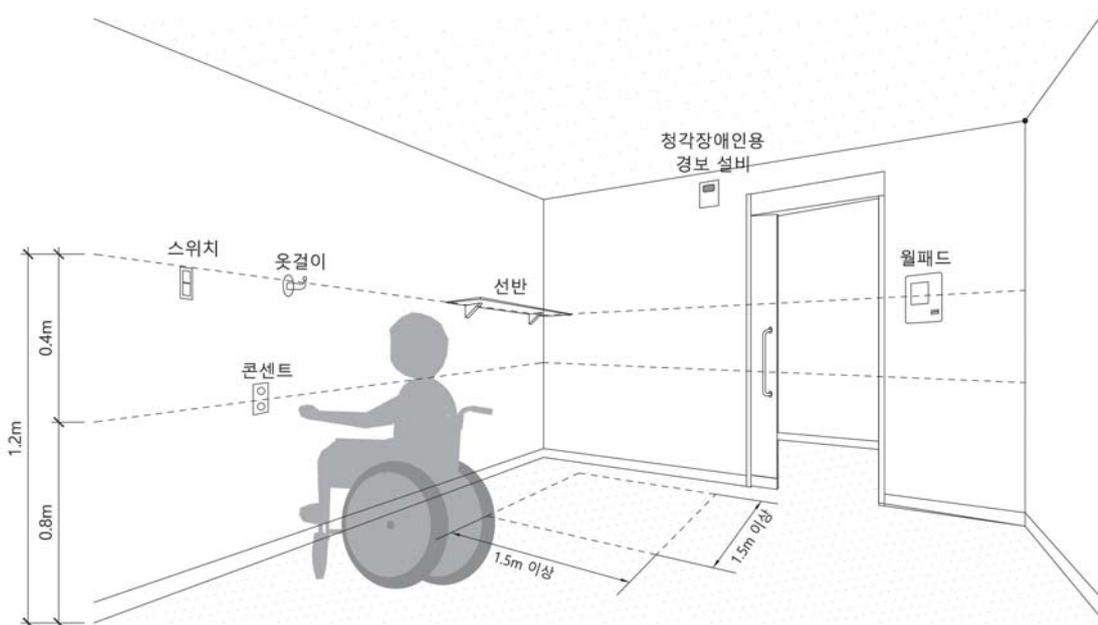
- ① 장애인용 객실내 이용설비 등은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구조로 설치함
 -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2m 이하로 설치함



- 책상이나 옷장 등의 가구는 휠체어사용자의 이용을 고려하여 전면에 1.5m × 1.5m 활동공간을 확보함
- 어린이, 휠체어사용자 및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도 조망이 가능하도록 창문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6m 이하 설치를 권장함

비상경보 시스템

- ①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를 설치함
 - 청각장애이용 경보설비는 침실과 거실, 화장실 등에 설치함



2-1
접근

02.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장소

- ① 관광지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주요접근로나 건물의 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며, 승강기 등 휠체어사용자나 유모차의 접근 및 이용 가능한 설비를 확보함
- ②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을 위하여 출입구는 높이차이를 최소화하며, 통과 유효폭 0.9m 이상 확보함
 - 출입문의 구조는 V. 이용시설의 1. 일반출입문 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함
 - 휴게시설 접근 동선 상의 바닥면 높이차이는 2cm 이하로 설치하며 모서리는 둥글거나 사선으로 처리함

<사진 L, R>
일본 중부공항에 설치된 수유실



3-2
내부구조

내부구조

① 관광지에는 임산부의 휴게와 영아의 수유를 위한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함

- 임산부 등의 휴게를 위하여 내부에 소파 등의 휴식공간을 마련하며 휴식공간 전면에는 휠체어 등의 회전을 위한 1.5m × 1.5m 유효공간을 확보함

-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함

이용설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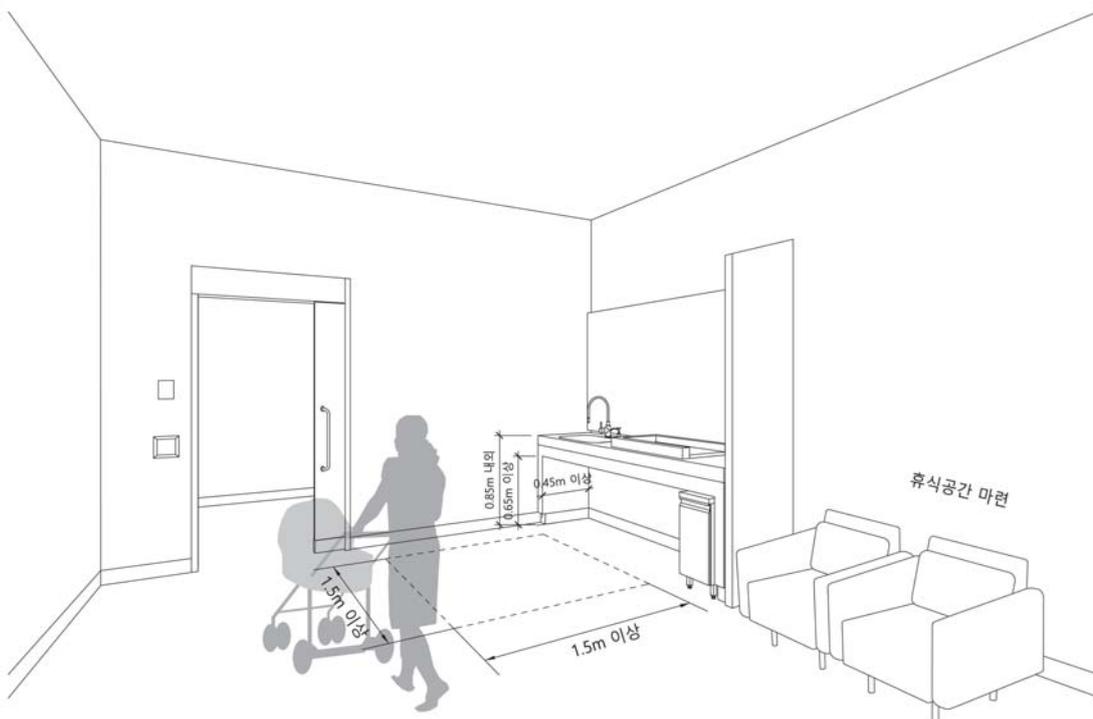
①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도록 함

-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1.5m × 1.5m의 유효 공간을 확보함

-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이하, 하단 높이는 0.65m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함

-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 콘센트 · 스위치 · 수납선반 · 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1.2m로 설치하며, 휠체어에 앉아서 손이 작동 가능한 위치에 설치함



기타시설 개선안

현 황



객실 현관에 2cm를 초과하는 높이차이가 발생함

개선안



휠체어사용자 등이 객실 이용기 가능하도록 현관 높이차이는 2cm이하로 설치함



객실 싱크대 하부공간이 미확보 되어 있음



싱크대의 휠체어 장애인 이용을 위하여 하부공간을 확보함



기저귀교환대 하부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휠체어 사용자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기저귀교환대 하부에 공간을 확보함



VIII

부 록

01. 관광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
02.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 등에 관한 법적 기준
03. 휠체어 등 비치용품에 관한 법적 기준



01. 관광시설별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대상시설 | 편의시설 | | | 매개시설 | | | 내부시설 | | | 위생시설 | | | | 안내시설 | | | 그 밖의 시설 | | |
|------------|---------|-----------|------------|--------|----|-----------|------|-----|-----|---------|------|---------|---------|-------|---------|---------|-------------|-------------|--|
| | 주출입구접근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주출입구높이차이제거 | 출입구(문) | 복도 | 계단 또는 승강기 | 화장실 | | | 샤워실·탈의실 | 점자블록 | 유도및안내설비 | 경보및피난설비 | 객실·침실 | 관람석·열람석 | 접수대·작업대 | 대표소·판매기·음료대 | 임산부등을위한휴게시설 | |
| | | | | | | | 대변기 | 소변기 | 세면대 | | | | | | | | | | |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련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숙박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광휴게시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개정 2019.07.02.>

02.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법적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과 질감은 접근로의 바닥재와 다르게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 (3) 장애인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 자료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2018.02.0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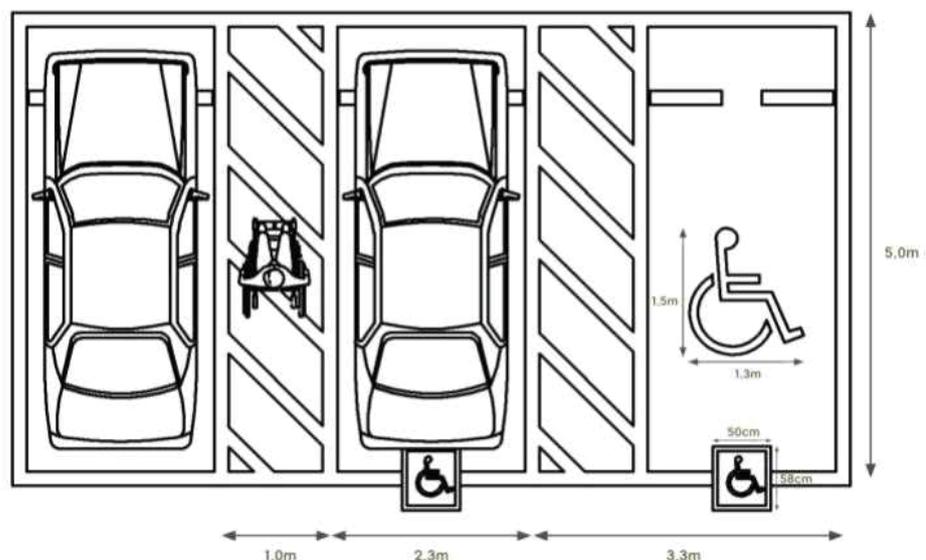
-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과 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지하주차장의 경우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재의 색상만을 다르게 할 수 있다.

나. 주차공간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과 주차구역선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장애인전용표시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가) 바닥면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1.3미터, 세로 1.5미터
 - (나) 주차구역선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표시: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58센티미터



-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역번호)○○○ - ○○○○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지역번호)○○○ -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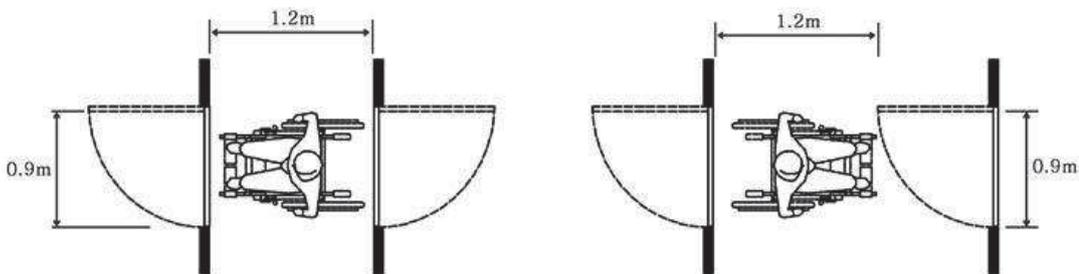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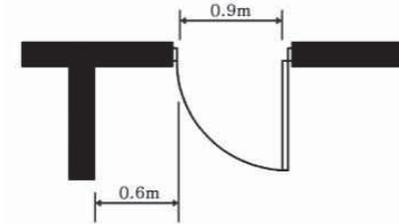
6.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며,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 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문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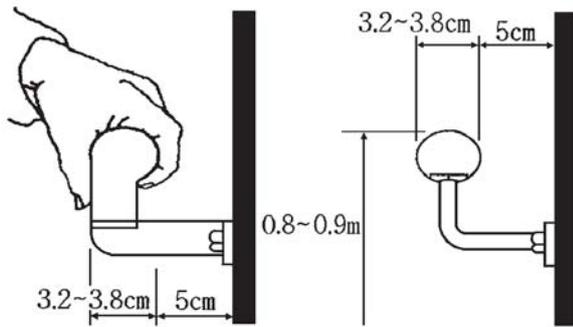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3) 삭제 <2007.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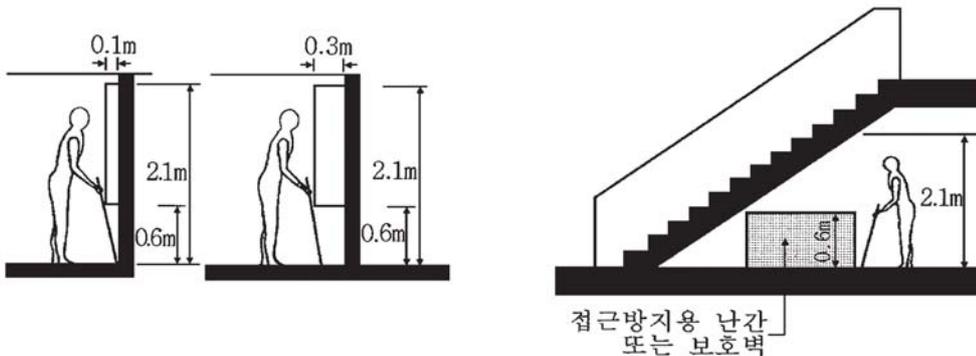
다. 손잡이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보행장애물

-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안전성 확보

-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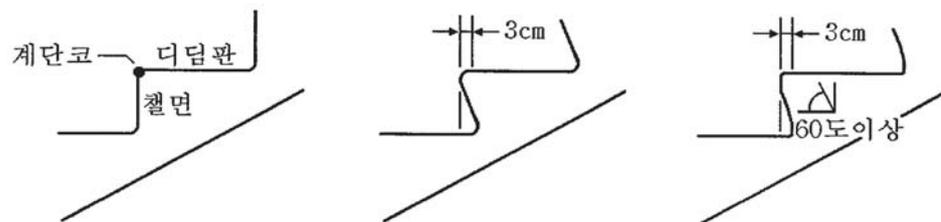
-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철편

- (1) 계단에는 철편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철편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철편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철편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 (1) 계단의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며, 수평손잡이와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각 층의 승강장애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 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고,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6미터 이상, 깊이 2.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자동문,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등받이가 있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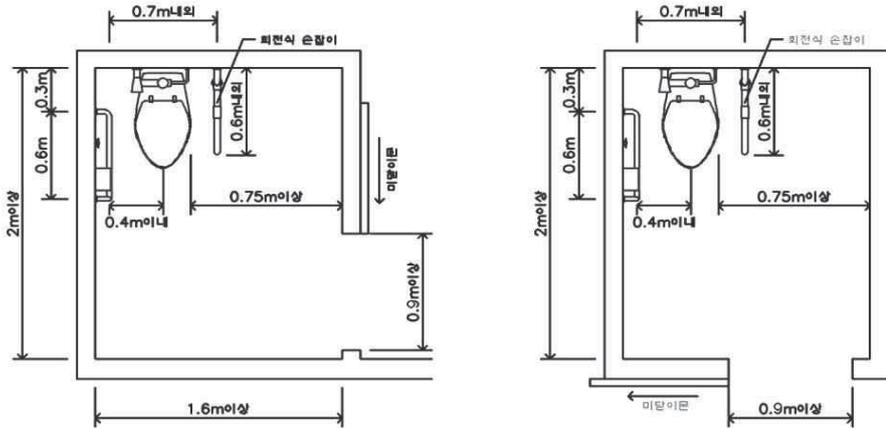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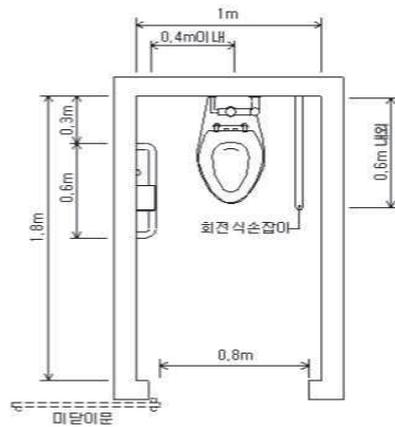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아닌 기존시설)>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 벨은 대변기 가까운 곳에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와 0.9미터 사이의 높이에 설치하되, 바닥면으로부터 0.2미터 내외의 높이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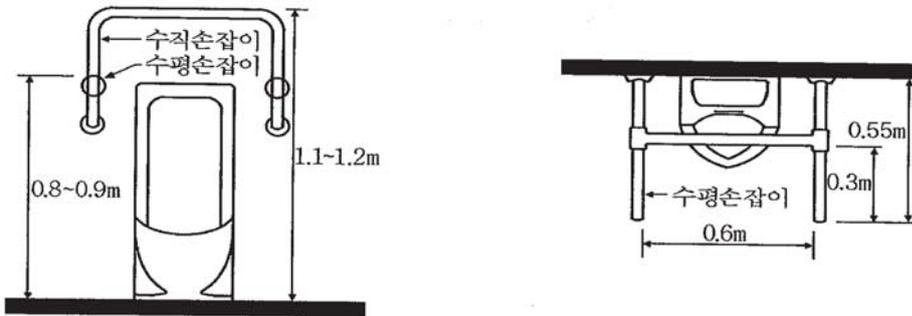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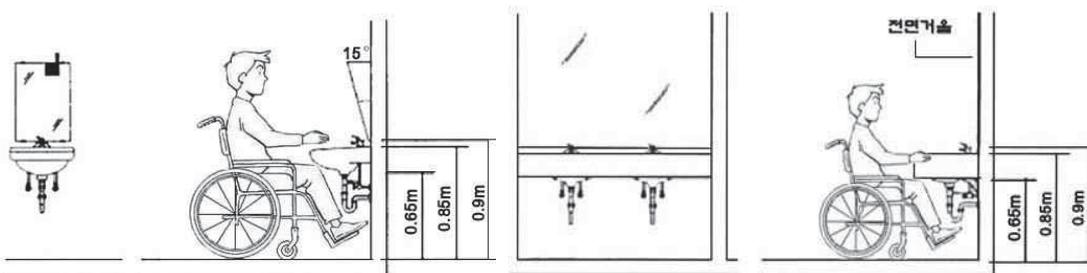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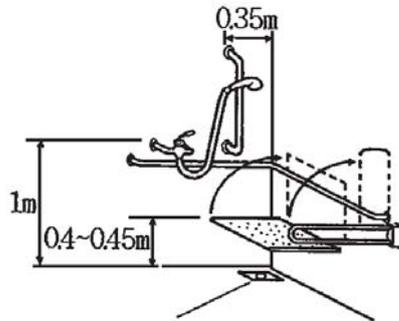
-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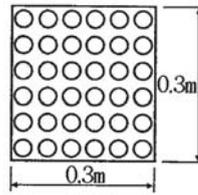
-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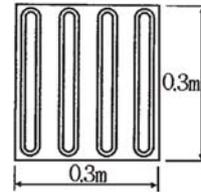
가. 규격 및 색상

-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점형블록



선형블록

-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 (3) 점자블록은 매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 또는 바닥재의 재질 등을 고려해볼 때 매립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부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 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하고, 시각 및 청각 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은 화재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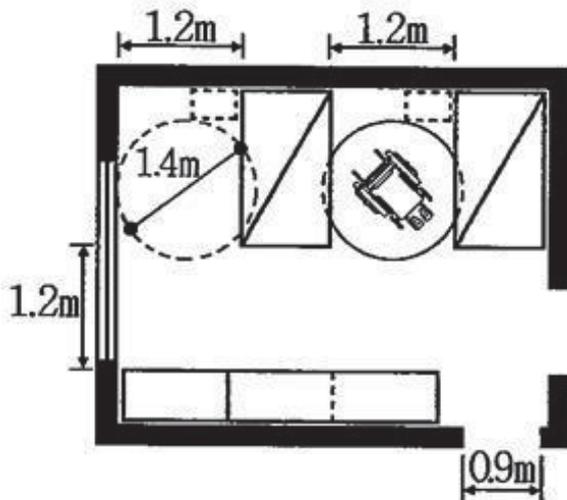
19. 장애인들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이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고,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바닥

-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가목(2)(가)·(3)(나), 나목(1)부터 (3)까지·(4)(가), 라목 및 제14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좌석 또는 접이식 좌석을 사용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이동식 좌석의 경우 한 개씩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휠체어사용자가 아닌 동행인이 함께 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3)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람석 앞에 기둥이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안전을 위한 손잡이는 바닥에서 0.8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 (4)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이 중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 좌석의 1.5배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5) 영화관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스크린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좌석과 스크린 사이의 거리가 관람에 불편하지 않은 충분한 거리일 경우에는 스크린 기준으로 제일 앞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6) 공연장의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무대 기준으로 중간 줄 또는 제일 앞 줄 등 무대가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 및 피난통로가 무대 기준으로 제일 뒷 줄로만 접근이 가능할 경우에는 제일 뒷 줄에 설치할 수 있다.
- (7)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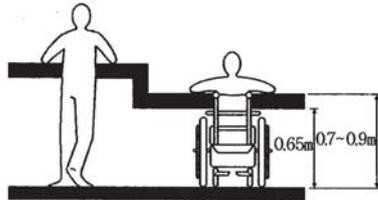
21.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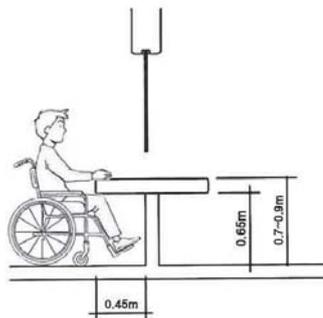
22.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기타 설비

-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목적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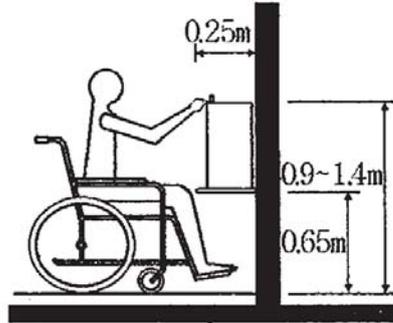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03 휠체어 등 비치용품에 관한 법적기준

| 대상시설 | | 비치용품 | |
|-----------|--|---|---|
| | | 의무용품 | 권장용품 |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읍·면·동사무소 |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 | 편의시설안내지도 |
| | 우체국, 전신전화국 |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
| | 공공도서관 | 보청기기 | 저시력용 독서기 |
| 문화 및 집회시설 | 공영장, 관람장 | 보청기기 | 점자공연 안내책자 |
| | 전시장, 동·식물원 | - | 휠체어, 점자전시 안내책자 |
| 판매시설 | 바닥며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점 | - | 음성계산기 |
| 교육연구시설 | 도서관 |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보청기기 |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
| 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이용하난 시설에 한한다)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한다), 휠체어, 8배율이상의 확대경, 공중팩스기, 보청기기 |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를 포함한다) |
| 숙박시설 | 관광숙박시설 | - | 점자관광안내책자 |
| 장례식장 | | 입식 식탁 | - |
| 운동시설 | 수영장 | 입수용 휠체어 | - |

• 자료출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개정 2019.09.27.>

비고

1.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하여야 하며, 공중팩스기는 사무용 팩스기로 같음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



참 여 연 구 진

| | | |
|---------|-----|--------------------------------|
| ■ 연구책임 | 강태성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공동연구원 | 김상운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연구원 | 변성헌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지혜란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이형아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정미영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 | 임지나 | (주)ABLAB 건축사사무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연구원 |
